

발 간 등 록 번 호

32-9741568-001566-01

현안보고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연구책임자: 정 현 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요 약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부터 시행되었는바, 본 보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재판업무에 도움을 주는 데에 그 연구목적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자, 경영책임자등이 구체적인 감독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전제로, 경영책임자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나아가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업재해, 시민재해를 주도적으로 예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고(제4조 및 제5조),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며(제9조),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고,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였다(제6, 7, 10, 11조). 또한 재판 진행절차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제14조). 민사적으로는 손해액의 5배를 상한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였다(제15조).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경영책임자등’, ‘종사자’,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의 해석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는바, 각 개념은 입법취지, 법률의 문언, 관련 법령과의 관계, 죄형법정주의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는 실제 재판과정에서 더 구체화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에게 구체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시민재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재판과정에서 이 법의 입법목적을 형해화하지 않도록 이 법을 적용하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힘쓴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균형 잡힌 재판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현안 검토 목적	1
2. 보고서의 구성 및 연구방법	1
가. 보고서의 구성	1
나. 연구방법	2
II.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3
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3
가. 입법목적	3
나. 입법과정	5
2. 외국 입법례	7
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	7
나. 호주의 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8
다. 캐나다의 웨스트레이법	9
라. 각국 입법의 비교	10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11
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11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13
다. 제조물책임법과의 관계	13
4. 정의	14
가. 중대재해	14
나. 중대산업재해	15
1) 개요	15
2)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6
3)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19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0
다. 중대시민재해	22
1)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22

2)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22
3) 재해 발생 대상(재해자)의 범위	26
4) 재해의 발생	27
5) 중대산업재해와의 비교	28
라. 종사자	29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29
2)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30
3)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	33
마. 사업주	34
1) 개념	34
2) 다른 법률의 “사업주”와 개념 비교	35
3) 입법론적 문제	36
바. 경영책임자등	36
1) 개요	37
2) 제2조 제9호 가목의 “경영책임자등”	38
3) 공공부문의 경영책임자	45
4) 학교의 경우	46

III. 중대산업재해 50

1. 적용범위 50

가. 의의	50
나. 적용대상	50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50
2)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적용 여부	51
3) 해외 사업장 적용 여부	52
다. 상시 근로자 기준	52
1)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52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54

2.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56

가. 개요	56
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58
1) 개요	58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61
3)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62
4)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66

5)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72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를 할 것	75
7)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79
8)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 여부 점검	82
9)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및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점검	85
10)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	87
다.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90
라.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92
마.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4
1) 개요	95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	97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100
3.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101
1) 의의	102
2) 주요 개념	102
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08
가. 개요	109
나. 법적 성격	109
다. 범죄의 구성요건	111
1) 개요	111
2)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111
3)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112
4) 인과관계	113
5) 주관적 구성요건	119
라. 죄명 및 죄수	122
1) 죄명	122
2) 죄수	122
마. 가중처벌	129
바. 중대재해처벌법상 양형	129
5. 양벌규정	132

6. 사례 연구	137
가. 태안화력발전소 사건	137
1) 사실관계	137
2) 사건의 경과	138
3)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경우(가상사례)	141
4) 형사재판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147
5) 시사점	148
7.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149
IV. 중대시민재해	151
1.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151
가. 개요	151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152
2.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	152
가. 원료·제조물의 정의	152
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154
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154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54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60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61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2
3.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	164
가. 공중이용시설	164
나. 공중교통수단	167
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168
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169
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71
1) 안전·보건 관계 법령	172
2) 필요한 인력 확보	173
3) 필요한 예산 확보	176
4)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	178
5) 안전계획 수립	182
6)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	182
7) 도급·용역·위탁 시 조치	184

바.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86
사. 중앙행정기관등이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87
아.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8
1) 의무 이행여부 점검	189
2) 교육 이수여부 점검	189
자.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190
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처벌	191
가. 개요	191
나. 범죄의 구성요건	192
다. 죄수	199
5. 양벌규정	200
6. 사례 연구	201
가. 세월호 사건	201
1) 사실관계	201
2) 사건의 경과	201
3)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경우(가상사례)	202
4) 시사점	204
V. 보칙	206
1. 형 확정 사실의 통보	206
2.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206
3.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207
가. 피해자 등 직권 증인 신문	208
나. 전문심리위원 소송절차 참여 의무	208
4. 징벌적 손해배상	210
1) 개관	211
2)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	214
3) 배상액의 산정	216
4) 증명책임	217
5) 제조물책임법과의 관계	217
6) 입법론적 비판	218
5.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220

6. 부칙	221
가. 적용시기	221
나. 다른 법률의 개정	224
1) 법원조직법상 형사사건의 사물관할	224
2) 부칙 제2조의 규율 내용	224
3) 재정합의결정에 따른 합의부 심판 가능성	225
VI. 결론	226
참고문헌	230
별 지	233
【별지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직업성 질병	233
【별지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	235
【별지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법 제2조 제4호 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	237
【별지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240
【별지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241
【별지 6】 검찰의 구형기준표	245



1. 현안 검토 목적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실무상 중요 쟁점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함)이 2022. 1. 27.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의 적용범위,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 중대재해손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 등 형사·민사재판 실무상 새로운 쟁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학계, 변호사업계에서 다수의 논문과 해설서가 발간된 상황이고, 대검찰청,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서도 해설서 발간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한 상태임
 - 향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형사·민사재판이 다수 진행될 것을 대비하여 사법부 내에서도 이에 관련한 재판 실무상 중요 쟁점을 발굴하여 그에 관한 기존 논의를 정리 및 종합하고, 관련 법리의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2. 보고서의 구성 및 연구방법

가. 보고서의 구성

-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과정 및 목적을 살펴보고, 기존에 있던 법률과의 관계를 살펴봄. 중대재해처벌법의 조문 순서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온 중요개념, 적용범위, 수범자의 의무 및 의무위반에 따른 형벌제재,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검토함
- 구체적으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인과관계 입증 문제, 죄수 문제, 양형 문제, 손해배상액 산정,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판절차상 특례 등에 대하여도 함께 살펴봄

나. 연구방법

-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하여는 제정 전후로 하여 국내에 상당수의 연구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각 조문상 재판실무에서 문제될 쟁점을 요약·검토할 것임
- 특히 중대산업재해 관련 정의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해설서를 주로 참고하였고,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해설서와 환경부 해설서를 주로 참고하였음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 및 죄수에 관하여는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을 주로 참고하여 연구에 활용하였음
- 과거 법원에서 있었던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판례의 분석 및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을 경우 구성요건에 따른 판단 및 그 결과를 예측함



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가. 입법목적

▣ 제정이유

-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이천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가슴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사망사고 및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은 큰 반면, 현대 기업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의율하기가 어려웠음. 따라서 대부분의 재해 사건은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하고, 법인에게서는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현상이 계속됨. 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정부의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 1. 26. 제정·공포되었음¹⁾

1) 법제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법령/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2022. 11. 11. 확인).

▣ 입법목적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²⁾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이하 ‘안전보건 확보의무’라고 함)를 부담함(제4조 및 제5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제9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고,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제6, 7, 10, 11조)
- 재판진행절차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고,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

2)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에서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라고 지칭하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법 제1조(목적)에도 ‘안전·보건 조치의무’보다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라고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하여야 함(제14조)

- 민사적으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함(제15조)

나. 입법과정

▣ 입법 발의안³⁾

- 2017. 4.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함
- 2018. 12.경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사업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 등 노무제공자 전반에 대하여 법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나, 산업현장의 재해 건수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2020. 4.경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건 발생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 요구가 더욱 높아짐
-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2020. 5.경 136개 시민사회단체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였으며, 노동계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입법을 위하여 여러 활동을 전개함
- 2020. 6.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의원 등 14인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2020. 11. 같은 당 박주민 의원 등 45인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 법안」을, 이어서 같은 당 이탄희 의원 등 11인이 동일한 제목의 법안을, 2020. 12. 같은 당 박범계 의원 등 12인이 동일한 제목의 법안을 발의함
- 국민의 힘에서도 2020. 12.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⁵⁾

3) 조재정, 오너가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좋은 땅 (2021), 14-15.

4) 시민단체로는 세월호와 가슴기 피해자 등의 유가족들 단체가 중심을 이루었고, 여기에 민주노총, 참여연대, 김용균 재단, 이천물류센터 화재참사 유가족 등 여러 단체가 함께 활동을 전개함.

5) 각 국회의원의 입법발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송인택외 4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박영사 (2021), 25-31 참조.

- 한편, 2020. 9. 22. 청원인 김미숙외 10만명은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였음
- 2020. 12. 28. 정부는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안」을 제출하였고, 위 입법 발의안을 모두 모아 2020. 12.부터 법제사법소위원회에서 6차례의 심의를 거친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 1.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1. 1. 26. 공포됨⁶⁾

▣ 입법과정 중 주요쟁점⁷⁾

- 공무원 처벌규정 존치 여부
 - 강은미 의원 발의안 등에서 공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수단의 안전보건 감독이나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 권한 있는 기관장 또는 상급자로서 직무를 게을리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음
 -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배치되며, 공무원에게 지나친 책임을 묻게 된다면 소극행정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등의 반대가 있었음
 - 결국, 형법 등 기본 법률과 다른 별도의 공무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는 조항은 채택되지 않았고,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책임지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입법됨
-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여부
 - 중대산업재해 관련 적용범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시키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함
-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어떻게 구체화하여 규정할 것인지 여부
 - 국회의원 입법 발의안은 수범자인 경영책임자등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 아래, 법제사법소위원회의 논의 결과 법률에 4가지의 의무 규정을 두되, 그 중 2가지는

6) 입법과정에서 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경영계의 대응, 언론의 보도 등에 대하여는 조성제 외 3인, 법제도 변화 이후 산업안전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21), 153 이하(조성제 집필 부분) 참조.

7) 송인택외 4인, 앞의 책, 33, 38-45 참조.

시행령에 구체적 내용을 위임하도록 함

- 인과관계 추정 여부
 - 산업재해의 경우 입증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자는 의견으로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안에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무죄추정의 원칙 및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에 반하고, 입법발의안의 구체적 내용이 중대재해발생의 개연성과 관련이 없는 등 형사사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등의 반대의견으로 추정조항은 제외됨
-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범위
 - 공중이용시설 관련하여 소상공인과 교육시설을 제외하기로 함

2. 외국 입법례

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⁸⁾

- 영국은 2007년 세계 최초로 사망사고에 대해 법인의 과실치사 등에 형사 죄책을 인정하는 「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을 제정함⁹⁾
-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산업재해로 인한 개인의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함
- 법인의 기업과실치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망사고 원인으로 법인의 중대한 주의의무(relevant duty of care) 위반행위가 인정되어야 함
 - 여기서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이란 위반행위가 일정한 상황에서 그 단체에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고위 경영

8) 이하 최수영,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향후 정책방향”, 건설관리 제22권 제2호 (2021. 4.), 22-23.

9) 이 법의 제1조 제5항에서는 영국(United Kingdom)의 England, Wales, Northern Ireland 지역에서는 이 법을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으로 부르고, Scotland 지역에서만 「기업살인법(Corporate Homicide)」으로 부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하 영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되는 「기업과실치사법」으로 명명함.

진의 조직관리 및 구성방식이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의 본질적인 요소로 인정되어야 함

– 즉, 법인의 고위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조직관리 및 구성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이 문제가 실무진 과실이나 사업장의 관리소홀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입증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함

- 법인에 대한 처벌은 벌금, 구제명령, 공표명령으로 구성되며, 벌금은 영국 양형위원회(U.K. Sentencing Council)의 기업과실치사법 양형 기준 가이드에 따라 매출액과 과실 정도에 따라 결정됨
- 도급관계에 있어서는 영국 기업과실치사법도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보장 확보의무는 인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무를 그대로 준용하여 기업과실치사법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의무가 추가되거나 확대되지는 않음
- 영국에서 기업과실치사법이 최초로 적용된 사례는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사건¹⁰⁾이며, 2008년 시행 후 2017년까지 10년간 총 25개 기업이 처벌을 받았는데, 같은 기간 영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약 1,500명 임을 감안하면 기업과실치사법으로 처벌받은 기업은 2%가 되지 않음.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전후로 영국 건설산업 사고사망십만인율 감소율은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준은 아니라고 함¹¹⁾

나. 호주의 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¹²⁾

- 호주는 영국과 달리 개별법 형태가 아닌 「형법(Crimes Act)과 「산업안전보건법(Work Health and Safety Act)」에 기업과실치사 제도(Industrial manslaughter 혹은 Workplace manslaughter)를 포함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그리고 연방법상에는 관련 제도가 없으며 8개 주 중 4개 주에서만 기업과실치사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2004년 오스트레일리아수도 준주(ACT) 형법에 최초로 포

10) 2010년 발생한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사건은 해자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해자 붕괴로 인해 사망한 사건으로, 배심원단은 이 기업의 안전보건 시스템이 안전보건기준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법원은 385,000파운드의 벌금을 선고하였음. *R v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Ltd*, [2011] EWCA Crim 1337; [2011] All ER (D) 100 (May).

11) Victoria Roper,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A 10-Year Review”, *The Journal of Criminal Law* Vol. 82(1) (2018), 23.

12) 이하 최수영, 앞의 글, 23-24.

함되었으며, 이후 2017년 퀸즐랜드(Queensland), 2020년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와 빅토리아주(Victoria) 산업안전보건법에 차례로 포함됨

- 호주 4개 주에서 운영되는 기업과실치사 제도는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을 뿐 처벌대상과 범죄성립 조건과 같은 핵심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국내 중대재해 처벌법과 마찬가지로 법인과 고위경영진(senior officers)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개인 처벌에 대한 하한형 없이 상한형만 명시하고 있음¹³⁾
- 기업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범자가 ① 심각한 부주의로 ② 고용한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③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범죄 성립 조건이 국내보다 매우 까다로움

다. 캐나다의 웨스트레이법¹⁴⁾

- 캐나다에서는 1992년 웨스트레이 석탄 광산에서 폭발 사고로 26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처벌론이 대두하여 10여 년의 논의 끝에 2004년 「웨스트레이법(Westray Bill or Bill C-45)」이 제정됨
- 웨스트레이법은 캐나다 형법을 수정하고 2004. 3. 31. 법률이 된 연방법으로서 작업장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새로운 법적 의무를 설정하고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 위반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부과함
- 이 법은 기업, 그 대표자 및 타인의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조직에 형사 책임을 귀속시키는 새로운 규정을 제공함
- 형법 제217.1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함¹⁵⁾
 - 다른 사람에게 작업을 지시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지시할 권한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해당 작업 또는 직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시민의 신체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
 - 조직이라는 용어를 재정의하여 잠재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더 넓

13) 호주의 주별 기업과실치사 제도(도입시기, 관련법, 근거조항 및 명칭, 대상, 형량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최수영, 앞의 글, 24 참조.

14) 강영기 외 2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검토”, 법과 기업연구 제11권 제2호 (2021. 8.), 222.

15) Canadian Centre for Occupational Health & Safety, “Westray Bill (Bill C-45) – Overview”, <https://www.ccohs.ca/oshanswers/legisl/bille45.html> (2022. 11. 11. 확인).

은 정의를 포함하고, 과실(형법 섹션 22.1) 및 기타 범죄(형법 섹션 22.2)에 대해 조직 및 그 대표자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추가함

- 법원이 조직을 처벌할 때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를 설명하고, 조직에 부과할 수 있는 선택적 보호관찰조건을 제공함
- 기업은 형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구금될 수 없음. 웨스트레이 법으로 인한 변경 사항은 약식 유죄 판결 위반(개인이 최대 6개월 징역 또는 \$2,000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덜 심각한 범죄)에 대해 조직에 부과되는 최대 벌금을 \$25,000에서 \$100,000로 인상하였고, 더 심각한 범죄에는 제한이 없음

라. 각국 입법의 비교¹⁶⁾

- 영국과 우리나라는 개별법 형태로 기업과실치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호주는 일부 주에서 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제도를 포함하고 있고, 캐나다는 형법에 추가 조항을 넣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 범죄성립의 경우 영국과 호주는 사망사고에 한정하여 수구자의 중과실이 입증될 경우에만 기업과실치사죄가 성립되지만, 캐나다와 국내의 경우 사망사고를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재해에 대하여 수구자의 일반 과실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 차이를 보임
- 수구자 의무의 경우 영국과 호주는 기존 법을 그대로 준용하여 기업의 추가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내의 경우 보호대상의 확대 및 도급인의 의무 등에서 기업의 의무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처벌 대상의 경우 영국은 법인만을 처벌하며,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는 개인과 법인 모두를 처벌할 수 있지만, 개인 처벌의 하한형을 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도 우리나라가 유일함. 따라서 국내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과 호주 관련법과 비교하여 범죄성립은 가장 쉽지만 처벌 수위는 가장 높은 특징이 있음

16) 이하 최수영, 앞의 글, 24.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¹⁷⁾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및 이에 따른 사업주¹⁸⁾의 조치의무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전적 예방조치에 중점을 두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기 위한 형사적, 사후처벌법이란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제조업 조직도 상 법률의 적용 대상 및 의무(고용노동부, 앞의 해설서, 7)

17) 이하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중대산업재해 (2021), 6-7 참조.

18)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여기에는 개인사업주와 법인사업주가 모두 포함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수범자는 개인사업주인 경우 그 개인이, 법인사업주인 경우 법인 자체가 됨.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다루는 재해의 범위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루는 재해의 범위보다 더 넓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 및 증진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 신체 보호 및 중대 재해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
적용범위	전 사업장 적용	5인 미만 사업자는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
법적 의무	추락 방지 등 산업안전보건규칙이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 (680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안전보건에 관한 경영상의 관리책임)
처벌행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의무 미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중대재해 발생(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처벌대상 (행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등)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재해 정의	〈중대재해 ¹⁹⁾ 〉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중대산업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처벌수준	(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	사업주→행위자(역적용)	경영책임자→법인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없음	고의 또는 중과실 시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 내 배상책임

19)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시행규칙 제3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업무상 재해를 적용대상으로 함
-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차이가 있음

다. 제조물책임법과의 관계

-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민사 책임을 규정한 것인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시민재해 중 제조물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임
- 책임의 주체에 있어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되며 판매업자는 보충적 책임을 가지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유통 및 판매업자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고의·중과실책임적(손해배상의 경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제조물책임법과는 다른 특징이 있음

〈제조물책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²⁰⁾

구분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의 범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시민재해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 +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
손해범위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	중대재해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
결함의 정의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결함 정의 규정은 없음(제조물책임법의 결함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임) 설계·제조상 결함뿐만 아니라 ‘관리’상의 결함도 포함
결함 추정규정	있음	없음
책임의 주체	원칙적으로 제조업자(제조, 가공, 수입업자)의 책임/ 판매·대여업자는 보충적 책임(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생산, 제조, 판매, 유통업자 모두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과실	무과실책임에 가깝고, 예외적으로 면책	형사책임: 고의범 민사책임: 과실책임(고의/중과실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하, 고의성 필요)	징벌적 손해배상(5배 이하, 고의/중과실)

4. 정의

가. 중대재해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20) 김지석, “리포트-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쟁점사항들에 관한 고찰”, 월간노동법률 (2021. 5.), 110 참조.

나. 중대산업재해

법 제2조(정의)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 개요²¹⁾

▣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항)
 - 즉, 산업재해는 ①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 요인 등 작업환경, ②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또는 ③ 업무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등으로 인해 노무제공자에게 발생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함²²⁾

21) 이하 고용노동부(주 17), 10 참조.

2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사망만이 아니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인 장애와 출퇴근 재해도 포함됨. 따라서 사업주의 예방가능성을 전제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개념요소로 한

2)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사망의 원인²³⁾

-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²⁴⁾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됨
 - 다만, 직업성 질병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함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의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임

▣ 구체적인 사안²⁵⁾

- 과로사
 -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발생하여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내용과 방식에 내재한 유해위험요인이 원인이 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 예시) 택배노동자의 과도한 야간업무
 - 이 경우 그 발생 원인이 과중한 업무 이외에도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업무량, 강도 등 업무환경이나 업무량의 변화와 질병의 발생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²⁶⁾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는 해당할 수 있음.

23) 고용노동부(주 17), 10.

24) 사망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규정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에 한정하지 않음.

25)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별칙해설 (2022), 34.

26) 동법 시행령 제정 시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직업성 질병”에 과로사의 원인이 되는 ‘심혈관질환’을 제외한 것에 대하여 노동계의 반발이 있기도 하였는데, 검찰 및 고용노동부는 사망의 경우에는 뇌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한 과로사도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임. 이에 대하여 심혈관계 질환은 만성질환으로서 과로사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을 혼동하고

- 집단괴롭힘²⁷⁾으로 인한 사망

- 통상 작업이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임
-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작업수행의 방식으로 행하여지거나 업무에 편승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될 여지도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²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은 결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대상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매우 적을 것으로 사료됨

-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 통상 종사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재해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작업환경 등에 있지 아니하고 종사자 내부에 존재하므로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종사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직무스트레스 등이 과도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작업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검토할 여지는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매우 적고,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²⁹⁾

있는 것으로서 법의 체계적 정합성을 간과한 해석이며,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해석으로서 옳지 않다는 견해도 있음. 한국경제, “고용부 ‘직장내 괴롭힘에 극단 선택,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122647611> (2021. 12. 26. 17:03), 아주경제, “‘과로사도 중대재해’ 대검 유권해석에 ‘과잉입법’ 논란”, <https://www.ajunews.com/view/20220225203953321> (2022. 3. 1. 14:40).

27)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대검찰청, 앞의 책, 34.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보상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자발적 의도에 따른 자살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음. 다만, 그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사건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말미암아 우울증세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재해의 경우

- 일반적으로 종사자 개인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에도 포함되지 않음
-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업무에 관계되는 설비’로 볼 여지가 있어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검토 대상이 될 여지는 있음

▣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시기

● 사망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법 제2조 제2항 가목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의 사망 시’에 비로소 성립한 것임³⁰⁾

- 다만, 이 경우 종사자의 사망은 당초 부상 또는 질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함. 즉,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다가 종사자가 그 후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위 부상 또는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져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근로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재해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위 판례를 중대재해처벌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됨.

30)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는 결과적 가중범과 유사한 형식으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시기와 중대재해 발생 시기에 상당한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는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신분범죄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후 중대재해의 결과가 발생한 기간 사이에 경영책임자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행위책임주의 원칙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당시의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등 신분이 있었던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법 제3조(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을 운영하던 중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즉, 사고 발생 시 5인 이상인 경우), 실제 중대산업재해의 결과(예를 들어 근로자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의율함이 타당하고 생각함.

3)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

-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함
 - ▣ 【예시】 화재·폭발 사고 시 직접적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 외에 폭발압 충격으로 인한 추락, 파편으로 인한 충돌 등을 포함함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³¹⁾
-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재판과정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재판과정에서 감정 신청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음. 의사의 최초 진단 소견서 등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사실심 종결시점에서의 의학적 소견을 참작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³²⁾
-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의사의 최초 진단에 대하여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의사의 최초 진단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치료의 필요성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실제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음³³⁾
 - 진단서 상의 예상치료기간과 실제 치료기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는바, 이는 입법과정에서 놓친 부분으로서 치료 기간 개념 등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음³⁴⁾

31) 한편, 3개월 만에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신체절단 등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에 포함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함. “치료”는 환자의 건강을 회복·개선시키기 위한 행위이고 증상이 고정된 이후는 ‘치료가 필요한’ 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음.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이 ‘중상해’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여 치료기간과 무관하게 중대재해에 포함하는 입법 정책적 필요가 있음. 대검찰청, 앞의 책, 37.

32) 대검찰청, 앞의 책, 38.

33) 대검찰청, 위의 책, 38.

34) 매일노동뉴스,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 집중분석 ④] ‘치료기간 6개월 이상’ 기준, 중대재해 면죄부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

- “유해요인”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 화학적 유해인자, 유해작업 등을 말함

▣ 유해인자

【예시】 염화비닐 · 유기주석 · 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 · 일산화탄소/ 납 또는 그 화합물/ 수은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이상화질소 등

▣ 유해작업

【예시】 보건의로 종사자의 종사 작업(혈액 관련)/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 오염된 냉각수에 노출된 장소에서 하는 작업/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하는 작업/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유해요인의 동일성

- “유해요인의 동일성”이란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다수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라면 각 종사자 간에 유해요인 노출 시기나 장소가 다르고 직업성 질병의 발병시기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즉, 하나의 ‘사업’에 소속되어 있는 종사자에게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이나 발생 시점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한 직업성 질병에 해당함³⁵⁾

▣ 직업성 질병

- “직업성 질병”이란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에서 기인한 건강장해를 의미함

될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54> (2022. 3. 10. 7:30).

35)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 내에 속하는 다수의 사업장들이 여러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직접 노출된 상태로 종사자가 작업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체온조절중추의 이상 등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이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서 용광로 광물제련 작업을 하는 등 고열작업 중에 각 사업장에서 다수자가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함. 대검찰청, 앞의 책, 30.

-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이 유일한 발병 원인이거나, 그 원인이 되었을 것이 유력한 질병으로는 1) 중금속·유기용제 중독, 2) 생물체에 의한 감염질환 또는 3) 기온·기압 등에 기인한 질병 등이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제2조 별표 1에서 직업성 질병을 24가지로 규정함³⁶⁾
-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표 1에서 열거하는 유해요인과 직업성 질병은 예시적인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①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해요인으로 인하여 별표 1에 규정된 직업성 질병에 걸린 경우나 ② 별표 1에 열거된 유해요인으로 인하여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업성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함³⁷⁾

▣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여기서의 1년은 최초 발병자와 세 번째 발병자 사이의 시간을 의미함
- ‘발생한 시점’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노출된 날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최초 진단일을 각 발생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³⁸⁾와 실제 발병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³⁹⁾
- 1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함

▣ 적용문제

-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자가 2명이 발생한 후 3명이 발생하기 전 경영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날’을 중대재해 발생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당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질병의 유해요인이 제공되었을 당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⁴⁰⁾

36) [별지 1]에 첨부.

37) 권창영 편집대표, 온라인 주석「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로앤비 (2022), § 2(권창영 집필부분).

38) 고용노동부(주 17), 14 및 대검찰청, 앞의 책, 42.

39)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팀, 중대재해처벌법 연구-조문별 해석 중심, 법문사 (2022), 40.

40) 대검찰청, 앞의 책, 43.

- 법 시행 전후에 발생한 질병자에 대한 적용 문제
 - － 법 시행 전에 직업성 질병자가 1명 이상 발생하고 시행 후 3명 미만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급적용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법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⁴¹⁾

다. 중대시민재해

법 제2조(정의)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1)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 중대시민재해는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임
- 따라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외의 시설, 차량, 물체, 공작물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는 재해 범위나 규모가 중대시민재해의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중대시민재해가 아님⁴²⁾
- 위 개념에 대해서는 IV. 중대시민재해 해당 부분에서 후술함

2)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⁴³⁾

- 중대재해처벌법상 ‘결함’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바,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을

41) 대검찰청, 앞의 책, 43.

42) 참고로 2021. 6. 광주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여 일반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는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중대시민재해의 개념을 수정하여, 중대시민재해의 범주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110830, (2021. 6. 17.)].

43) 김·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대응팀, 중대재해처벌법, 박영사 (2022), 141-143 참조.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물책임법의 정의 규정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결함’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음

제조물책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다만,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원료·제조물과 관련하여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의 설계상의 결함
 - 원료·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물 책임법의 정의규정과 관련한 판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임
 -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함(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 판례는 “급발진사고가 운전자의 액셀러레이터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만약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급발진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을 인

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결함의 인정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⁴⁴⁾

-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상의 결함은 건축 관련 법령이 일용 기준이 될 수 있음. 건축물에 설계상 결함이 있다는 것은 해당 건축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건축법과 관계 법령, 국토부장관 고시 내용 등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설계상 결함이 인정될 수 있음.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⁴⁵⁾의 경우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상 결함에 해당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제조상의 결함

-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함(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
- 판례는 “무릇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텔레비전의 제조업자는 그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제품의 위험한 성상에 의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 설계 및 제조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텔레비전이 비록 그 내구연한으로부터 1년 정도 초과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 정상적인 이용 상황 하에서 위와 같이 폭발한 이상, 그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함⁴⁶⁾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치상의 결함

44)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45)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46)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 기본적으로는 건축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됨
- 시공자는 건축주와의 계약 등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설계에서 요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해야 함.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설계도면에서 요구하는 지시에 반하여 시공이 된 경우 설치상의 결함이 인정됨. 판례도 “시공자는 건축물을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면이 지시하는 자재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설계와 다른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것이 붕괴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함⁴⁷⁾

● 관리상의 결함

- 민법상 공작물 책임,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판례는 민법상 공작물 책임과 관련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의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⁴⁸⁾
-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

47)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5512 판결(경주 마리나리조트 붕괴 사건).

48)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합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합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⁴⁹⁾

-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합은 시설, 설비, 부품, 자재 등 그 자체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이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 된 사고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⁵⁰⁾으로 인한 사고 등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고 원인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제조, 관리상의 결합과 이용자의 부주의, 자연재난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게 될 수 있음
- 결합이 재해의 유일한 원인이 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결합이 재해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재해는 그러한 결합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판례는 공작물·영조물 책임에서 일관되게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음⁵¹⁾
- 원료나 제조물 등의 결합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제조물책임법상 결합 등의 추정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3) 재해 발생 대상(재해자)의 범위

-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재해자의 범위를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로 한정하지 않고, 법률 제정 목적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로 하며(법 제1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

49)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50)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51)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등.

과하는 목적을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로 규정하였음(법 제9조 제1, 2항)

- 따라서 중대시민재해 재해자의 범위는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음
 - 다만, 중대산업재해(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사망·상해사고)에 해당하는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법 제2조 제3호)

4) 재해의 발생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1명 이상 사망하게 한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함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
 -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같은 경우라도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 각각의 사고가 별개의 사고에 해당할 뿐 ‘동일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 해당 부상과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2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 치료기간이 최초 진단일에는 2개월 미만이었으나 치료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것임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
 - 하나의 사업주, 법인·기관에서 관리·통제하는 재해요인 중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 해당 질병과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3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5) 중대산업재해와의 비교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규정에서 ‘정한 결과의 발생’에 대해 살펴 보면, ① 1명 이상의 사망 사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서로 동일함
- ② 부상의 경우 중대산업재해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임을 요하나, 중대시민재해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10명 이상임을 요함
 -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산업재해에 비해 각 부상자의 치료기간은 짧지만, 더 많은 인원의 부상자를 요건으로 함
 - 여기서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 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중대산업재해와 동일)
- ③ 질병의 경우 중대산업재해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것을 요하나, 중대시민재해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것을 요함
 - 중대시민재해에서는 질병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모든 유형의 질병이 해당될 수 있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비교〉⁵²⁾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대상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이용자, 일반시민
내용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예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물류창고 화재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4.19 세월호 사건, 가슴기 살균사건

라. 종사자

법 제2조(정의)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

52) 홍채은,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중대시민재해”, 소비자정책동향 제116호 (2021. 9.), 6.

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공무원도 본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가목의 종사자에 해당함

2)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보호대상 범위

- 근로자 외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종사자에 포함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9개의 직종⁵³⁾으로 제한되고, 9개의 직종에 해당하더라도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함.⁵⁴⁾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직종과 무관하게 다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기만 하면 이에 해당하므로 그 보호대상의 범위가 매우 확대됨
- 플랫폼 노동종사자
 - ‘플랫폼 노동’은 개인이 수입을 목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급노동을 제공해 고객과 매칭되는 고용형태’ 또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형태’를 말함. 여기서 ‘플랫폼’이란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온라인상의 기반을 의미함⁵⁵⁾

53)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학습지 방문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자

54)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5) 정찬영·이승길,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노동법적 쟁점과 보호방안”, 아주법학 제14권 제1호 (2020), 122.

- ‘플랫폼 노동종사자’는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서 구한 일거리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새로운 노동형태에서 일하는 자를 말함⁵⁶⁾
- 판례는 플랫폼 노동종사자에 대하여 구체적 계약관계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일부 대법원판결은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의 배달 업무를 음식배달원이 아닌 택배원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⁵⁷⁾
-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법적 지위는 구체적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플랫폼 노동종사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7호의 ‘종사자’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여지는 있음
- 다만, 이러한 종사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 또는 법인을 정할 때에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예를 들어 배달 중개의 경우 ‘배민라이더스’ 등과 같이 배달라이더들과 계약관계를 맺어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약관계, 업무 내용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⁵⁸⁾

▣ 대가를 목적으로

-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무급 자원봉사자, 호기심이나 취미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해당 사업장에 일시적으로 방문한 일반 방문자는 포함되지 않음
- “대가를 목적으로”의 해석상 노무 제공의 대가가 금전적 대가에 한정되는지 여부
 -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와는 달리 법 제2조 제7호 나목에서 대가의 목적을 임금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취업기회의 제공 등 비금전적 무형의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점, 근로조건 등의 규율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무제공의 대가’가 반드시 금전적 대가일 필요는 없음⁵⁹⁾

56) 정찬영·이승길, 위의 글, 123.

57)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58)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 결과보고서 (2022. 7.), 226.

● 현장실습생

-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반면(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중대재해 처벌법은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대하여 ①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종사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 ② 노무의 대가는 금전적 수익만이 아니라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도 포함되고 실습계약을 통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 견해,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생은 산업재해 예방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종사자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견해, ④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장실습생도 현장실습 중 중대 재해를 입은 경우 종사자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⁶⁰⁾
-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보다 넓은 점,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서 ‘실질적 고용관계’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직접 고용관계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점,⁶¹⁾ 대법원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에 대하여 계약 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등을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점⁶²⁾ 등을 고려하면,
- 현장실습생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실습생의 실습계약상 근로시간, 실제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 지급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습에서 더 나아가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전 지급이나 취업의 기회 등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⁶³⁾
- 입법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의미를 고려할 때, 현장실습생을

59) 권오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도서출판 새빛 (2022), 45. 무급가족종사자나 무급인턴도 공동생활의 영위라든지 교육기회의 제공 등 비금전적인 무형의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노무의 대가에 있어 ‘유상성’을 엄격히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함.

60) 대검찰청, 앞의 책, 86.

6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62)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920 판결.

63) 대검찰청, 앞의 책, 87.

종사자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에 해당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거나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특례규정을 별도로 두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음⁶⁴⁾

- 입법적으로 “대가를 목적으로”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음⁶⁵⁾

3)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개념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각 단계의 수급인,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각 단계의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종사자에 포함됨
-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하고, 각 단계의 수급인이라 사업이 여러 단계에 걸쳐 도급된 경우인 ‘중층적 도급관계’의 각 단계의 수급인 모두를 포함함.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근로자의 관계에 있거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까지 포함됨
- 여러 단계의 도급이 행하여져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소속 종사자가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사망, 부상, 질병)를 입은 경우, 위 하수급인 또는 그 소속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조 제7호 다목을 규정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관련한 책임의 범위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제4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제5조), 향후 법적 분쟁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 시행 2020. 1. 16.)은 도급, 수급인,

64) 참고로 현장실습생을 종사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114951, (2022. 3. 24.)].

65) 권오성, 앞의 책, 45.

관계수급인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급인의 사업장’ 개념을 신설하여 도급인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그 책임범위를 확대함⁶⁶⁾

- 또한 관계수급인을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 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이 여러 단계에 걸쳐 도급된 경우 여러 수급인을 모두 관계수급인의 개념으로 포섭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9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도급인에게 부과함
-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은 그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할 뿐, 수급인(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⁶⁷⁾
-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 개념에는 수급인도 포함되므로, 수급인이 업무와 관계되는 설비 등이나 작업 그 밖에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⁶⁸⁾

마. 사업주

법 제2조(정의)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개념

- 법 제2조에서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66)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67)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545 판결).

68) 대검찰청, 앞의 책, 88.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의함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⁶⁹⁾보다 넓은 의미임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함. 사업경영이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인 영업 주체로서,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자체를, 사업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자체를 의미함(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034 판결). 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명시적으로 사업주의 의미를 ‘개인사업주’로 한정하고 있고 ‘이하 같다’라고 기재하여 법 제3조 이하의 모든 ‘사업주’는 개인사업주로 보아야 하며,⁷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반 의무를 개인으로서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하고, 개인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를 경영책임자등과 구분하여 ‘법인 또는 기관’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는 행위자로서 자연인인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함⁷¹⁾

2) 다른 법률의 “사업주”와 개념 비교

- 근로기준법의 경우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일방당사자로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인 영업주,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
-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에는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사업주는 사업경영이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인 영업 주체로서,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자체를, 사업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자체를 의미함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는 ‘사업의 주인’이라는 일반적인 언어관용으로

69)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0) 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1) 권오성, 앞의 책, 49.

서의 사업주가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이 동법의 수범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규범적으로 정의한 도구개념으로서, 법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3) 입법론적 문제

- 법 제2조 제8호 앞부분의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뒷부분의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라는 문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사업을 하는 자”의 차이가 불분명하며, 앞부분과 뒷부분을 구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문구상 확실히 나타나지 않음
 - 따라서 법 제2조 제8호 “사업주”의 정의를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⁷²⁾
- 나아가 ‘사업주’의 의미는 일반적 언어관용으로 ‘사업의 주인’을 의미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사업주”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수범자로서의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사업주”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이렇게 ‘사업주’라는 하나의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만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라는 용어 대신에 “개인사업자”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임⁷³⁾

바. 경영책임자등

법 제2조(정의)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72) 권오성, 위의 책, 49.

73) 권오성, 위의 책, 49.

1) 개요

▣ 경영책임자등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함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의 대표자이자 사업 경영의 총괄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수범자로서의 경영책임자등

-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등을 중하게 처벌함
-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그 개인을, 개인사업주 이외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그 경영책임자라는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와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됨
-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인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양벌규정 역적용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자에 해당할 여지는 있었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대표자는 구체적·직접적 의무가 없거나 안전보건 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대표이사가 아닌 현장소장, 공장장 등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대표이사도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죄의 주체가 되게 한 점에 큰 의미가 있음⁷⁴⁾

2) 제2조 제9호 가목의 “경영책임자등”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함
 - 통상적으로 기업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함
-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⁷⁵⁾
 - 따라서 해당 사업에서의 ① 직무, ② 책임과 권한 및 ③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가 별도로 있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별도의 전문경영인(CEO)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우
 - 1설: 실질적 소유자가 직함이나 소속을 불문하고 재해예방과 관련된 인사나 예산에 관한 의사결정까지 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그 기업의 실질적 소유자가 포함되고, 이럴 경우, 그 기업의 CEO 역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지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실질적 소유자와 CEO 모두 ‘경영책임자등’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라는 견해임⁷⁶⁾
 - 2설: ‘경영책임자등’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각 목의 규정은 범죄구성요건으로서의 신분을 규정하는 것이어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에 따라 대표권이 인정되는 법정기관(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의

74) 대검찰청, 앞의 책, 96.

75) 고용노동부(주 17), 22 및 대검찰청, 앞의 책, 97.

76) 송인택, 앞의 책, 149.

이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만이 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경영책임자등’에 포섭될 수 있으며, 사업을 ‘사실상’ 대표하는 자(예들 들어,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기타 상법 제201조의2 소정의 업무집행지시자 등)는 ‘경영책임자등’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이와 같이 법률상 권한이 없음에도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사람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나 형법 제31조 제1항의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할 뿐이라는 견해임⁷⁷⁾

- 검토: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부여된 의무이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는 이러한 의무를 하지 이행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여 신분범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음.⁷⁸⁾ 따라서 기업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사업 전반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있다면, 그가 대표이사 등 법정기관이 아니더라도 ‘경영책임자등’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봄. 다만, 실질적 소유자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련한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에 최종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 경영책임자등은 현장소장, 공장장 등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개별 사업장에서 생산 활동을 총괄하는 자와 개념상 구별됨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 등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면서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책임자에 준하여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말함⁷⁹⁾
 -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최고책임자라 하더라도 사업 경영대표자 등으로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총

77) 권오성, 앞의 책, 61-62.

78) 이와 관련하여 아래 III. 4. 나. 부분 참조.

79) 대검찰청, 앞의 책, 99.

- 괄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경우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준하여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음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사업장’이라는 표현이 없는 점, ‘대표이사에 준하는’이라고 되어 있는 점,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에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업의 대표이사 등 고위임원이 형사상 면책되는 사례가 많은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사에서 분리된 공장이나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나 공장장 등 특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기업의 지역본부장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준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음⁸⁰⁾
 - 법률상 대표권은 없지만 특정 사업부문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아 해당 사업부문의 외부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대표자에 준하여 대외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또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내부적으로 해당 사업부문의 경영활동을 총괄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이에 준하여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⁸¹⁾

▣ 경영책임자등의 특징

-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즉, 경영을 대표하는 자의 안전 및 보전에 관한 의무와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임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외에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역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동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부담할 수 있음
- 법인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하여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안전보건최고책임자, 일명 CSO, Chief Safety Officer)을 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와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모두 경

80) 박상진, “리포트-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어떻게 다른가”, 월간노동법률 (2021. 3.), 117.

81) 권오성, 앞의 책, 71.

영책임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킬지, 안전보건최고책임자만을 경영책임자로 보고 대표이사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인지 여부⁸²⁾

- 대표이사 면책부정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된 ‘공법상 의무’로, 경영책임자는 사법상 위임계약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없음. 안전보건최고책임자는 대표이사의 의무이행을 보좌하기 위한 이행보조자로,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최고책임자의 의무이행을 감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본죄의 죄책을 부담하고 면책될 수 없다는 견해임⁸³⁾
- 대표이사 완전면책설: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발의안에는 ‘및’으로 표현되어 있던 것이 입법 과정에서 ‘또는’으로 변경되었는바, ‘또는’이라는 규정 문언의 사전적 의미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한다는 의미로서, 안전보건에 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 중 한 명이 총괄하여 권한을 행사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도 둘 중 한 명이 지는 것이 합리적인 점, 의무 이행의 측면에서도 둘 중 한 명으로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처벌대상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는 면책 가능하다는 견해임. 이 견해에 따르면, 안전보건최고책임자만이 경영책임자로서 의무 이행의 주체가 되고 그 책임을 부담함⁸⁴⁾
- 실질적 판단설: 산업안전보건법 별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행위자로 특정되어 그 이상의 임원급은 책임을 지지 않는 실무경향이 있었고, 특히 대표이사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책되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하여 재해발생이 줄지 않는다는 점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이유 중 하나이므로, 위 ‘또는’을 병렬적 또는 중첩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이사와 안전보건최고책임자 모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

82) 최진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실무상 쟁점”,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국회의원 박대수 주최 정책토론회 (2021. 11. 22.), 40 참조.

83) 권창영 편집대표, 앞의 주석서, § 2(권창영 집필부분).

84) 임우택,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정책&지식』 포럼 제1043회 (2022. 6. 7.), 54-55.

나,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실질적이면서 가장 밀접하게 해당조치와 관련한 최종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진 자를 형사책임의 주체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⁸⁵⁾)

- 검토: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이 안전보건 경영을 유도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예산 등을 적절히 편성하도록 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는바, 재해예방을 위하여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데에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를 ‘경영책임자’라고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보건 인력·예산 관리에는 작업 인원의 추가 투입, 작업 방식의 변경, 위험한 기계설비의 교체 등이 포함될 것인바, 이러한 것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경영책임자’를 결정할 중요단서일 것임. 대부분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러한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인데,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내부형태는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바, 경우에 따라 대표이사의 여러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재무담당 최고책임자, 보안담당 최고책임자, 기술담당 최고책임자, 안전담당 최고책임자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이 또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함께 검토할 여지도 있음. 이때 기업의 규모 및 구조, 권한 분산 형태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단순히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만을 타인에게 일임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부분을 방치하는 방식은 오히려 대표이사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안전보건의 확보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보게 될 것임
-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단순히 직함만 보유하거나 대표이사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을 총괄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 경영책임자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 경우 결국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임

● 발주공사의 경우⁸⁶⁾)

- 공사의 감리자, 발주자의 업무대행자는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고 해당 공사 기간 동안 건설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의 대표이사 등이 경영책임자에 해당됨

85) 이에 동조하는 견해로 고용노동부(주 17), 19, 대검찰청, 앞의 책, 100, 김장식, “리포트-중대산업재해로 인한 형사책임”, 월간노동법률 (2021. 3.), 111.

86)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령 FAQ-중대산업재해부문 (2022), 38.

-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 개별 사안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의 행사나 그 결정에 관여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야 함

▣ 적용유형⁸⁷⁾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공동대표)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있다면 2명 모두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안전보건 확보의무도 역시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특히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회사 내에서의 ① 직무, ② 책임과 권한 및 ③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해당사업에서 최종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하나의 법인에 복수의 사업 부문을 두는 경우

- 하나의 법인에 두 개 이상의 사업이 있고 각각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있고, 각 사업 부문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각자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 복수의 사업 부문의 대표가 있으면서, 법인을 대표하고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가 별도로 있는 경우

- 사업 부문별 대표가 각 사업 부문의 조직, 인력, 예산 등 경영의 독립성을 가지고 별개의 사업으로서 운영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각 사업 부문별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 다만, 여러 사업 부문들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상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총괄대표가 하거나 부문별 대표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 내에서의 직위나 직무, 해당 사업 부문에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 등

87) 고용노동부(주 17), 24-26.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개념상의 비교】⁸⁸⁾

1. 경영책임자등 vs 안전보건관리책임자 vs 사업경영담당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자임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하나의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함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① 하나의 사업‘장’을 관리 단위로, ②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사업주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며, ③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 하에서 그 역할이 의무화되어 있는 자를 의미함
 - 다만, 특정 법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하나이거나 복수이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의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주가 아니면서도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함
 -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 【예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는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 법상 사용자에 해당(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 사업경영담당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지위는
 -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를 위임받은 사람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할 수 있음

2.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vs 산업안전보건법의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서 예산, 인력, 조직 등 사업 경영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대표이사란, 그 의무 이행의

주체로서 법률상의 지위를 의미함

-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① 상법상 주식회사 중 ②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이거나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라는 회사 내 ‘직위’에 기초한 의무이며, 대표이사에 같음하여 대표집행임원을 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이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상법상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3) 공공부문의 경영책임자⁸⁹⁾

▣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정부조직법(제2조 제2항,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함⁹⁰⁾

- 정부조직법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지 않는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2조 제9호 가목(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 경영책임자를 판단함이 타당함⁹¹⁾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의 “장”을 의미함

88) 고용노동부(주 17), 24-26.

89) 이하 고용노동부(주 17), 27.

90) 대한민국 각 부처에 소속된 외청의 경우 직무상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각 청의 청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검찰청의 경우에는 검찰총장, 경찰청의 경우에는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 국세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관세청의 경우에는 관세청장 등이 이에 해당함. 권창영 편집대표, 앞의 주석서, § 2(권창영 집필부분).

91) 권오성, 앞의 책, 86. 이와 관련하여,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행정부의 경영책임자가 각 부처 장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경영책임자는 헌법기관장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 국회사무처장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음. 권창영 편집대표, 앞의 주석서, § 2(권창영 집필부분). 이러한 논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기관의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공기업의 장

- 지방공기업법 제3조는 지방공기업을 ① 지방직영기업, ② 지방공사, ③ 지방공단으로 구분하고 있고, 동법 제51조는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76조 제2항은 위 제51조를 공단에 준용하는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이러한 법인의 대표자가 경영책임자가 됨
-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데,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별개로 ‘지방공기업의 장’을 두고 있고, 지방공기업 제9조에서 규정한 지방직영기업 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고려할 때 관리자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⁹²⁾⁹³⁾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함⁹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2조 제9호 가목에 따라 경영책임자를 판단하여야 함

4) 학교⁹⁵⁾의 경우⁹⁶⁾

▣ 국립학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중 국립대학: 국립대학 총장

92) 권오성, 앞의 책, 97.

93) 지방공기업의 설립현황은 2022. 9. 30. 기준 전국 441개로서 <https://www.cleaneye.go.kr/siteGuide/pu/bCompStatus.do>에서 확인할 수 있음(2022. 10. 20. 확인).

94) 공공기관지정의 상세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95) 초·중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고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학교의 구분) 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된다.

96) 이하 고용노동부(주 17), 28-30 참조.

- 국립대학을 대표하며 국립대학의 경영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총장에게 있으므로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 개별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된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⁹⁷⁾ 인천대학교: 총장
 - 총장이 국립대학 법인을 대표하며 국립대학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므로 각 국립대학의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 그 외 국립 초·중·고등학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해당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므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 【예시】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②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③ 부산해사고등학교: 해양수산부 장관(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④ 선진학교, 한국우진학교: 교육부 장관(국립학교 설치령)

▣ 공립학교: 교육감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자치사무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 교육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듯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자에 해당함(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8조, 제20조)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공립학교)를 대표하고, 해당 사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교육감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

9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총장)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음
- 사립학교는 이사장이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과 각 법인의 정관에 따라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하므로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교법인의 운영을 대표하고 학교의 운영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 국립대학 병원: 국립대학병원 원장

-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법인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대학병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이 대학병원을 대표하고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조, 제14조)
- 따라서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병원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은 법인으로 하고(동법 제2조), 대학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이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10조 제2항) 원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 학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논의

- 학교는 공중이용시설에 속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단서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중대시민재해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학교에서 종사자의 사망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음
-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중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에서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안전보건 교육, 그리고 제5장 제2절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규정은 적용이 제외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5호)

-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도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는바, 국립대학교의 총장이나 사립학교의 이사장 등은 ‘경영책임자등’으로서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다만,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배치의무가 면제되어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 2, 5, 6호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는 면제되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시행령 제4조 제7호 종사자(관계 수급인 및 수급인의 종사자 포함)의 의견 청취 의무, 법 제5조의 도급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 수급인 및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의무는 있음



1. 적용범위

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의의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함
- 중대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적용됨⁹⁸⁾

나. 적용대상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대표하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음

98)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주체가 될 개연성이 높아 안전경영과 세부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구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인력이나 조직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적용을 배제함. 제21대 국회 제383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1. 1. 6.), 29-40.

- 따라서 장소적 개념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법의 적용범위를 판단하여서는 안 됨
- 원칙적으로 본사와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장,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예컨대 사무직과 생산직), 직위(예컨대 고위직과 하위직), 업종(예컨대 제조업과 서비스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공사 시청료 징수원의 담당업무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단일 기업체인 피고 공사라는 하나의 사업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사업의 종류, 영리·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이 일회적이거나 사업 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법의 적용 대상임⁹⁹⁾

2)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적용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6호 제외)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에 포함
- 사무직 근로자라도 넘어짐, 감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로사 등과 같

99)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사업인지의 여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1979 판결).

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규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여 사무실의 설계·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그러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배치의무가 면제되어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의무 중 시행령 제4조 제2, 5, 6호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외되는 부분에 한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사항은 면제될 것임

3) 해외 사업장 적용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이외의 모든 사업장을 적용범위로 규정하면서 중대재해 발생장소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형법의 기본원칙인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원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외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국내법인 또는 기관이 해외업체에 출자만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도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것임
 - 즉,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가 출장·파견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¹⁰⁰⁾

다. 상시 근로자 기준

1)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함

100) 대검찰청, 앞의 책, 136.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됨¹⁰¹⁾
- 다만,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는 법 제2조 제7호 나목, 다목의 종사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은 되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이 5명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도급인 소속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인 소속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수급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여도 도급인은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해야 함
- 반대로 도급인 소속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이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는 5명 이상인 경우 도급인인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수급인은 법의 적용대상임
-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근로자 포함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가운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는 제외하고 있는 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중대재해처벌법은 매우 엄격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그 적용범위를 명문의 규정 없이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경우 상시

10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상주직원 3인을 고용하고 이사직업에는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삿짐운송업체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근로자에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¹⁰²⁾¹⁰³⁾

● 공무원

- 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에 포함됨

● 외국인근로자

- 우리나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외국인의 근로계약에 대한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함
-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체류자격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인지 여부는 상시 근로자 여부 판단과 관계없음(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참조)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법 제2조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¹⁰⁴⁾

102) 대검찰청, 앞의 책, 138. 다만, 위 논문에서는 입법정책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함.

103) 이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로 보며(파견법 제35조),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음. 고용노동부(주 17), 33. 이와 같은 견해로 전형배,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 노동법포럼 제34호 (2021. 11.), 276(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이 무엇이든 동일한 사고의 위험이나 동일한 유해인자의 위험에 노출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수가 상시로 5명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해설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파견법 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파견법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함)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매일 사용한 근로자의 수를 합한 숫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 상시 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산정기간 중 가동 일수
- 2022. 1. 27. 법 시행 후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 날부터 법이 적용되어,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게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발생함
-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중대산업재해와는 다르게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을 받음

10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①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2.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¹⁰⁵⁾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함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또는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해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다음과 같음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105) 법 제2조 제7호에 종사자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포함되는바, 법 제4조에서 이러한 종사자들에 대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는 대표적으로 소위 사내 하청으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급인으로부터 단순히 인력만을 제공받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음. 권창영 편집대표, 앞의 주석서, § 4(전형배 집필부분).

〈구성요건 및 처벌규정 요지〉¹⁰⁶⁾

법 제4조	의무주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적용대상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목적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고려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 고려
	의무내용	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른 조치
법 제6조	행위불법	법 제4조 및 제5조 위반
	결과불법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결과
	법정형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사망 이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보호 대상

-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방지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종사자는 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②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각 단계별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임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란 사업주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사업 운영에 따른 경영상 이익의 귀속 주체를 의미함¹⁰⁷⁾
- 사업 또는 사업장
 -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¹⁰⁸⁾
 - 따라서 장소적 개념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법 적용범위를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조직 전체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106) 대검찰청, 앞의 책, 153.

107) 고용노동부(주 17), 40.

108) 고용노동부(주 17), 40.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함¹⁰⁹⁾
 - 대법원은 사업주(도급인)의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음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¹¹⁰⁾
 - 사내하도급의 경우, 통상적으로 원청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배·운영·관리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 발생 원인, 즉 원청이 시설, 장비 등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지위나 능력이 있는지, 해당 유해·위험 요소를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중요한 고려요소로 판단함¹¹¹⁾

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개요¹¹²⁾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함

109) 고용노동부(주 17), 41.

110)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111) 강김윤,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재판 실무상 쟁점”에 대한 토론문,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사법정책연구원 (2022. 7. 8.), 91.

112) 고용노동부(주 17), 41-43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의 비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는 ‘체제’라는 용어는 사업장 안전보건의 관리에 필요한 조직(organization)을 의미함
 - 실제로 산업안전보건 제2항 제1절 이하의 조항을 살펴보면 이사회(제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 관리감독자(제16조), 안전관리자(제17조), 보건관리자(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제21조), 산업보건의(제22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2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4조) 등 모두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그 역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반면,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여 그 위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개선을 하는 일련의 관리 또는 경영체계를 말함
-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안전보건경영체계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의 7가지 요소로 구성됨¹¹³⁾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는 그 내용을 아래의 9가지로 구성함

-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113)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2021), 8.

▣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모든 기업 및 기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 등에 따른 각기 다른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고 인력 및 재정 사정 등도 다르므로 유해·위험 요인을 통제하는 구체적 수단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며 기업 여건에 맞게 자율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각 호 규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 중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부분에 대한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예시규정으로 볼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열거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과의 관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¹¹⁴⁾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후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인증을 받아 적정성을 확인하는 제도임. ISO45001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국제규격인증으로 산업 보건 및 안전관리 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적 필요에 따라 인증 여부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전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경영책임자등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법령에 따른 의무로서 안전경영체계 구축 및 관리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사법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으로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경영체계 구축 및 관리의무와 동일하다거나 대체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참작될 여지는 있음

1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999. 6.경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계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를 시작하여 국제 표준기구에서 공표한 기준을 반영하는 등 수정을 통해 현재까지 운영 중임.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¹¹⁵⁾

시행령 제4조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함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¹¹⁶⁾가 규정하는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과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음
- 반복적인 재해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소하기 위한 경영적 차원에서의 노력이나 구체적인 대책 방안 등을 반영한 목표나 경영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목표나 경영방침 수립을 명백히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세우지 않은 것 하나만으로는 의무 위반과 재해 사이에 곧바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의무 위반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들의 안전·보건 의식의 부재에 따른 다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보아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클 것임

115) 고용노동부(주 17), 44-46 참조.

116)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¹¹⁷⁾

시행령 제4조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 의의

- 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가 총 3명 이상이며, ②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체의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함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 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함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는 의미
 -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 정책의 수립이나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배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 등 법령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을 총괄·관리하는 것을 말함

117) 고용노동부(주 17), 47-52 참조.

- 다만, 사업장의 모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 조직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라는 뜻은 아님
- “전담 조직”이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단으로 다수인의 결합체를 의미함
 - 전담 조직의 구성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조직의 인원·자격 등 구성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두어야 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사업장 현장별로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외에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 단위에서 별도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전담 조직의 구체적인 권한과 조직원의 자격 및 인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단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됨
- 전담 조직의 구성·자격·역할
 - ‘전담’ 조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직은 부서장과 해당 부서원 모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생산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보건과 목표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음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은 특정 사업장의 안전·보건의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하여야 함
 -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은 물론 이를 지원하는 등 총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의 유해·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시적 안전보건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휘 본부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함

- 형식적 조직 설치로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며,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이행 여부는 전담 조직의 구성, 역할, 권한,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실질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¹¹⁸⁾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개별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수를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 단위에서 합산하여 총 3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것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 금융 및 보험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배치 의무가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지 않을 수 있음

【예시】

금융 및 보험업(대분류), 사회복지 서비스업(대분류), 광업지원서비스업(중분류),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중분류), 정보서비스업(중분류), 전문 서비스업(중분류),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중분류) 등¹¹⁹⁾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실제로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안전관리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수급인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둘 필요는 없으나,¹²⁰⁾ 수급인의 안전관리

118) 권창영 편집대표, 앞의 주석서, § 4(전형배 집필부분).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안전전담 조직에서 안전보건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안전전담 조직의 업무 수행이 불완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제6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이러한 미비한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

119)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주 17), 127 이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배치기준” 참조.

12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자 배치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급인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함

-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 인력의 수와 실제 배치한 전문인력의 수가 다른 경우에도
 -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같은 조 제6호와는 다르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 이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수의 합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함
 - 따라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배치한 것으로 간주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도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수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함

▣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일 것

-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것
 -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이므로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이 500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일 것¹²¹⁾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영 제16조 제5항 및 제20조 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 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12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에서 매년 7월말 발표.

- 다만, 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시공능력 순위가 200위 범위 밖에 있다가 200위 이내로 평가된 경우에는 시공능력 순위를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함
-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가 되지 않는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 건설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함

4)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¹²²⁾¹²³⁾

시행령 제4조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이 확인·개선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의 업무절차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기업이 스스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122) 고용노동부(주 17), 53-64 참조.

123) 고용노동부에서는 “전문가 및 실무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는 내용으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동영상을 제작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https://youtu.be/R4WDfM2QA4o>).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시 대책의 적절성, 개선 진행 상황 및 개선 완료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위험요소의 제거·대체, 공학적·행정적 통제, 개인 보호구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험성이 합리적인 수준 이하로 감소 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지난 2008. 2. 비준한 'ILO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1981년)'에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위험이 없도록 보장)와 사업장 차원에서 합의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되어 있음

- 다만,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등을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및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대로 사업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관리토록 하려는 것임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의 마련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대책의 수립·이행까지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업무처리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도록 함은 물론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정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또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은 ①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②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보수 시 및 ③ 작업방법·절차의 변경 등이 실행되기 전에 실시하여 위험성을 제거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현재 관리되고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
 -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포함하여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함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절차에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유해·위험 작업을 하

고 있는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함

- 소속근로자 뿐만 아니라 상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 및 유지보수 작업, 납품을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기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① 사업장 내 모든 기계·기구, 설비 현황을 파악하고 기계·기구, 설비마다 위험 요소를 세부적으로 확인하되, 특히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던 기계·기구, 설비는 반드시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② 화재·폭발·누출의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등을 파악하되, 특히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에 있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정보, 번호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파악한 화학제품에 함유된 물질이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 1에 해당한다면 유해인자로 분류하여야 함
- ③ 기계·기구, 설비, 유해인자 및 재해 유형과 연계하여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을 파악하도록 하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작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절차
 - ①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제거·대체·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②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유형별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참고하여 위험 기계·기구, 설비, 유해인자, 위험장소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여부를 확인 후 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유해·위험요인이 제거, 대체, 통제 등 개선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작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위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 등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점검은 사업장마다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한편,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또는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것임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업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까지 동일한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이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시행령은 이행점검의 주기를 반기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행점검의 주기이지 유해·위험요인평가 주기가 아님
 - 유해·위험요인평가는 위험성평가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평가가 있고, 새로운 기계·설비의 도입, 신규 화학물질의 사용, 작업 공정의 변경 등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변화가 생기면 수시로 하는 평가가 있음. 따라서 이행점검은 위와 같은 정기평가와 수시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적어도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함¹²⁴⁾
- 유해·위험요인평가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정책의 중핵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마땅히 점검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기재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함(시행령 제13조 참조)

124) 권창영 편집대표, 앞의 주석서, § 4(전형배 집필부분).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후 필요한 조치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의 이행에 대한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검 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대체, 통제 등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2020-53호)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각각의 사업장마다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거나 사업장에서 실시하도록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위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봄
- 다만,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그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별도로 하여야 함
 - 따라서 위험성평가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함이 확인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는 정기평가의 경우 최초 평가 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마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일로부터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절차: ①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 ②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③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 ④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⑥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유형: 최초평가 / 정기평가(매년) / 수시평가(시설·공정 변경시, 산재발생시 등)

구분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실시 시기	사업장 설립일부터 1년 이내 실시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정한 위험성평가는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현재까지는 권고적 효력만 있어왔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하나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의 시행을 좀 더 고려하는 상황이었음
 -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위험성평가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유해·위험요인평가의 시행을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하여야 할 강행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사실상 부담함¹²⁵⁾

5)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¹²⁵⁾

시행령 제4조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①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②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함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마련과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용 지출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마련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을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의 하나로 명시한 것임

▣ 예산의 편성

-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
 - 예산의 편성 시에는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 유해·위험요인 확인 절차 등에서 확인된 사항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정 여건 등에 맞추어 제거·대체·통제 등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수준만큼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위한 예산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란 산업안전보건법 등 종사자의

125) 권창영 편집대표, 앞의 주석서, § 4(전형배 집필부분).

126) 고용노동부(주 17), 66-69 참조.

-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를 말함
- 특히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필요 인력을 의미함

【예시】

- ① 타워크레인 작업 시 신호수 배치(안전보건규칙 제146조 제3항)
 - ② 스쿠버 잠수작업 시 2명이 1조를 이루어 잠수작업을 하도록 할 것
(안전보건규칙 제545조 제1항)
 - ③ 생활폐기물 운반 시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 제3호 나목)
 - ④ 2인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대한 기준 마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3항) 등
-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상 기준’이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예산의 기준이 될 수 있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¹²⁷⁾의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이고,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라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의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 편성 의무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의무로서,

127)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그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로서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즉,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이나 용역 등을 매개로 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하는바, 특히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기 위한 예산 편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국한해서는 안 되며, 이와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하여야 함
- 특히 인력뿐만 아니라 사업장 및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과 장비도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맞게 안전조치 및 방호장치 등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

-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예산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의 내용은 아니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포함함
- 또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포함함

▣ 예산을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의 편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편성된 용도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용도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편성된 예산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명확하게 예산의 항목과 각 항목에 배정된 예산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배정된 예산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충분한 정도가 되어야 함
- 감독과 수사에서 예산의 실질적인 편성과 집행이 문제가 될 때에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편성된 예산과

집행 내역을 알 수 있는 세부 명세를 담은 자료를 보관하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으로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함(시행령 제13조 참조)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를 할 것¹²⁸⁾

시행령 제4조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함)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②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실제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임
- 제3호에서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적절하게 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편성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

128) 고용노동부(주 17), 70-74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안전보건관리 주체	역할	비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5조)	사업장 실질적 총괄관리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시행령 제14조 별표 2)
관리감독자 (제16조)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 직접 지휘·감독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세부규정 (시행령 제15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2조)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또는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업 (시행령 제5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통상적으로 사업장의 현장소장, 공장장 등을 말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함(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1.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장에서 위 업무를 수행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함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함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 부서 단위에서의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자신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착용 등 점검 작업 전 안전 미팅진행 등 작업과 관련하여 종사자와 가장 밀접하게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과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함
- 또한 관리감독자에게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등에 필요한 시간, 비용 지원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지정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함
 -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는 사업장은 별도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도 수행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업무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4조)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사업장에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작업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

-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법령에 의해 정해진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 항목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각각 해당 업무 수행 능력과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평가 기준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어야 함

□ 평가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 평가와 관리는 그 평가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이루어져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다른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시에 병행하여 평가하여도 되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평가만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경우라도 평가 결과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함

7)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¹²⁹⁾

시행령 제4조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의의

-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하여야 하며,
-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므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도록 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안전관리자 등의 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전문인력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129) 고용노동부(주 17), 75-78 참조.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배치의무는 새로운 의무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에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수범자를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자연인을 수범자로 규정한 점이 다름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배치 의무를 규정한 내용을 다시 규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전문인력 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효과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의 기본범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안전조치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만으로 제한되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는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본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효과가 있음¹³⁰⁾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

안전보건관리의 주체	역할	비고
안전관리자 (제17조)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시행령 제16조 별표 3)
보건관리자 (제18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시행령 제20조 별표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19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제조업, 임업 등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선임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있는 경우 제외함
산업보건의 (제22조)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3에 따라 안전

130) 권창영 편집대표, 앞의 주석서, § 4(전형배 집필부분).

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치하는 안전관리자의 수가 달라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치하는 안전관리자의 수가 달라짐(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임
 - ①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에 해당하고, ②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없으며, ③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보건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는 사람임
 -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으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지만, ①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였거나, ②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건설업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인 사업장만 가능함)는 산업보건의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 2천명 당 1명의 산업보건의를 위촉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¹³¹⁾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각각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함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

131) 산업보건의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61호) 제2조(담당근로자 수)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로 한다.

계없이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를 것

-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배치 의무를 면제하거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겸직이 가능한 경우

- ①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② 건설업의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인 사업장(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원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와 겸직이 가능
-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가능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음
- 다만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별도 고시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시간을 안전 또는 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¹³²⁾

8)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 여부 점검¹³³⁾

시행령 제4조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132) 안전관리자 등의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위 최소시간에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함[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제2022-14호) 제3조 참조].

133) 고용노동부(주 17), 82-85 참조.

▣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에 따라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작업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인 종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두도록 한 것임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 종사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해·위험요인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되,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중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 사내 온라인 시스템이나 건의함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사업장 단위 혹은 팀 단위로 주기적인 회의나 간담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는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서 더 나아가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 아니라 수급인 사업주 소속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등 널리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¹³⁴⁾

▣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 후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방식이나 절차, 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함
 - 다만,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

134) 권창영 편집대표, 앞의 주석서, § 4(전형배 집필부분).

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

- 종사자의 의견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제시되는 의견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¹³⁵⁾에는 청취된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님
-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는 점이 명백함에도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이 되지 않았고, 만약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있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종사자 의견 청취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의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 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행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함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어야 함
 -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함
 - 심의·의결 사항으로는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135) ▲ 기업의 경영상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의견 ▲ 특정 업체의 기계·기구, 장비 등의 구입 ▲ 비합리적으로 과도한 예산 요구 ▲ 안전·보건 목적이 아닌 근로조건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등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체임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 ▲ 작업 시작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방법 ▲ 재해 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을 협의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의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함)
 - 공사금액이 120억 원(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도급인이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운영하는 노사협의체를 말함
 -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함
 - 심의·의결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과 동일함

9)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및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점검¹³⁶⁾

시행령 제4조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¹³⁶⁾ 고용노동부(주 17), 87-89 참조.

▣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①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 ②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③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현장에서 잘 조치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에 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대응조치,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에 관한 매뉴얼은 긴급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해당 조치에 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전원에게 공유되어야 함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작업 중지와 근로자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매뉴얼에는 사업주의 작업 중지 외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관리 감독자의 작업중지권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매뉴얼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의 제거 순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며, 위험요인의 제거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이 진행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특히 사업주(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 도급인은 ▲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에 관한 훈련을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5호)
 - 이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매뉴얼에는 위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근로자가 사업장 내 작업장소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권의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 근로자로부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작업을 중지한 사실을 보고받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해당 장소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개시하도록 하여야 함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119 등 긴급 상황 시의 연락체계와 함께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본적인 응급조치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다만,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음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현장 출입통제, 해당 사업장 외 유사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등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 사항 공유,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함
- 아울러 작업 중지 조치는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지되어야 함

10)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¹³⁷⁾

시행령 제4조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137) 고용노동부(주 17), 90-93 참조.

▣ 의의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는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부담함.¹³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위험 작업이 많은 수급인의 경우에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관한 수급인 자체의 능력과 노력 없이는 산업재해 예방이 쉽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수급인 선정 시 기술·가격 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
 - 도급·용역·위탁 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 수준을 평가하여 적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해 수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요소와 기준이 낙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 판단을 위한 세부 기준이 단지 형식적 기준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함
 - 평가 기준에는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참여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과 함께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138)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능력과 기술 역량에 관한 항목도 포함되어야 함

- 평가 기준과 절차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개별 업무의 내용과 속성, 장소 등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마련하되 안전·보건 역량이 우수한 수급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자가 해당 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금액으로 정하되, 총 금액이 아닌 가급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¹³⁹⁾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작업 수행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도급계약에 수반되는 금액이며, 도급인이 도급금액 외에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아님
 - 도급인이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 수준에 관한 평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최소한 수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할 수 있는 비용을 포함하여 도급비를 책정하지 않고 비용만 고려하여 무조건 최저입찰제 수급인을 선정한 후 수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법 위반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¹⁴⁰⁾
-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안전·보건에 관한 별도의 독립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기간을 고려한 계약기간을 의미함

139)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 제도와 같은 취지를 가진 제도를 도급 등을 주는 사업 전반에 확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따라서 관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 권창영 편집대표, 앞의 주석서, § 4(전형배 집필부분).

140) 강점윤, 앞의 글, 101.

- 특히 건설업, 조선업의 경우에는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기간 건조기간을 정하여서는 안 되며, 기상 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 등 돌발 사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과도하게 짧은 기간을 제시한 업체는 선정하지 않도록 하는 항목도 기준에 포함하여야 함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이행 여부 점검

-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체가 선정되는지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르면 안전 및 보건 확보가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업체와는 계약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수급인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함은 물론, 해당 관리 비용을 집행하고 공사기간, 건조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실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다.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 제1항 제2호)¹⁴¹⁾

▣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재해 발생 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함은 물론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받아야 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실무자와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를 거쳐 재해 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응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함

▣ “재해”의 해석: ‘재해’ vs ‘중대재해’ vs ‘중대산업재해’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산업재해에 이르지 아니하는

141) 고용노동부(주 17), 94-95 참조.

산업재해도 포함된다고 볼 것임

- 사소한 사고도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경미한 산업재해라 하더라도 그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를 통해 중대 산업재해를 초기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¹⁴²⁾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안전보건에 관한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보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경영책임자들에게 지나치게 경미한 재해까지 재발방지 대책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산업재해의 반복성과 상당성에 비추어 적어도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재발되지 않도록 경영책임자 차원에서 나서야 할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야 할 것임¹⁴³⁾
-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대책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¹⁴⁴⁾

□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재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제도화하여야 함¹⁴⁵⁾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이미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사후 조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결과 분석,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유사한 재해가

142) 하인리히 법칙(1:29:300의 법칙)

-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
-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지할 때 발생하므로 문제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

143) 대검찰청, 앞의 책, 213. 고용노동부도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경미하거나 사소하지만 반복되는 산업재해도 이 규정의 “재해”에 포함된다는 입장임. 강검윤, 앞의 글, 102.

144) 강검윤, 앞의 글, 102.

145)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함

-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은 재해의 규모·위험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절차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¹⁴⁶⁾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발생하겠지만, 소급금지원칙 등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미흡의 경우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임.¹⁴⁷⁾ 다만, 과거 재해가 발생한 장소나 기계의 경우 위험성평가 등을 통하여 유해·위험요인을 방지하였어야 할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으로 처벌은 가능할 것임

라.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 제1항 제3호)¹⁴⁸⁾

▣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의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였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과는 별개로, 개선·시행명령의 미이행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법 제6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 개선·시정명령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시행되어야 함¹⁴⁹⁾

146) 관련규정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2항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는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③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등을 기재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2조).

147) 송인택, 앞의 책, 173.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입장임. 강검운, 앞의 글, 102.

148) 고용노동부(주 17), 96-97 참조.

149)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함(행정절

- 개선 또는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을 의미하고, 행정지도나 권고, 조언은 포함되지 않음
-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및 보건 확보와 무관한 내용에 대해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도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율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실은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에게 보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법의 취지가 적법한 행정처분의 불이행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행정처분 자체에 위법이 있다면 이를 불이행하던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음
 - 행정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효력정지 기간 동안 설령 행정처분과 관련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본 호를 위반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음¹⁵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의 예]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기구·설비·원재료(이하 “기계·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대체·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

차법 제24조 제1항).

150) 권창영 편집대표, 앞의 주석서, § 4(전행배 집필부분).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마.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4조 제1항 제4호)¹⁵¹⁾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①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 ②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51) 고용노동부(주 17), 98-106 참조.

1) 개요

▣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해당 법령상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처분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관리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됨

▣ 안전·보건 관계 법령

-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함(시행령 제5조 제1항)¹⁵²⁾
-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은 모두 포함됨
-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함
 - 법 제정 목적은 일반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그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내용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등을 포함함
 - 아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 참고

152)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산업안전보건법이 해당함은 분명하나, 그 외의 법령의 경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범위와 내용을 법률만을 통해서 예상하기 어렵고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음.

【참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

법령명	관련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모두 포함
광산안전법	법률 제정 목적에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를 포함하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법 제5조), 안전교육의 실시(법 제7조), 안전 규정의 제정 및 준수(법 제11조) 등에서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내용 규율
원자력안전법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로 방사선작업종사자가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 부과(법 제59조의2), 방사선장해방지조치(법 제91조) 등
항공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의무 적용이 제외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선박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의무 적용이 제외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정 목적에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포함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구실책임자의 지정(법 제9조), 안전점검(법 제14조) 및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법 제15조), 교육·훈련(제20조) 및 건강검진(제21조) 등의 사항을 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의 보호 조항(법 제14조의5)에 따라 시행규칙 제16조의3으로 정해진 보호장구의 지급, 운전자 포함 3명1조의 작업 등의 안전기준 등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보호 조항(법 제36조)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선원법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등 선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법 제82조), 의사의 승무(법 제84조) 등 규정을 포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관련 종사자의 건강을 위해 시설 및 종사자의 피폭량 등에 대한 조사 등 준수사항(법 제14조), 결함 가공 제품에 대한 조치(법 제16조) 등을 규정

▣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별도의 조직 등을 두어, 경영책임자가 그 조직을 통해 사업장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와 문제점 등을 보고 받고,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법상 의무 이행을 해태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제반 조치들을 말하는 것임

- 각각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는 그 법에 따른 의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해당 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는 해당 법령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상 조치의무와는 다른 별개의 의무임

-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 점검 결과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 미실시된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함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하거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 등 자신이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 점검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의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집행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의 점검 주체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임

- 다만,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준수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조직을

통해 실행될 수 있음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실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채택하여야 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조직과 절차 등 시스템을 마련하여 법적 의무 이행 여부는 물론 성과와 문제점 등을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함
 - 만약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자체 점검 역량이 부족하여 그 점검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것도 가능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의 하나로서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점검은 자율적으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임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개별적인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것으로 양자는 의무의 법적 성격과 내용 및 대상이 상이함
- 이 조항에 따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관한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임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전문가나 현장실무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실 점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방식의 적정성 등을 살펴야 함
- 동 점검 의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부여된 것임
 - 해당 점검 및 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실 점검의 경우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점검의 지시를 하였으나 점검 또는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불이행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귀속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예로는 산업안

전보건법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법 제17조), 보건관리전문기관(법 제18조), 안전보건진단기관(법 제47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법 제73조) 등이 있음

- 점검의 내용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진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한 내용에 한정됨(전문성이 인정되는 분야로 제한)
- 아울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의 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업무의 위탁과는 구분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업무 위탁이 허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도 점검의 위탁은 가능함

▣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점검 과정을 통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력의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집행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력과 예산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므로,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으로 법령상의 의무조차 실효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관리상 조치 의무가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된 것임
- 위탁하여 점검하는 내용에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제3호에 대해서는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과실로 누락한 경우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 체계로 인하여 실제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중 일부 법령상의 의무 이행 및 점검을 누락한 경우, 경영책임자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됨
 -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보고받아 점검하고 의무 이행이 미흡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면 관리상의 조치를 다 한 것으로 평가될 것인데, 평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리스트를 관리하며 해당 법령상의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경우라면, 실령 일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여 누락하였

다 하더라도 경영책임자들에게는 점검 의무 불이행에 관한 고의 또는 책임이 조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¹⁵³⁾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
 -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 또는 보고를 받은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은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안전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임

▣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중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교육은 모두 포함되므로 그 교육이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것이고, 법령상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 작업에 따른 교육이 아닌 경우에도 마땅히 준수되어야 함

(예) 항공안전법상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항공안전법 제72조),
선박안전법상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선박안전법 제41조의2) 등

▣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이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완료 후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며, 미실시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53) 최진원, 앞의 글, 56.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교육의 실시·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미실시된 경우 의무주체가 수급인 등 제3자인 경우 해당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자신이 교육 의무가 없는 경우까지 직접 교육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교육을 실시해야 함
- 다만,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 교육을 받지 않은 종사자는 해당 작업에서 배제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입법적 비판

-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의 교육과 관련하여, 1차 수급인 외 2, 3차 등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N차 수급인이 있는 경우 경영책임자가 어디까지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불분명함
- 이에 대하여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의 근로자는 모두 도급인의 종사자에 포함되므로 차수에 관계없이 모든 교육을 확인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②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2, 3차 수급인에 대하여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 ①의 견해에 따르면, 도급인으로서 몇 차까지 수급인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견해를 취하면 도급인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¹⁵⁴⁾

3.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54) 김상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의 법리적 검토”, 한국경영자총협회 주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 (2021. 8. 10.), 10.

1) 의의

- 기업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도급을 비롯한 간접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외주화는 위험의 외주화로 자리잡게 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음
 -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수급인 등 제3자의 종사자에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위험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이 외주화를 통해 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빈번하였음
-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종사자’의 개념(법 제2조 제7호)을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이와 같은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함(법 제4조)
- 법 제5조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예를 들어, 사업장 밖에서의 업무), 해당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인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법 제4조의 보충적 조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¹⁵⁵⁾

2) 주요 개념

▣ 도급의 의미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등 안전에 관한 법률로서 사업의 수행에 투입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의 개념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의 개념¹⁵⁶⁾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155) 고용노동부(주 17), 108.

156)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 즉,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 나목, 제5조 또는 제9조에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민법상 계약의 유형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고 위 ‘도급, 용역, 위탁 등’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인 도급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제3자의 종사자’의 의미

- 법 제5조는 보호 대상으로 제3자의 종사자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문의 취지가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또는 기관과 직접 노무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널리 그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과 기관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자연인으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면 그 사람도 법 제5호가 규정한 제3자의 종사자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¹⁵⁷⁾
 - 이에 대하여 수급인인 제3자를 법 제5조의 보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문 규정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법 제5조의 보호대상은 모든 종사자가 아니라 ‘제3자의 종사자’로 한정함으로써 명문 규정에 부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음¹⁵⁸⁾

▣ 법 제4조와 제5조의 관계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여러 차례의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그 법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급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종사자는 해당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 포함되며 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보호대상임
 - 법 제5조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임
- 도급인의 책임 요건 비교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57) 권창영 편집대표, 앞의 주석서, § 5(전형배 집필부분).

158) 김·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대응팀, 앞의 책, 124.

산업안전보건법 ¹⁵⁹⁾	중대재해처벌법
<p>1) 도급인의 사업장인 경우</p> <p>2) 도급인 사업장 밖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p> <p>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했을 것</p> <p>②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일 것</p> <p>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21개 위험장소일 것</p>	<p>1)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급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수급인 및 수급인의 종사자는 도급인의 종사자로 봄)→법 제4조 적용</p> <p>2) 도급인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법 제5조 적용</p>

▣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21개 위험장소¹⁶⁰⁾에서 작

159)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16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법 제1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업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 설비, 장소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

- 고용노동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 지침」상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의 의미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의 해석에 참고할 수 있음¹⁶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장소적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더라도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21개의 위험장소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 및 ‘지배·관리하는 장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 고용노동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 지침」에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의 의미와 관련하여,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을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음¹⁶²⁾

13.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화재·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1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 제4호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라.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급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 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161) 박상진, 앞의 글, 119.

162) 고용노동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0.1.16.)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20. 3.).

<예시1>

- 사업장 밖의 안전시설이나 주요설비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해체 및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가능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범주에 해당
- 이와 달리 ① 수급인 자신이 작업장소나 시설·설비 등을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시설·설비 및 장비에 대한 시설변경 및 안전장치 설치·해체를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행하는 경우 등은 도급인의 지배·관리 영역 밖임

<예시2>

- 도급인이 자신의 업무를 관계수급인에게 맡기기 위하여 작업장소나 설비를 임대계약의 형식으로 지정·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의 실질이 지배·관리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장소는 도급인의 책임장소로 볼 수 있음
- *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

<예시3>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나 시설 등을 무상임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범주에 해당

<예시4>

- 도급인 사업장 밖의 제3자 소유의 작업장소*나 수급인 소유 시설의 경우 도급인의 지배·관리권이 미치지 못하므로 도급인의 책임범위로 보기 어려움
- * 에어컨 설치 및 수리작업, 인터넷 설치 및 수리작업, 방문요양 등
- 이러한 작업장소 등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음

<예시5>

-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공단이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였고, 해당 사업장에서 민간업체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인한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
- 그 사고가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 할지라도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추락위험장소이므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제38조에 따른 사업주로서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공단은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짐

<예시6>

- 택배원이 건설현장 내 배송업무(수령인이 건설공사 도급인의 근로자,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 등)를 한 경우
-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업무를 택배원에게 맡긴 것이 아니므로 도급으로 볼 수는 없음
- ※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자는 건설현장 내 기계·기구 및 설비, 시설물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음

- 관련 예시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생산 자체를 위탁한 경우에 생산시설이 도급인의 소유이거나 도급인의 근로자가 수급인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지휘·감독 또는 업무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음¹⁶³⁾
-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과 별도로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고 있음
 -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의하면서 다른 제한적 요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개념에서 ‘건설공사발주자’를 제외할 이유는 없음
 -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¹⁶⁴⁾의 ‘건설공사발주자(통상 시행사)’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종사자에 대해 도급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임¹⁶⁵⁾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의 충돌 문제
 -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과정에 개입하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함) 위반으로 처벌해왔으면서도 이를 그대로 둔 채, 수급인의 작업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를 수급인의 작업공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엄벌하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한 것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에게 안전관리를 위해 수급인의 작업공정에 개입하면 파견법 위반으로, 방치하면 중대재해처

163) 강검윤, 앞의 글, 25.

164)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65) 고용노동부(주 17), 104. 중대재해처벌법 입법과정에서 법안심사 중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발주는 제외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논의 끝에 최종 법률안에서 발주는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됨. 제21대 국회 제383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0. 12. 29.), 53.

벌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음¹⁶⁶⁾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이 안전 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¹⁶⁷⁾ 다만, 도급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 관리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개별 근로자들 각자에 대해서는 작업행동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서도, 도급인의 안전관리업무 중에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때에도 점검과 확인을 이유로 관계수급인의 개별 근로자들 각자에 대해서 작업행동 등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등을 통하여 점검활동을 위한 요청이나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러한 안전 점검과 확인을 명목으로 관계수급인의 개별 근로자들 각자에 대해서 작업행동 등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지 않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불법 파견의 징표로 판단하면 안 될 것임¹⁶⁸⁾

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처벌

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처벌)

-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66) 송인택, 앞의 책, 19-20.

167)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2019. 12. 30.).

168) 김·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대응팀, 앞의 책, 286-287.

가.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
 - ① 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 ②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③ 중대산업재해로 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법 위반 주체로서 처벌하는 것임

나. 법적 성격

▣ 신분범

-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죄(이하 “산업재해치사죄등”이라 함)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진정신분범¹⁶⁹⁾임

▣ 부작위범의 형태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의 소위 ‘산업재해치사죄’와 동조 제2항의 ‘산업재해치상죄’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법 제4조 및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각종의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형벌로 처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따라서 위 치사죄와 치상죄는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여 사상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죄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169) 형사법상 ‘신분 또는 신분범’이란 형법 제33조의 공범과 신분 규정에 명시하고 있듯이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진정신분범)’ 또는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부진정신분범)’를 말함.

- 법 제4조 및 제5조의 작위의무는, 행정법규의 벌칙규정이 적용되는 (작위) 요구규범이 취하는 통상적인 형식과 같이,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어떤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있는 전형적인 진정부작위범의 형태이긴 하지만, 안전보건 확보의무라는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자체로는 처벌대상이 아님¹⁷⁰⁾
-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수인에게 의무가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으므로, 그 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닌 자에게는 해당 의무가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가 해당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음
 -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닌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음¹⁷¹⁾

▣ 결과적 가중범의 유사한 형식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은 동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문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해 결과적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형이 가중되는 결과적 가중범¹⁷²⁾과 유사한 형식이나, 동법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상해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원래 의미의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비교】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안전조치위반치사죄, 보건조치위반치사죄(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는 안전조치위반죄 또는 보건조치위반죄(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라는

170) 김성룡,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둘러싼 형사법적 쟁점 검토”, 법무부·고용노동부 주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 (2021. 12.), 38.

171) 김·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대응팀, 앞의 책, 227.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에 대한 판결로서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에 필요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죄에 대한 판결로서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도12973 판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판결로서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등 참조.

172) 결과적 가중범은 예를 들어, 폭행치사죄와 같이 폭행이라는 고의의 기본 범죄를 범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함. 원칙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범을 결합한 범죄임.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의 기본 범죄가 있어야 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함. 박중순, “결과적 가중범과 예견가능성”, 형법판례 150선, 박영사 (2019), 38-39.

기본범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임

- 다만,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이 고의와 과실의 결합 형태인 범죄이고 기본구성요건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위험이 중한 결과로 실현됨으로써 단순 과실범에 비하여 불법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음
 -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의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죄책은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인정되어야 함

다. 범죄의 구성요건

1) 개요

- 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성립하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사망(결과 발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함
- 종사자에게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성립하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상)죄’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성립함
- ①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 위반, ②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를 포함함), ③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결과의 발생, ④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⑤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2)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진정신분범임. 다만, 신분이 없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 제31조(교사범)부터 제32조(종범)까지의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는 있음.¹⁷³⁾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II. 3. 마, 바항에서 전술함

3)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본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 중대재해처벌법은 엄중한 형사제재 규범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법적 명확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법령상 제반 의무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으나,
 -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해 법 제4조 제1항 제2호(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같은 항 제3호(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경영책임자등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서지 아니하거나(2호),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경영책임자등이 이에 대해 간과한 경우(3호)를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내용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법적 명확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음
 - 문제가 제기되는 조항으로는,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중 시행령 제4조 제3호와 관련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법적 평가가 필요함. 또한 시행령 제4조 제4호 가목에서의 ‘필요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함
 - 최근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규정 형식이 유사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는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173)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상)죄는 진정부작위범의 형태로서,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수인에게 의무가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으므로, 그 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닌 자에게는 해당 의무가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가 해당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음.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서의 공동정범의 문제는 대표이사,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주, 안전보건최고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정의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그들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문제로 귀결될 것임. 김성룡, 앞의 글, 43.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건)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도 입법 목적, 사업의 규모와 해당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임¹⁷⁴⁾

4) 인과관계¹⁷⁵⁾**▣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법 제4조,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주 또

174) 반면, 결과적으로 ‘필요한 조치’란 어느 정도 필요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보다는 현저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정도의 법적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비로소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시행령 제4조 제4호 가목에서의 ‘필요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서도 경영책임자가 구체적인 정황상 예산의 추가적 편성이 위험 예방을 위해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명확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때 비로소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형사제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대검찰청, 앞의 책, 117.

175) 이하 대검찰청, 앞의 책, 250-254 참조.

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제2조에서 규정한 중대재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¹⁷⁶⁾

-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종사자의 사상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러한 의무위반 행위만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 조항에 대한 미수죄 처벌 규정 역시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경우는 처벌할 수 없음

- 주류적인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에 입각하여 형사상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판례는 부작위범과 관련하여,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부작위와 법익침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함¹⁷⁷⁾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도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였더라면 중대재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다만, 중대재해는 그 특성상 사고 원인이 복합적,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다양한 역할로 분업화된 현장 책임자들의 안전보건 조치 불이행이나 업무상 과실 등이 결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큼.¹⁷⁸⁾ 이러한 경우, 현장 책임자들의 안전보건 조치 불이행이나 업무상과실 등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인과관계는 인정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의 인과관계¹⁷⁹⁾

176) 중대재해처벌법 입법과정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 인과관계 입증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형법상 책임주의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않음. 제21대 국회 제38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0. 12. 24.), 18-25.

177)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178)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 및 이들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인바, 이러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이행되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적 판단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행위와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평가자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형사사법에서 특히 강하게 요구되는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음.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서의 인과관계는 본질적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가에 관한 규범적 평가일 수밖에 없는바,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규범적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지가 문제의 핵심임. 과실범 이론에서 의무위반과 당해 결과가 이러한 의무위반에 의거하고 있다는 ‘의무위반관련성’을 기준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규범적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도 실익이 있다는 견해가 있음. 권오성, 앞의 책, 192.

179) 이하 김·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대응팀, 앞의 책, 235-238 참조.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인과관계 인정과 관련하여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사건의 인과관계 판단을 살펴보고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에서 대법원은 “사망의 결과에 따른 처벌 규정의 경우에도 의무 위반 및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과 근로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맨홀 내부에서 작업하던 수급인 회사의 근로자가 가스누출로 질식사한 데 대하여 도급인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이 가스누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근로자의 사망은 급격한 가스누출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조치불이행과 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함
 대법원은 “피고인이 밀폐공간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인 1)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대피하도록 하고 2) 환기를 하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였을 경우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피고인의 직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¹⁸⁰⁾을 그대로 확정함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대규모 조선소 작업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법인과 조선소 소장, 협력업체 대표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산업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다수의 대형 장비가 수시로 이동 작업을 수행하며 육중한 철골 구조물이 블록을 형성하여 선체에 조립되는 공정이 필수적이어서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고,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하여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 조선소이다. 이러한 사업장의 특성을 토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취지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 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

18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1201 판결.

석된다.”고 하면서,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중첩작업으로 인한 간섭 내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지 않은 점,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의한 충돌 예방을 위한 신호방법을 제대로 정하지 않은 점, 출입금지구역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실시하면서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근로자 사이의 사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과 근로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도11847 판결

불산 누출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방지에 대한 안전조치의무(급성 독성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연결 부분은 누출되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매일 1회 이상 연결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할 것) 위반의 점과 근로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1심 법원은 “① 이 사건 불산이 누출된 후 얼마 있지 않아 피고인 직원이 이를 인지하고 당직조장에게 보고하였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피고인 회사 담당자들에게 이를 알린 점, ② 피고인 직원들은 이 사건 밸브 아래에 내산봉투를 받쳐두는 방법으로 불산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였고, 최초 바닥에 떨어져 있던 불산에 대해서도 흡수포를 이용해 닦아내는 등 2021. 1. 27. 14: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불산 누출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통제한 점, ③ 위 8시간 동안 이 사건 CCSS룸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은 불산 누출에 따른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조치의무위반이 이 사건 불산이 처음 누출된 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피해 발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함¹⁸¹⁾

- 대구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노2238 판결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고속철도의 선로 유지, 보수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의

181) 수원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3고단6589 판결. 2013. 1. 27. 22:00경까지는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으로 위 누출 자체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누출과 관련된 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고, 같은 날 23:30경부터 다량의 불산이 누출되기 시작하여 밸브를 교체하지 아니하고는 불산누출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데 밸브교체 등 설비 분해 작업 시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점 등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근로자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근로자들이 심야 작업 중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지연 운행되던 열차가 이미 지나간 줄 알고 만연히 선로에서 작업을 하다가 뒤늦게 진행되는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작업계획서에 지진으로 인해 열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데 따른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법원은 “이 사건 작업계획서는 자연재해를 포함한 각종 원인으로 인한 열차 지연 등으로 인해 작업 중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반드시 감독자로부터 열차차단 승인을 받은 후 선로에 진입하여 작업을 하도록 예정하고 있고, 이는 당시 근로자들이 숙지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작업팀장인 A가 열차의 지연 여부 및 작업 개시 여부에 관하여 감독자인 B의 지시를 명확히 청취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작업계획서에 지진 발생으로 열차가 지연되어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과 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함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78 판결

하수관 내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서,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감시인 지정, 공기호흡기 지급, 작업 시작 전 공기상태 점검 등의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하수관 내에서 질식사하여 쓰러진 후 바닥에 있던 하수를 흡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으로 기소됨. 법원은 “부검 결과 익사 또는 산소결핍을 시사하는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간질 병력이 있었고 간질 병력은 부검을 통한 조직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사고 발생 3일 후 사고 장소에서 측정된 산소농도가 양호하였던 점, 사고 당시 기온이 낮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간질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어 피고인의 보건조치의무 위반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함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서의 인과관계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매개된 경우

- 중대산업재해는 복합적, 동시다발적인 원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임. 이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위반에 따른 형사제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다단계적 인과관계 입증의 필요함

- 즉, 안전보전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내용에 비추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부실하게 이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중대산업재해를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종전에는 경영책임자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책을 지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됨¹⁸²⁾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매개되지 아니한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 관리에 국한되는 의무가 아니므로 비록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로 열거된 사항은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일 수 있는바,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대산업재해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검토하여야 함¹⁸³⁾

● 형사실무에서는 행위 시에 피해자의 병적 요인 등 특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인과과정의 진행 중에 피해자의 행위가 개입한 경우, 인과과정의 진행 중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많이 다투어짐

-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행위 후에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그것이 결과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거나 제3자가 행한 과실행위가 개입하여 그것이 공동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면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¹⁸⁴⁾

182) 한편,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에서는 OO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의 경우 경영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인 의무위반을 인정하였는바, 경영진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인 의무가 인정되고, 이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거나 사고를 방지한 점이 발견되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음.

183) 종래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직접적인 이행 의무자로서 안전보건실무자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를 보충적으로 검토하였음.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가 규정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성격상 그 의무 위반행위 이후 현장소장이나 공장장 등 제3자의 구체적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행위나 업무상 과실행위가 추가로 개입됨으로써 중사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 이러한 경우 인과관계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위 일반론이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경영책임자등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의무위반이 있고, 그러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러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 위반행위는 통상 예견될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음. 반면 중대재해가 경영책임자등의 재해예방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사정과 무관하게 제3자의 다른 이유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행위나 업무상 과실 행위가 게재되어 그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예를 들어, 근로자가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기구의 플러그를 쫓다가 발생한 감전사고)라면 경영책임자등의 재해예방 예산 미배정과 중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것임

5)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범 또는 과실범인지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산업재해치사상죄’에서 ‘치사상’ 부분은 과실범이라는 것은 크게 다툼의 여지가 없음. 따라서 의무위반으로 인한 사상이라는 중한 결과발생에 대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의 예견가능성과 그들의 의무위반이 중한 결과를 야기했다는 부작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¹⁸⁴⁾
- 그런데 위 범죄의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은 고의행위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실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

18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185) “만약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자신에게 요구된 법적 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중한 사상의 결과가 방지되었을 것인가(발생하지 않았을 것인가)?”를 심사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그 판단은 ‘확실성에 가까운 개연성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입장, 결과방지 가능성이 조금이라고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면, 즉 ‘위험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부작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입장 등이 있음. 김성룡, 앞의 글, 38.

기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고의범

-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자체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고의범으로 해석하고 있음
- 판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위반죄에 대하여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 고의를 인정함(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¹⁸⁶⁾
- 결국 고의의 대상은 i)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ii) 안전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고,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함
 - 예를 들어,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의 경우, i) 밀폐공간 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ii)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 해당 밀폐공간 작업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 법령상 요구되는 각각의 조치사항들에 대한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¹⁸⁷⁾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고의

- 형법의 기본 원칙¹⁸⁸⁾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의 위반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기본행위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고의가 요구된다고

186)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 고의가 쟁점이 된 사안 중, 고의를 긍정한 사례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666 판결, 2014. 4. 10. 선고 2012도12341 판결, 2021. 3. 11. 선고 2018도10353 판결 등이 있고, 고의를 부정한 사례로 2011. 10. 13. 선고 2011도10743 판결, 2012. 4. 26. 선고 2010도6042 판결, 2016. 12. 29. 선고 2016도16409 판결 등이 있음.

187) 김·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대응팀, 앞의 책, 258.

188) 형법 제13조(고의)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14조(과실)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의범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과실범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

봄이 상당함¹⁸⁹⁾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고의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취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거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취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다’는 인식을 의미하고, 중대재해라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요구하지는 않음.¹⁹⁰⁾ 다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있어야 함¹⁹¹⁾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법적 의무로서 명시된 규정의 존재 그 자체를 알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음
- 또한 고의 입증 정도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관리의 주체인 법인과 그 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적극적으로 형사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기업 등이 경제적·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취지를 고려할 때,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개별적인 안전조치 불이행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미흡한 관리, 부적절한 보고체계 등 해당 사업장이 구조적으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¹⁹²⁾

189) 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행위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행위도 본질적으로는 과실범에 속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주의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그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이 범죄의 내용이며, 여기에서 사업주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알고서 위반했는지 모른 채 위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함. 이 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고의범으로 보면서도 같은 행위가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판례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일반 형법에서는 과실범인 행위가 특별법에 주의의무가 규정되면 고의범으로 바뀌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함. 최정학, “중대재해처벌법-기업 경영자 처벌의 논리-”, 노동법연구 제51호 (2021), 10 이하 참조.

190) 김·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대응팀, 앞의 책, 261.

191) 위험한 물건을 다루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쉽게 인정될 수 있음. 중대재해가 재발하였거나 안전조치와 관련한 정부의 개선·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안전전문가나 노동조합이 재해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가 있었거나 위험성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예견가능성은 더 높다고 할 것임. 경영자가 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안전에 대한 노동자의 교육, 안전의무의 고지 등을 소홀히 하여 현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마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견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최정학, 앞의 글, 25-26.

192) 대검찰청, 앞의 책, 259.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고의가 아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란 중대재해처벌법상 제반 의무의 이행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그 실질이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임. 대검찰청, 앞의 책, 260.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인력투입, 예산확보 등 경영상·관리상의 조치로서 경영책임자의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에 비해 경영책임자의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임¹⁹³⁾

▣ 입법론적 제안

-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과실로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구분하고, 그 처벌형량도 그 각 행위유형에 따라 다른 형벌체계를 고려하여 책임주의와 비례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¹⁹⁴⁾

라. 죄명 및 죄수

1) 죄명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유형을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발생한 결과를 사망자와 부상자·질병자 기준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개 죄명으로 분류됨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죄명〉¹⁹⁵⁾

죄명	처벌규정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상)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시민재해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제10조 제1항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시민재해치상)	중대재해처벌법 제10조 제2항

2) 죄수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의 관계

- 근로자(종사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구성요건으로 함께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93) 박상진, 앞의 글, 118.

194) 송인택, 앞의 책, 79.

195) 대검찰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별표 5.

167조 제1항 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위반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됨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여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상이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을 의무 주체 및 처벌규정의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법인 및 개인)’를 의무 주체로 규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양벌규정의 역적용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을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형사책임의 주체별로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안전관리책임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할 것임
- 다만, 별도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개인사업주나 소규모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을 전제함)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주체인 행위자가 대표이사 또는 경영책임자로 특정되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주체와 동일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위반하여 그 결과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을 상정할 수 있고, 이때는 양 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죄수관계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¹⁹⁶⁾

● 견해의 대립

- ① 중대재해처벌법을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으로 보아 법조경합으로 이해하는 견해,¹⁹⁷⁾ ② 의무의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실제적 경합 관계로 보는 견해, ③ 위 ②와 같은 취지에서 실제적 경합으로 보면서도 수개의 부작위범 사이에서도 상상적 경합이 가능하므로 구체적 사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에 중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상상적 경합관계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¹⁹⁸⁾ ④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는 견해가 상정 가능함

● 결론

- 각 법률의 수범자가 동일하지 않고 법률상 의무도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196) 대검찰청, 앞의 책, 114.

197) 당초 박주민 의원안, 박법계 의원안 등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우선 적용’ 규정이 있었으나, 최종 가결된 법률에서는 해당규정이 삭제됨.

198) 대검찰청, 앞의 책, 115. 검찰은 양벌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도 원칙적으로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구체적 사례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함. 대검찰청, 앞의 책, 272.

구성요건적으로 1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법조경합으로 보기는 어려움

- 상상적 경합인지 여부는 행위의 동일성과 단일성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양 죄의 의무 내용만을 기준을 볼 것도 아님. 두 죄 모두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이라는 동일한 보호법익을 보호하고 있고, 의무 위반행위인 구성요건적 행위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행위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각 각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으로 향해 있는 일련의 행위라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동일하고 단일한 행위(경과)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로 이해함이 타당함. 따라서 한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¹⁹⁹⁾

▣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

● 견해의 대립

- 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수죄로 보아 두 죄가 각각 성립하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견해²⁰⁰⁾와 ② 고의범인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경우 과실범인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흡수되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만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있음²⁰¹⁾

- 한편, 판례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양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²⁰²⁾ 참조)

199) 권창영 편집대표, 앞의 주석서, § 6(김희수 집필 부분).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를 실제적 경합으로 볼 경우,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가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다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여러 번 기소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임.

200) 권창영 편집대표, 앞의 주석서, § 6(김희수 집필 부분).

201) 권오성, 앞의 책, 210. 같은 의견으로 송인택, 앞의 책, 62(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실수에 기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모두 성립하고 둘 사이는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처벌하는 실무 관행은 국민의 법감정과 부합하지 않는 만큼 상상적 경합범으로 해석하는 판례는 재고되어야 한다. 차라리 법감정에 충실하도록 법조경합의 관계로 보고 부작위가 고의에 의한 것일 때에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하고,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형법을 적용함으로써 고의에 의한 범죄와 과실에 의한 범죄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해석은 피해야 한다).

20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은 “도로공사의 현장소장은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및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 나아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위반죄(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관계에 대하여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등)

● 결론

-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제167조 제1항 위반죄, 동 죄의 경우에도 안전보건 조치의무위반에 대한 고의를 요구함)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이해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향후 중대재해 처벌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볼 가능성이 큼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사이의 관계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일정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모두가 성립할 수 있고, 그 경우 3개의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죄인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며, 그 중 한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고 할 것임²⁰³⁾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그 보호법익이 다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범위는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 유형이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무가 요구하는 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있어서, 위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와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피고인은 형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후, 다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제기되었다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으니, 후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함.

203) 권창영 편집대표, 앞의 주석서, § 6(김희수 집필 부분).

- 반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사정이 있다면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상과실치사상 죄가 성립할 수 있음²⁰⁴⁾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자체의 죄수 관계

-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른 범죄는 그 구성요건 자체에서 피해자가 수인의 경우를 하나의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 확보의 무 위반으로 여러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하나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가 성립하고, 여러 명을 부상 또는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하나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상)죄가 성립함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상)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임
- 법 제6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관계
 - 하나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위반행위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상)죄를 범한 경우, 예컨대 동일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위 각 죄가 성립하고 다만 이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여야 하므로, 예컨대 동일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만 성립함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처벌규정과의 관계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는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중대시민재해

204) 대검찰청, 앞의 책, 116.

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음

- 다만, 위 규정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님. 즉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종사자에게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법 제2조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으나, 종사자와 일반 시민 모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해당될 수 있음. 이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상)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시민재해치사상)죄 모두 성립되고 하나의 행위로 평가된다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후 비교²⁰⁵⁾

- 통상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①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주로 현장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 범죄 모두 입건,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만 입건)로,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입건하고, ②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로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 범죄 모두 입건,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만 입건)로,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입건함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 소규모 사업장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입건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

205) 대검찰청, 앞의 책, 130.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형사적 검토 체계〉

<p>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근로자 사망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업무상과실치사 ② 근로자 외 종사자 사망 -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 ③ 사망 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반, 업무상과실치사 ④ 사망 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 ⑤ 사망 외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일반, 업무상과실치사 ⑥ 그 외 상해·질병 - 업무상과실치사 ⑦ 단순 안전보건조치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일반
<p>주체</p>	<p>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법인·개인) ⇒ (양벌규정) 행위자 특정, 확장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 ⇒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 형법: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주체 제한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 경영책임자등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③ 관리감독자 ④ 안전보건관리자 ⑤ 기타 종업원
<p>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5조)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객체: 종사자) ②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39조, 제63조)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객체: 근로자) ③ 업무상 주의의무(형법 제268조) (객체: 요건 불요)
<p>인과관계</p>	<p>각 주체별 의무위반 사항과 사망 등 결과 사이 인과관계 필요</p>
<p>고의 예견가능성</p>	<p>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안전보건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 지시 또는 안전보건조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이루어지는 사실 알면서도 방치</p> <p>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재발방지 대책 미수립, 안전보건관련 시정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고의, 중대재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p>

마. 가중처벌

- 산업재해치사죄 또는 산업재해치상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산업재해치사죄 또는 산업재해치상죄를 저지른 자는 각 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 여기서 재범의 판단 시점은 해당 범죄의 성립 시기인 중대산업재해 발생일, 즉, 사망,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날로 봄
 - 중대시민재해의 경우는 가중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점과 구별됨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3항은 앞의 범행과 뒤의 범행이 같은 조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문제됨. 예컨대 앞의 범행은 법 제6조 제2항의 죄이고, 뒤의 범행은 법 제6조 제1항의 죄인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문제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법 제6조 제3항의 취지, 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은 사망인지 부상 또는 질병인지는 결과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동종의 범죄인 점, ‘또는’의 문언 해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앞의 범행은 모두 기수이고 뒤의 범행은 미수이더라도 가중처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3항은 앞의 범행과 뒤의 범행이 같은 조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바. 중대재해처벌법상 양형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음
 - 추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관련한 여러 하급심판결들이 축적되면 양형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양형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보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정해져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관련 사건에서 이를 참조할 수 있을 것임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6월	4월~10월	8월~1년 6월
2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4월~8월	6월~1년 6월	1년~2년 6월
3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6월~1년 6월	1년~2년 6월	2년~5년

▷ 3유형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3유형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다수 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때는 제외)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 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대검찰청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구형기준(상세)²⁰⁶⁾

- 대검찰청에서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구형기준(상세)’은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사망사고 기본등급을 22등급²⁰⁷⁾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부상, 질병사고 기본등급을 19등급으로 제시하고 있음

206)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양형기준”, 공공수사부·형사부 (2022. 1.), 권오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와 실효성 제고 방안”, 법원 노동법분야연구회 (2022. 4. 25.), 34에서 재인용.

207) 검찰의 구형등급표는 [별지 6] 참조.

가. 중대재해처벌법 사망사고 기본등급 [22등급(2년 6월~4년)]

유형	법정형	재범 가중 상한	검찰 기본등급	양형위 기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사망) + 업무상과실치사	징역 1월↑~7년↓ 벌금 1억↓	10년 6월	1년~18월 (18등급)	1년~2년 6월 (업무상과실치사 8월~2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징역 1년↑~30년↓ 벌금 10억↓ (병과 가능)	45년	2년 6월~4년 (22등급)	미정

- 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사망사고 기본등급 범주는 1년~2년 6월(검찰, 양형위원회 기준 통합)로서 징역 2년 6월이 구형구간에 포함될 필요
- ② 기본등급 하한을 감경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이 산출되도록 징역 2년을 초과하여 설정할 필요
- ⇨ 기본등급 하한인 2년을 초과하고, 징역 2년 6월 이상을 선택할 수 있는 구형기준 등급 선택 (① + ② 모두 만족) ⇒ 22등급(2년 6월~4년)
- ※ 기본등급이 높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중대재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22등급으로 설정, 다만 사안별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가중·감경인자를 확대·세분화함

나. 중대재해처벌법 부상, 질병사고 기본등급 [19등급(1년 2월~2년)]

유형	법정형	재범 가중 상한	검찰 기본등급	양형위 기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 업무상과실치상	징역(금고) 5년↓, 5,000만 원↓	없음	벌금 250~300만 (10등급)	6월~1년 6월 (업무상과실치상 4~10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징역 1월↑~7년↓ 벌금 1억↓	10년 6월	1년 2월~2년 (19등급)	미정

- ① 기존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의 기본등급 범주는 벌금 250만 원~1년 6월로서, 징역 1년 6월이 구형구간에 포함될 필요
- ② 업무상과실치상의 상한인 10월보다 하한을 높게 설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망사고 법정형과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하여 구형구간을 설정할 필요
- ⇨ 징역 1년 6월 이상을 선택할 수 있는 구형기준 등급 선택(① + ② 모두 만족) ⇒ 19등급(1년 2월~2년)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구형기준(상세)’은 중대재해 유형 선택 및 양형인자에 따른 조정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사망 사고(22등급) ○ 중대 부상, 질병 사고(19등급)			
(1) 가중 인자		(2) 감경 인자	
행위	1) 유사사고 재발(1~5) 2) 사고 규모 및 중대성(1~5) 3)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정도(1~4)	행위	1) 해당없음 2) 해당없음 3) 사고 발생 경위 참작 사유(1~4)
행위자 /기타	4) 피해회복 및 구호조치 미흡(1~4) 5) 기타 가중사유(1~4) - 사고발생 책임 및 비난가능성 등 6) 동종전력 有	행위자 /기타	4) 합의 및 피해회복(1~4) 5) 기타 감경사유(1~4) - 진지한 반성 등 6) 동종전력 無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기업의 법정형을 최대 벌금 50억 원까지 상향하였고 위반 행위자를 경영책임자로 특정하고 법정형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으므로, 실제 재판에서 이러한 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는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양형기준을 정립하여야 할 것임

5. 양벌규정

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 제1항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 제2항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 개요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으로 처벌함
 -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
 - 종사자가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의 해를 입은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자연인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의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은 사업주(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자체)가 수범자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인 경우 ‘사업주(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자체)’를 처벌하는 외에 실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위 양벌규정의 역적용을 인정할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고, 판례는 이를 인정하여 왔음(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²⁰⁸⁾ 등)
 -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은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동 조항의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문구에서 ‘그 행위자’는 경영책임자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소위 ‘양벌규정의 역적용’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양벌규정의 적용대상: “법인 또는 기관”

- 비영리법인
 - 인격을 갖춘 법인이면 되므로, 영리법인에 한정되지 않음
- 국가 기타 공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가능성: 사업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인 경우
 - 국가는 형벌권의 주체이지 객체는 될 수 없으므로²⁰⁹⁾ 국가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음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등’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국가 형벌권의 주체인 국가의 일부 조직으로서, 해당 기관을 양벌규정에 의하여

208)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위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209) 박상옥·김대휘 편집대표, 주석 형법[총칙 1],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119.

형사처벌하는 것은 법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임²¹⁰⁾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면 기관위임사무²¹¹⁾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함(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²¹²⁾
- 법인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당연히 양벌규정 적용 대상임

●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의 ‘기관’의 의미 및 기관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 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단체성을 가진 비법인사단, 조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②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²¹³⁾가 유력함
-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벌금형을 과하는 것은 그러한 공공기관을 설치한 국가 기타 공법인에 벌금을 과하는 결과가 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이 설치한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게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그러한 기관을 설치한 공법인에게 벌금을 과하는 것은 가능하나, 국가가 설치한 법인격 없는 기관의 경우 국가에게 벌금을 과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는 견해가 있음²¹⁴⁾²¹⁵⁾

210) 권창영 편집대표, 앞의 주석서, § 7(김희수 집필 부분).

21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등).

212) ‘대전광역시 중구’의 자치사무인 자전거이용시설 안전진단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담당공무원은 행위자로서, 대전광역시 중구는 사업주로서 양벌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음(대전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2노1404 판결).

213) 권오성, 앞의 책, 211-212. 다양한 법률상 양벌규정에서의 용어 사용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용어 사용례를 볼 때 ‘기관’이라는 말을 비법인단체 일반을 규율하는 용어라고 해석할 수 없고, 나아가 이는 양벌규정의 수범자를 해석하는 문제로 그 행위자(경영책임자등)와 연관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법 제7조 규정 형식을 보더라도 ‘기관’은 법 제2조 제9호의 경영책임자등과 결부된 개념인 점, 실제로 경영책임자등에 관한 정의 조항인 법 제2조 제9호 나목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관’은 법 제2조 제9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기관’을 전제로 입법된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논거임.

214) 권오성, 위의 책, 211.

215)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50개의 기관을 2022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는데(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기타공공기관 220개임, <https://job.alio.go.kr/orginfo.do> 참조 (2022. 11. 11. 확인)), 그 중 법인이 아닌 기관은 없는 것으로 보임. 권창영 편집대표, 앞의 주석서, § 7(김희수 집필 부분).

- 향후 법개정을 통해 그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비법인단체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가능성
 - 법인이 아닌 단체나 민법상 조합, 익명조합, 상법상 합자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 그러한 단체를 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비법인단체 등이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 그러한 단체의 경영책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수범자로서 처벌의 대상이 될 것임
 - 그러나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영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을 경우라도 비법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함²¹⁶⁾
 - 따라서 법인격 없는 단체까지 양벌규정의 수범자로 하려면 비법인단체를 포괄하는 형식으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임²¹⁷⁾

▣ 면책조항

-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경영책임자들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 또는 기관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동 규정 단서는 면책 규정 형식으로 명문화함
-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판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

216)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는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는 이른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74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217) 권오성, 앞의 책, 212-213.

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함²¹⁸⁾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영책임자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법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경영책임자등을 감독하는 기관으로는 이사회 정도를 들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자등이 이사의회의 주의·감독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에 나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²¹⁹⁾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판례 법리²²⁰⁾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위반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인정할 여지는 원칙적으로 없어 보임
 - 다만, 대표이사 아닌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의 위반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구체적 사정을 평가하여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을 것임²²¹⁾

▣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 따라서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가 처벌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제7조)에 의해서도 법인 또는 기관이 처벌될 수 있음
- 이때 죄수관계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규범적으로 수범자가 다르고, 특히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자체가 구별되므로 원칙적으로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견해²²²⁾와 1개의 동일한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법령이 적용되어 수개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아 형법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²²³⁾

218)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219) 이정훈,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에 따른 형사책임, (주) 중앙경제 (2021), 74.

220)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221) 권창영 편집대표, 앞의 주석서, § 7(김희수 집필 부분).

222) 대검찰청, 앞의 책, 272(다만, 구체적 사례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함).

223) 전형배, 앞의 글, 287.

▣ 공소시효

- 양벌규정의 적용시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법인 또는 기관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경우 법정형은 본조에서 정한 벌금형에 국한되고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법인 또는 기관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달라지는 문제가 제기됨
 -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에 대한 공소시효는 사업주와 종업원의 처벌에 일률성을 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종업원에 대한 벌칙 규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지만,²²⁴⁾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공소시효를 경영책임자등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으로 보임²²⁵⁾

6. 사례 연구

가. 태안화력발전소 사건

1) 사실관계

- H발전 주식회사(이하 ‘H발전’이라 함)는 발전 전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태안에 있는 화력발전소(태안발전본부)에서 상시 근로자 1,200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A발전 주식회사(이하 ‘A발전’이라 함)는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H발전으로부터 태안발전본부에 위치한 발전기 총 11기 중 9, 10호기에 대한 상하탄설비 운전·점검, 낙탄 처리 등의 설비 운전 관련 업무에 관하여 위탁용역을 받아, 태안발전본부에서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임²²⁶⁾
- 2018. 12. 10. 22:41경 내지 23:00경 태안발전본부의 9호기 컨베이어벨트의

224) 박상옥·김대휘 편집대표, 주석 형법[총칙 1],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123-124.

225) 이원형, “행정형벌법규에서의 양벌규정의 해석과 문제점”, 청연논총(손기식 사법연수원장 퇴임기념), 사법연수원 (2009), 319 참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양벌규정 적용이 문제된 하급심판결 중에도 행위자의 영업비밀 부정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양벌규정 적용의 대상이 된 법인에 대해서는 5년의 공소시효기간 도과를 이유로 직권으로 면소를 선고한 사례가 있음(수원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노1669 판결).

226)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에서의 ‘상시 근로자수’는 각개 사업장의 인원이 아닌 전체 사업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H발전, A발전은 한 사업장의 근로자수만 하더라도 1,200명, 150명이므로 전체 사업의 상시 근로자수는 5인 이상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회사임이 명백함(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적용유예 대상 기업도 아님).

턴오버 구간에서 단독으로 점검구를 통해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던 A발전 소속 운전원인 피해자는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의 물림점에 신체가 협착되어 사망에 이름

2) 사건의 경과

구분	피고인	기소 범죄	기소내용	1심 판결 내용 ²²⁷⁾	선고 결과
H발전 관련	대표이사 피고인 김○○(최고 경영자이자 안전보건최고 책임자)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H발전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무죄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A발전의 사용에 제공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고의 인정 안 됨(피고인 김○○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물림점에 아무런 방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하였거나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	무죄
		업무상 과실치사	컨베이어 벨트에 방호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2인1조 등 매뉴얼 준수여부를 감독하지 않고, 설비개선과 인력증원을 통한 사고의 근본적인 예방을 할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김○○이 지휘계통을 통해 그와 같은 위험성을 관리·감독하는 일반적, 추상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무죄
	본사 기술안전본부장 피고인 김XX (본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H발전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이유 무죄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A발전의 사용에 제공한 점	고의 인정 안됨	이유 무죄
		업무상 과실치사	컨베이어 벨트 물림점에 방호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거나 2인1조 매뉴얼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거 태안발전본부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작업에 관하여 총괄책임을 부담했었음 컨베이어벨트의 구조와 그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음	유죄

구분	피고인	기소 범죄	기소내용	1심 판결 내용 ²²⁷⁾	선고 결과
				2인1조를 하도록 관리·감독할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음	
태안발전본부장 피고인 권XX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H발전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이유 무죄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A발전의 사용에 제공(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33조 제2항)	의무 위반 인정	유죄
			작업증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증지명령위반	의무 위반 인정	
	업무상 과실치사		컨베이어 벨트 물림점에 방호조치할 의무 위반	컨베이어 벨트의 대략적인 구조와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음	유죄
			2인1조 근무를 하도록 조치할 의무 위반		
			작업 시 가동중지하도록 조치할 의무 위반		
		폴코드 스위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주의의무	의무 위반 인정되나, 이 사건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안 됨	이유 무죄 ²²⁸⁾	
		조도유지의무	통로부분 조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망과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안 됨 점검부 내부의 조도유지 의무는 인정 안 됨		
태안발전본부 직원들	업무상 과실치사		컨베이어 벨트 물림점에 방호조치할 의무 위반	의무 위반 인정	유죄
			2인1조 근무를 하도록 조치할 의무 위반	의무 위반 인정	
			작업 시 가동중지하도록 조치할 의무 위반	의무 위반 인정	
H발전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행위자 권XX이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의무 위반 인정	유죄	

2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2. 10. 선고 2020고단809 판결.

228) 이 부분은 피고인 이○○, 태안발전본부 직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동일하게 적용됨.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기재 생략함.

구분	피고인	기소 범죄	기소내용	1심 판결 내용	선고 결과
A발전 관련	대표이사 피고인 백○○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① 덮개 등 방호장치 없이 작업하도록 지시, 방치한 안전조치의무위반, ②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할 의무 위반(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 시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2인1조 근무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작업 하도록 지시, 방치)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 백○○의 행위자성 및 고의 인정	유죄
		업무상 과실치사	물림점 등에 대한 방호설비 설치여부 등 주요 위험 설비에 대한 점검 및 2인1조 실시 여부 등 작업 매뉴얼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효적이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개선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원청인 H발전에 설비 개선 또는 인력 증원을 요청함으로써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컨베이어벨트 운전 시 설비 및 작업의 위험성으로 인한 협착사고 발생 가능성, 2인1조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고,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인정됨	유죄
	태안사업소장 피고인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현장대리인)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① 덮개 등 방호장치 없이 작업하도록 지시, 방치한 안전조치의무위반, ②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할 의무 위반(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 시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2인1조 근무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작업 하도록 지시, 방치), ③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작업하도록 지시, 방치한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유죄

구분	피고인	기소 범죄	기소내용	1심 판결 내용	선고 결과
				→피고인 이○○의 행위자성 및 고의 인정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명령 위반	의무 위반 인정	
			풀코드 스위치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의무 위반 인정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위치한 공간의 조도를 유지하지 않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의무 위반 인정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점검구 내부의 조도유지의무는 인정 안 됨)	
	업무상 과실치사		컨베이어 벨트 물림점에 방호조치할 의무 위반	의무 위반 인정	유죄
			2인1조 근무를 하도록 조치할 의무 위반	의무 위반 인정	
			작업 시 가동중지하도록 조치할 의무 위반	의무 위반 인정	
	직원들 (안전관리 차장 등)	업무상 과실치사	컨베이어 벨트 물림점에 방호조치할 의무 위반	의무 위반 인정	유죄
			2인1조 근무를 하도록 조치할 의무 위반	의무 위반 인정	
작업 시 가동중지하도록 조치할 의무 위반			의무 위반 인정		
A발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백○○, 이○○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함	의무 위반 인정	유죄	

3)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경우(가상사례)

▣ H발전 관련 적용

● 경영책임자등

- H발전 대표이사 김○○은 H발전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함²²⁹⁾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H발전은 태안발전본부에서 A발전과 태안발전소 발전기 9, 10호기에 대한 상하탄설비 운전점검, 낙탄 처리 등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발전은 위 9, 10호기 설비의 소유자로서 운전, 정비 등 권한을 바탕으로 설비 운영 전반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고, A발전은 그에 따라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H발전이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면서 발전 설비, 작업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였음
 - 이 사건은 태안발전본부에 있던 9, 10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태안발전본부는 H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으로서 법 제4조가 적용됨²³⁰⁾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관련
 - ⇒ 김○○은 경영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시행령 제4조 제3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시행령 제4조 제8호)
 -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단809호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의 물림점이 노출된 위험한 상태로 운영되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시하였는바, 김○○가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였는지,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였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229) H발전은 안전보건경영기본계획 수립시 대표이사인 김○○을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로 지정하였는바, 위 김○○가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

230) 법 제4조는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고, 법 제5조는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된다는 견해에 따른 것임.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포함), 이러한 점검 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함.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점검 및 필요한 조치가 있었다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물림점이 노출된 위험한 상태로 운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김○○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큼²³¹⁾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관련
 - ▷ 위 1심 판결에서 태안발전본부에서 유사한 재해가 수차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만약 과거 유사한 재해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그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하여 점검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것임²³²⁾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관련
 - ▷ 당해 사업장에서 회전축·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할 의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할 의무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잘 이행되지 아니하였는바(덮개 등 방호장치 없이 작업하도록 지시, 방치하고,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 시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2인1조 근무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작업하도록 지시, 방치함), 이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시행령 제5조 제2항)²³³⁾

231) 만약 위험성평가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곧바로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위반에 해당할 것이지만, 위험성평가를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러한 위험성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이에 대한 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다만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위험개선조치가 적절하였는지 여부(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에는 이른바 'Hand Rule' 등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 등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 또는 그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임.

23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미수립은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다수 견해임. 다만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시 이전에 재해가 발생하였던 곳이라면 그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어야 하고, 그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의무 위반이 될 것임.

233) 현장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위반

● 인과관계

- 위와 같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피해자가 물림점에 협착되어 사망이라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원인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1심 판결에서 컨베이어벨트에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의 설치·관리와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는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서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과 중대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동일한 쟁점이 있을 수 있음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 피고인 김○○는 위와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사실(위험성평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러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즉 의무 자체의 존재에 대한 부지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함

● 양벌규정 적용

- H발전은 피고인 김○○가 처벌받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죄수와 관련하여, 양 죄는 규범적으로 수범자가 다르고, 특히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자체가 구별되므로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견해와 1개의 동일한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법령이 적용되어 수개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아 형법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기업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관계 법령 위반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사후에 현장에서 관계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아니라거나,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인식)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있다는 견해가 있음²³⁴⁾

▣ A발전 관련 적용

● 경영책임자등

- A발전 대표이사 백○○은 A발전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함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관련

⇒ 피고인 백○○은 A발전의 경영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시행령 제4조 제3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시행령 제4조 제8호)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단809호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의 물림점이 노출된 위험한 상태로 운영되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시하였는바, 피고인 백○○가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였는지,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였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포함), 이러한 점검 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함.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점검 및 필요한 조치가 있었다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물림점이 노출된 위험한 상태로 운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백○○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큼²³⁵⁾

234) 앞의 III. 5. 양벌규정 부분 참조.

235) 만약 위험성평가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곧바로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위반에 해당할 것이지만, 위험성평가를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러한 위험성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관련
 - ⇒ 위 1심 판결에서 태안발전본부에서 유사한 재해가 수차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만약 과거 유사한 재해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그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하여 점검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것임²³⁶⁾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관련
 - ⇒ 당해 사업장에서 회전축·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할 의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할 의무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잘 이행되지 아니하였는바(덮개 등 방호장치 없이 작업하도록 지시, 방치하고,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 시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2인1조 근무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작업 하도록 지시, 방치함), 이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시행령 제5조 제2항)

● 인과관계

- 위와 같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피해자가 물림점에 협착되어 사망이라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원인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1심 판결에서 컨베이어벨트에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의 설치·관리와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는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서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

에 대한 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다만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위험개선조치가 적절하였는지 여부(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 또는 이른바 ‘Hand Rule’ 등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 등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 또는 그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임.

23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다수 견해임. 다만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시 이전에 재해가 발생하였던 곳이라면 그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어야 하고, 그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의무 위반이 될 것임.

치를 하지 않은 사실'과 중대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동일한 쟁점이 있을 수 있음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 피고인 백○○는 위와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사실(위험성평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러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즉 의무의 존재에 대한 부지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함
- 양벌규정 적용
 - A발전은 피고인 백○○가 처벌받을 경우 법 제6조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죄수와 관련하여 규범적으로 수범자가 다르고, 특히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자체가 구별되므로 원칙적으로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견해와 1개의 동일한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법령이 적용되어 수개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아 형법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4) 형사재판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 증인신문 가능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지 아니한 때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피해자 등(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함)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음(법 제14조 제1항)
-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등이 피해 진술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
- 위 가상사례에서 피해자는 사망하였으므로 그 직계친족을 증인으로 하여 신문할 수 있음

▣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참여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함(법 제14조 제2항)
- 가상사례에서 사고발생장소는 화력발전소이고 화력발전소의 설비의 운영·관리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화력발전소의 설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재판지원시스템 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조회(JW205)에 의하면, 대분류에서 '(07)토목', 중분류에서 '(32)원자력, 화력발전소 내진설계', 소분류에서 '(02)원자력, 화력발전 내진설계'를 선택하여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을 득한 후, 전문심리위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²³⁷⁾

5) 시사점

▣ 수범자의 범위 확대

- 위 1심 판결에서 도급인인 원청(H발전) 대표이사 피고인 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인 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상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지 아니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으로써 피고인 김○○은 경영책임자로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인 태안발전본부 내의 하청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하여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됨

▣ 안전보건 관련 의무 부과와 간이하

- 위 1심 판결에서도 하청업체(A발전) 대표이사인 피고인 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었음

237) 가상사례의 사안이 화력발전소 내진설계와 정확히 일치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인접된 분야로서, 이 분야의 전문심리위원으로부터 화력발전소 전반적인 구조, 컨베이어의 구조 및 설치·운영 방식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기 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략적인 사안을 설명한 후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위 판결에서 피고인 백○○에 대한 유죄 인정을 위하여 검찰은 위 백○○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하였고, 이것이 쟁점이 되어 재판진행 중 주된 다툼의 대상이 되었음
-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하청업체(A발전) 대표이사인 피고인 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의무로 부여되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존부 및 고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 필요 없이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의의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들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경영책임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의 예방 강화 및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음

▣ 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사업주는 교육의무 이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²³⁸⁾

238) 권창영 편집대표, 앞의 주석서, § 8(권창영 집필부분).

- 또한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도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함

▣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시간

- 경영책임자등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②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시행령 제6조)

▣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4와 같음²³⁹⁾

239) [별지 4] 참고.



1.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법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2항 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에게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 앞서 II. 4. 마. 바. 부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함
- 【주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에게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중대시민재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적용 예외가 없음

2.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

가. 원료·제조물의 정의²⁴⁰⁾

▣ 특정원료

- 법적인 정의는 없지만 제조에 투입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라는 의미로 사용됨
- 특정원료 중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일 것이고,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일정한 물질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정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음
- 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서는 일부 원료 또는 제조물²⁴¹⁾에 대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강화된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 제조물

-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말하며,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포함(제조물책임법 제2조)
-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원재료에 설계·가공 등의 행위를 가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서 상업적 유통에 제공되는 것을

240) 환경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 (2021), 16-17.

241)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독성가스, 농약, 마약류, 비료, 살생물물질, 식품첨가물, 의약품, 방사성물질, 의료기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등이 이에 해당함.

말하고, 여기에는 여러 단계의 상업적 유통을 거쳐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소비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소비자에게 직접 납품되어 사용되는 것도 포함됨²⁴²⁾

▣ 원료·제조물의 범위

- 모든 원료·제조물
 - 그 범위를 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어 기본적으로 모든 원료·제조물을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제조물의 속성상 인체유해성이 없는 경우(승강기, 자동차 등)도 있으나, 이러한 것도 관리상 결함이 있는 경우 유해·위험이 존재하므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나아가 상식적으로 본래 해롭지 않은 원료·제조물이라도 결과적으로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인체 유해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 원료·제조물의 생산·제조·판매·유통
 - 중대재해처벌법은 생산·제조·판매·유통 과정의 원료·제조물에 적용되므로, 사업자의 모든 영업과정이 포함되며, 이 과정에서 이용되는 원료·제조물이 적용대상이 됨
 -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은 원료 및 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고·재난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 생산·제조: 생산·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와 원료로 만들어지는 제조물과 관련된 것이므로 위탁생산 과정도 포함됨
 - 판매·유통: 제품을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이므로 수입판매업자·판매중개업자²⁴³⁾ 등이 모두 포함됨

242)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243) 온라인플랫폼사업자 등도 판매중개업자에 포함될 수 있고, 현재 다양한 법령에서 판매중개업자에게도 안전확보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장소적 범위
 -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함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①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 장소, 시설, 설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②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거나, ③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경우 등을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로 봄

다. 안전보건 확보의무²⁴⁴⁾

법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④ 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2항 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

244) 이하 대검찰청, 앞의 책, 294-307 참조.

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 제8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 가. 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 나.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 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가. 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
 - 나.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 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가.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 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 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필요한 인력 확보(시행령 제8조 제1호)

- 안전·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할 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 반드시 업무별로 인력을 구분하여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 외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타 법령에 따른 기존 안전·보건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자체적으로

로 인력 및 조직을 두고 있는 경우의 활용도 가능함

- 더불어 유해·위험요인 점검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도 가능함
- 다만, 이러한 경우에 업무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적정한 인력배치와 업무수행이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점은 중대산업재해 관련 법 제4조에서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두는 것과 구분됨. 법 제4조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으나, 중대시민재해 관련 원료·제조물 안전관리의 경우 이와 같은 규정은 없으므로 안전·보건 관리 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정도의 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족함

●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지침²⁴⁵⁾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3조(인력 확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다.

1. 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
2. 원료, 제조물의 생산·제도시 안전점검, 안전진단, 성능시험, 성능평가, 품질검사, 안전정보 알림, 품질관리체계 운영, 유해·위험요인 신고접수 및 처리 등 유해·위험요인 점검업무
3. 원료, 제조물의 보관·유통시 보관·진열 위생관리, 제품표시확인, 부패·변질·유통기한 관리, 안전정보 알림, 안전운송, 유해·위험요인 신고접수 및 처리 등 유해·위험요인 점검업무
4. 유해·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에게 보고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원료 및 제조물의 파기, 수거, 판매중지 또는 관련 시설 등의 정비, 보수, 보강 등 긴급안전조치 및 조치결과통보 업무
5. 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관리자 교육, 판매자교육, 기술교육, 위생관리교육 등 의무교육

▣ 예산 편성 및 집행(시행령 제8조 제2호)

-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확보·유지하고,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할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여야 함

245) 환경부고시 제2022-26호, 2022. 1. 27. 제정.

- 원료의 경우 개별 관계 법령에서 일정한 방재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 다수 존재함
 - 예를 들어,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을 포함한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업종별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나아가 편성된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까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임
-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지침²⁴⁶⁾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4조(예산 편성·집행)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1. 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
2. 유해·위험요인의 점검을 위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
3. 유해·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긴급 안전조치
4. 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관리자 교육, 판매자교육, 기술교육, 위생관리교육 등 의무교육

▣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신고 및 조치, 개선조치 등(시행령 제8조 제3호)

- 시행령 제8조 제3호의 조치 의무는 시행령 별표 5에 규정된 원료 또는 제조물에 한하여 적용됨

[별표 5] 시행령 제8조 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 제13호의 독성가스
2.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의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

246) 환경부고시 제2022-26호, 2022. 1. 27. 제정.

4. 「비료관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및 제8호의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6.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7.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의 의약품외품 및 같은 법 제85조 제1항의 동물용 의약품·의약품외품
8.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의 방사성물질
9.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의료기기
1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화약류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의 유해화학물질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

●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 점검 조치의 경우 그 주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시행령 제8조 제5호에 따라 반기 1회 이상의 인력, 예산 점검이 원칙이므로 그보다는 짧은 주기의 점검을 상정한 것으로 보임
- 개별 관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주기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등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 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결함정보를 보고하여야 하고,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등의 자진수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²⁴⁷⁾

247) 소비자기본법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제48조(물품 등의 자진수거 등), 그 밖에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사업자의 제품 수거 등의 의무 등),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 식품 등의 회수) 등 참조.

- 소비자기본법상 물품 등의 결함에 대한 사업자의 주기적 점검은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향후 본 호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보고, 자진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의 순환 구조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다목),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라목)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내부 보고 절차,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 절차 및 추가피해방지 조치를 의미함

▣ 업무처리절차 마련(시행령 제8조 제4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및 대응 등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치할 것²⁴⁸⁾

- 시행령 제8조 제3호의 ①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②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③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④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업무처리절차의 마련은 개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 대표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2항)

- 소상공인의 경우, 업무처리절차 마련 의무에서는 제외됨

▣ 인력·예산 확보 여부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시행령 제8조 제5호)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인력(제1호), 예산(제2호) 요건을 반기 1회 이

248) 시행령 제8조 제4호의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환경부는 시행령 제8조 제3호 별표 5에서 정한 원료 또는 제조물을 생산, 제조, 판매, 유통하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만 부여되는 의무라고 보고 있음. 환경부, 앞의 해설서, 36. 이에 대하여 업무처리절차 마련은 시행령 별표 5에 규정된 원료 또는 제조물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음. 대검찰청, 앞의 책, 305.

상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행령 제9조 제2항 1호에서는 의무이행에 관한 점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8조 제5호에서의 점검에는 이러한 규정은 없음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챙기도록 하여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이 사업 경영에서 고려 사항 중 후순위로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개요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기까지 유사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 본조를 의율하여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미흡하게 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을 직접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구성함으로써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 재해의 범위
 - 중대시민재해에 이를 정도의 재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경미한 재해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지나치게 경미한 재해까지 재발방지 대책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본 조항의 취지상 재해가 반복적이거나 상당하여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한 정도의 재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본 호에서의 “재해”가 본법 시행일 이전의 재해를 포함하는지 여부
 -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고 봄이 타당함
 - 다만, 본법 시행 이전의 재해 발생 사실은 같은 항 제1호(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제4호(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의무 준수 여부 평가에 고려될 것임

▣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재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제도화하여야 함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이미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사후 조치를 전제로 하는 것임
 -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결과 분석,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함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자 그 밖의 시민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의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였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과는 별개로, 개선·시행명령의 미이행으로 인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법 제11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 개선·시정명령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시행되어야 함²⁴⁹⁾
- 개선 또는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을 의미하고, 행정지도나 권고, 조언은 포함되지 않음
- 원료·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에 관한 개선, 시정명령 등에 한정됨

249)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안전·보건 관련 개선, 시정 등의 명령 사항을 토대로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개선, 시정명령 등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본 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 제1, 4호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여부를 우선 심사함이 타당할 것임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9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①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 ②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실시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1항 제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미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의미함
- 시행령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상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일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시행령 별표 5에 열거된 법령이 그 예가 될 수 있음

〈안전·보건 관계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17)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 원자력안전법	(1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3) 약사법	(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4) 마약류관리법	(20) 승강기 안전관리법
(5) 화장품법	(21) 위험물안전관리법
(6) 농약관리법	(22) 해사안전법
(7) 비료관리법	(23) 지하수법
(8) 사료관리법	(24) 수도법
(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 먹는물관리법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6) 도시가스사업법
(11) 의료기기법	(27) 선박안전법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3) 화학제품안전법	(29) 전기안전관리법
(14) 식품위생법	(30) 자동차관리법
(15) 화학물질관리법	(31) 석면안전관리법
(16) 광산안전법	(32)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위 목록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예시한 것으로서, 위에 열거되지 않은 법률이라 하더라도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법률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포함될 수 있음

▣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인력 배치하거나 예산 추가 편성·집행하는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²⁵⁰⁾

250) [별지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참조.

3.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

가. 공중이용시설²⁵¹⁾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 제4호 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의 오피스텔인 건축물
3. 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영업장
4. 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 나. 「도로법」 제10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한다)

251) 이하 국토교통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시설) (2022), 12-14 참조.

마.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주유소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공중이용시설 개념

- 법률에서 위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시설
 -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철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키즈카페,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전시시설, 업무시설, 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2²⁵²⁾)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상 시설
 - 교량, 터널, 방파제 등 항만시설, 역 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 건축물, 댐, 하구둑, 제방, 보, 상하수도, 옹벽(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 3²⁵³⁾)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상 영업장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 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그 밖에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 준공 후 일정 시간이 경과된 토목시설(도로교량, 도로터널, 철도교량, 철도터널)과 일정 규모 이상 주유소·가스충전소, 유원시설(시행령 제3조 제4호)

▣ 적용 제외

- 소상공인의 부담이나 경영책임자들의 특정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²⁵⁴⁾

252) [별지 2] 참조.

253) [별지 3] 참조.

25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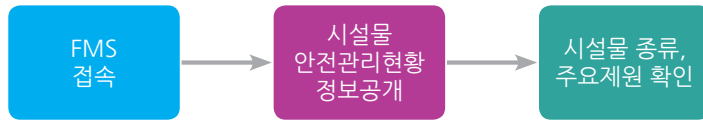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 교육시설법에 따른 교육시설,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등은 제외함

▣ 대상여부 확인 방법

● 시설물안전법상 제 1·2종 시설물

- 시설물안전법 대상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서 시설물의 유형과 세부 분류, 주요 제원 등 정보를 확인하여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https://www.fms.or.kr>

● 도로시설(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도로터널·도로교량 등)

- 도로법 제56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 중인 도로대장에서 준공년도 등 정보를 확인하여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

● 건축물

- 건축물대장에서 용도, 연면적 등 정보를 확인하여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
- 입법론적 비판: ‘건축물’의 경우, 면적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해당 여부를 정하고 있는데, 한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있으나 건물 전체는 위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건축물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에게도 중대시민재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임차 면적 자체가 위 면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관리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 면적에 국한하여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²⁵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5) 김상민, 앞의 글, 3.

나. 공중교통수단²⁵⁶⁾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라. 「해운법」 제2조 제1호의2의 여객선
 - 마. 「항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 공중교통수단 개념

- 도시철도차량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 시설 및 교통수단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전용철도 제외)
 -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
- 시외버스²⁵⁷⁾
 - 운행계통을 정하고 중·대형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시외고속고속버스, 시외우등직행버스, 시외직행버스, 시외고속직행버스, 시외우등, 일반버스, 시외일반버스 등이 해당
- 여객선
 - ‘여객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함²⁵⁸⁾

256) 국토교통부, 앞의 해설서, 15-16.

25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은 “시외버스 운송사업”만 해당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 나, 다목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공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되었음.

258) 선박안전법 제1조의2(여객선)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 운송용 항공기

- ‘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함(항공사업법 제2조 제7호)
- 항공사업법상 ‘국제항공운송사업’은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뿐만 아니라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의 항공기 운항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외국 공항들 사이를 운행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에 우리나라 국민이 탑승하더라도 그러한 항공기에 대하여 본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²⁵⁹⁾ 본 목 소정의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항공사업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허·허가를 받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항공기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공항에 취항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에 한정될 것임²⁶⁰⁾

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이용수단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함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는 것은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과 관련하여 그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할 권한이 있는 것을 의미함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① 소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 여객 전용 여객선: 여객만을 운송하는 선박
2.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여객 외에 화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되는 선박
 - 가. 일반카페리 여객선: 폐위(閉圍)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시속 25노트 미만으로 항행하는 여객선
 - 나. 쾌속카페리 여객선: 폐위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시속 2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
 - 다. 차도선(車渡船)형 여객선: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차량구역이 폐위되지 아니한 여객선

259) 송인택 외 4, 앞의 책, 142.

260) 대검찰청, 앞의 책, 78-79. 이와는 달리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이란 항공사업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바(항공사업법 제2조 제38호), 항공운송사업의 범위에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본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견해로 권창영 편집대표, 앞의 주석서, § 2(권창영 집필부분).

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 장소, 시설, 설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②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거나, ③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경우 등을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로 봄

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법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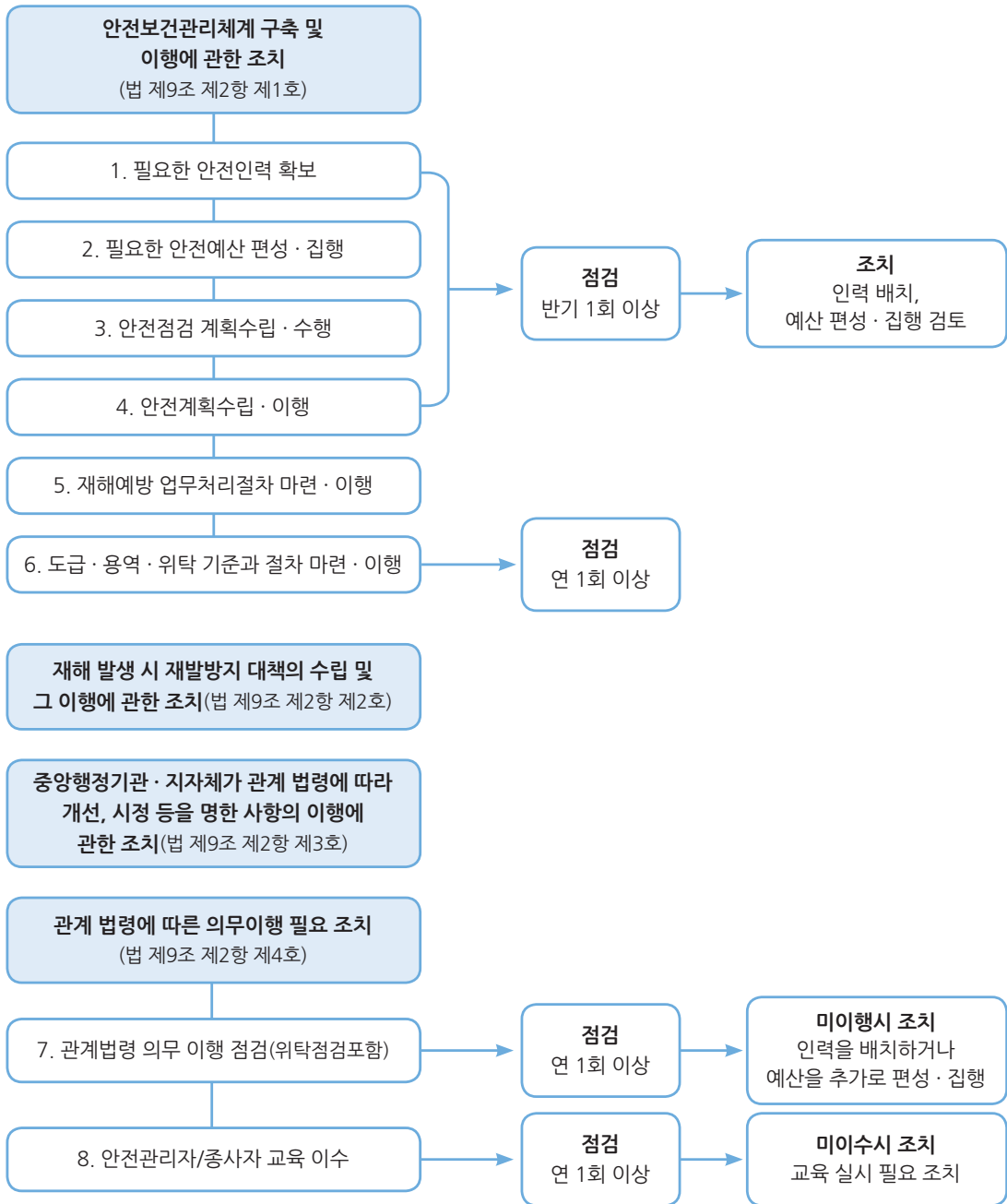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④ 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2항 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준수하도록 한 사항으로, 대부분 현장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안전조치,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상의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한 것임
- 종전 안전법령이 대부분 ‘현장에서 직접 이행되어야 하는 안전조치 또는 행위’를 규정한 것과는 다르게, 인력과 예산 등 핵심요소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 또는 기관을 경영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 특히,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제1호)’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4호)’는 시행령에 위임하여 그 의무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함

〈안전보건 확보의무 요약표〉²⁶¹⁾



261) 국토교통부, 앞의 해설서, 28.

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 가. 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가. 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
 -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
4.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공중교통수단의 점검·정비(점검·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6. 제5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조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 라. 공중교통수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의 제1종 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1) 안전·보건 관계 법령²⁶²⁾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기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함
 - 구체적으로는 ①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②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③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구성하는 구조체, 시설, 설비, 부품 등의 안전에 대하여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을 규정하는 법률, ④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자, 종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는 법률 등을 안전·보건 관계 법령으로 볼 수 있음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구조안전, 이용안전, 화재안전 등이 아닌 효율적인 이용, 원활한 교통흐름, 경제적인 가치를 고려한 성능개선 등 부가적인 목적을 가진 법령은 일반적으로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음

262) 국토교통부, 앞의 해설서, 29 이하 참조.

- 또한,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구성하는 요소 외에, 안전 외 목적을 위해 부가로 설치된 부대시설, 공작물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령도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 공중이용시설 대상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

- 도로시설(도로교량, 도로터널): 시설물안전법
- 철도시설, 철도교량, 철도터널: 시설물안전법,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 철도역시설: 시설물안전법, 건축물관리법
- 공항시설(여객터미널): 시설물안전법, 건축물관리법
- 항만시설(방파제, 파제제, 호안): 시설물안전법, 항만법
- 댐시설(다목적, 발전용, 홍수전용댐 등): 시설물안전법, 댐건설관리법, 저수지 댐법
- 건축물: 시설물안전법, 건축물관리법, 초고층재난관리법
- 하천시설(하구둑, 제방·보): 시설물안전법, 하천법
- 상하수도시설: 시설물안전법, 수도법, 하수도법
- 옹벽 및 절토사면: 시설물안전법

▣ 공중교통수단 대상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

- 철도 분야(도시철도 차량, 철도 차량): 철도안전법
- 버스 분야(시외버스): 교통안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 항공 분야(운송용 항공기): 항공안전법

2) 필요한 인력 확보(시행령 제10조 제1호)²⁶³⁾

▣ 개요

- 인력 확보 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²⁶³⁾ 국토교통부, 앞의 해설서, 33 이하 참조.

-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유형과 규모가 다양하고 이를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도 다르므로, 확보해야 할 안전인력의 수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경영책임자들은 각 기업 또는 기관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고, 시민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편성하여야 함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반드시 인력을 추가 확보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안전인력을 활용하여 충분히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경우, 추가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해당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점검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시행령 제10조 제5호)
- 또한,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거나 인력에게 부여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시행령 제10조 제6호)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가목)

●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 ① 안전점검 업무: 법률에서 정기적으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실시하도록 규정한 안전점검, 정기점검, 정기안전점검, 안전진단, 정밀진단, 정밀안전진단, 긴급점검, 긴급안전점검 등 정기적인 점검 업무
 - ※ 대표 예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 ② 보수·보강 업무: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점검의 결과로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되었을 때, 법률 및 시행령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토록 한 보수·보강 등의 업무
 - ※ 대표 예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등의 결과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보수·보강 업무
- ③ 안전조치 업무: 법률에서 규정한 긴급안전조치, 공중이용시설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용도제한, 위험표지의 설치 등의 업무

● 관련 사례

밀양 요양병원 화재 사건²⁶⁴⁾

1심 법원은 “요양병원 대표자인 피고인 甲은 ①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적절한 수의 당직의료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당직의료인은 통상적인 환자 진료와 더불어 야간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화 업무와 함께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중증환자를 포함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이 충분한 의료적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A병원은 대부분의 환자가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경우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당직 근무시간대(21:30 ~ 08:30)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대신의사를 배치하고 각 병동에는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1명씩 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재에 대비한 충분한 당직인력을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서 진화·구조·의료적 조치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됨

-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을 경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않음으로써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볼 수 있음

▣ 수립한 안전계획의 이행(나목)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점검 등의 실시와 점검·정비, 보수·보강 등 계획으로 수립한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할 것
 - 안전계획의 내용을 직접 이행하는 인력, 안전계획에 포함된 항목의 이행여부와 이행정도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인력 등을 ‘안전계획의 이행’ 관련 인력으로 볼 수 있음

▣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 사항의 이행(다목)

-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²⁶⁵⁾

26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2. 1. 선고 2018고합6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8. 28. 선고 2019노74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3563 판결.

26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5호, 2022. 1. 24. 제정.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3조(공중이용시설 관련) 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확보·편성한다.

1. 공중이용시설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2. 공중이용시설의 유해·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 조치(이용제한, 위험표지설치 등),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

제4조(공중교통수단 관련) 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확보·편성한다.

1.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2.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 조치(운행제한 등), 차량 등의 정비·보수·보강·교체 등 개선

3) 필요한 예산 확보(시행령 제10조 제2호)²⁶⁶⁾

▣ 일반사항

● 예산 편성의무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이를 수행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함
- 다만,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유형과 규모가 다양하고 이를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도 다를 수 있으므로, 편성해야 할 안전 예산의 규모를 직접 규정하기는 어려움
- 경영책임자들은 각 법인·기관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시민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야 함
- 다만, 모든 경우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기존에 있는 안전예산을 활용하여 충분히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점검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예산 편성·배치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266) 국토교통부, 앞의 해설서, 38 이하 참조.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시행령 제10조 제5호)

- 또한,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계획된 용도대로 집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시행령 제10조 제6호)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은 해당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 법인 또는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가목)

-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예산에는 안전점검 비용, 보수·보강 비용, 안전조치 비용, 인건비 등이 있음

① 안전점검 비용: 법률에서 정기적으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실시하도록 규정한 안전점검, 정기점검, 정기안전점검, 안전진단, 정밀진단, 정밀안전진단, 긴급점검, 긴급안전점검 등 업무에 예산을 투입하여야 함

※ 대표 예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② 보수·보강 비용: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점검의 결과로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되었을 때, 법률 및 시행령에서 수행토록 한 시설물 보수·보강 등의 비용

※ 대표 예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등의 결과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보수·보강 업무

③ 안전조치 비용: 법률에서 규정한 긴급안전조치,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용도제한, 위험표지의 설치 등의 비용

④ 인건비: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수행하는 인력의 고용, 운영 비용

※ 그 외에 법정 안전계획의 수립, 법정 안전교육의 실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안전관련 예산으로 볼 수 있음

▣ 안전계획의 이행(나목)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점검 등의 실시와 점검·정비, 보수·보강 등 계획으로 수립한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안전계획의 이행여부와 정도를 점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도 ‘안전계획의 이행’ 관련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 사항의 이행(다목)

-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3조(공중이용시설 관련)

②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1. 공중이용시설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2. 공중이용시설의 유해·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 조치(이용제한, 위험표지설치 등),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
3.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과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4.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물품·보호구 및 장비의 구입
5.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점검

제4조(공중교통수단 관련)

②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1.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2.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 조치(운행제한 등), 차량 등의 정비·보수·보강·교체 등 개선
3.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과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4. 안전관리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물품·보호구 및 장비의 구입
5.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점검

4)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시행령 제10조 제3호)²⁶⁷⁾

▣ 개념

- 안전점검의 정의
 -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내재된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함
- 주요 규정사항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이 수행

267) 국토교통부, 앞의 해설서, 43 이하 참조.

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대상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안전점검의 계획 수립과 수행에 관련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받아야 함(시행령 제10조 제5호)
- 또한,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안전점검 이행을 지시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시행령 제10조 제6호)
-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사건의 경우 업무상과실의 내용 중 하나로 정기점검을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여 교량의 균열 및 부식 진행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있는바,²⁶⁸⁾ 해당 사건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시행령 제10조 제3호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²⁶⁹⁾

▣ 공중이용시설 대상별 안전점검의 예시

- 철도시설
 - 철도교량, 철도터널

관계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정기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C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D·E등급 : 연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 : 3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2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1년에 1회 이상
	제12조	정밀안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 : 6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5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4년에 1회 이상
철도건설법	제29조	정기점검	시설별 별도주기 결정
	제31조	정밀진단	<10년 경과 철도시설물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 : 6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5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4년에 1회 이상

268)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1 판결.
 269) 김·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대응팀, 앞의 책, 206.

– 철도역사, 대합실 등

관계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정기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C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D·E등급 : 연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등급 : 4년에 1회 이상 B·C등급 : 3년에 1회 이상 D·E등급 : 2년에 1회 이상
	제12조	정밀안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등급 :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 4년에 1회 이상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정기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5년 이후 3년 단위
	제16조	안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시

● 항만시설(방파제, 파제제, 호안)

관계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정기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C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D·E등급 : 연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등급 : 3년에 1회 이상 B·C등급 : 2년에 1회 이상 D·E등급 : 1년에 1회 이상
	제12조	정밀안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등급 :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 4년에 1회 이상

● 건축물

관계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정기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C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D·E등급 : 연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등급 : 4년에 1회 이상 B·C등급 : 3년에 1회 이상 D·E등급 : 2년에 1회 이상
	제12조	정밀안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등급 :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 4년에 1회 이상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정기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5년 이후 3년 단위
	제16조	안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시

● 하천시설(하굿둑, 제방·보)

관계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정기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C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D·E등급 : 연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 : 3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2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1년에 1회 이상
	제12조	정밀안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 : 6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5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4년에 1회 이상
하천법	제13조	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2회 이상
	제74조	하천관리상황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6월 이전

- 그 외에 도로시설(도로교량, 도로터널),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옹벽 및 절토사면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필수안전점검으로 봄

관계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정기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C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D·E등급 : 연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 : 3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2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1년에 1회 이상
	제12조	정밀안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등급 : 6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5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4년에 1회 이상

▣ 공중교통수단 대상별 안전점검의 예시

- 철도 분야(도시철도 차량, 철도 차량)

관계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정밀안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단위

- 버스 분야(시외버스 차량)

관계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정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단위(차령 8년 이하) • 6개월 단위(차령 8년 초과)

● 항공 분야(운송용 항공기)

관계법령	관련 조항 및 의무		점검주기
항공안전법	제90조	안전운항체계 검사	• 운항시작 전

5) 안전계획 수립(시행령 제10조 제4호)²⁷⁰⁾

▣ 주요 규정사항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연 1회 이상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
- 반기 1회 이상 안전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함(시행령 제10조 제5호)
- 또한,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안전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이행을 지시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시행령 제10조 제6호)

▣ 안전계획 수립을 갈음할 수 있는 조건

- 시설물안전법상 시설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또는 철도안전법상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 대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계획 작성 없이도 각 문서를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음으로써 해당 의무를 갈음할 수 있음

▣ 안전계획 주요 포함내용

- 안전계획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제원과 유형, 기업 또는 기관에서 그 운영·관리에 투입하는 안전 예산·인력, 대상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6)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시행령 제10조 제7호)²⁷¹⁾

▣ 주요 규정사항

- 경영책임자등이 기업 또는 기관 차원에서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발생 시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 또

270) 국토교통부, 앞의 해설서, 48 이하 참조.

271) 국토교통부, 앞의 해설서, 53 이하 참조.

는 매뉴얼 등을 마련토록 함

- 이는 경영책임자등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수·보강 등 조치를 직접 수행하라는 의미보다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 또는 조치 요구하여, 보수·보강이 적절히 수행됨으로써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라는 취지임

▣ 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을 갈음할 수 있는 조건

-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시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업무처리절차 작성 없이도 각 문서를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음으로써 해당 의무를 갈음할 수 있음
- 「항공안전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는 별도의 업무처리절차 작성 없이도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해당 의무를 갈음할 수 있음

▣ 업무처리절차 표준예시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가목)
 - 일반적으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점검 또는 육안관찰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 또는 해빙기, 장마기간 등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특성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 또는 안전업무 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재해 예방 및 이용안전을 위해 수시로 실시하는 육안관찰(수시점검) 등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 이러한 점검·관찰 등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상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개선에 관한 사항(나목)
 - 유해·위험요인 신고 또는 조치 요구시, 시설관리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경미한 경우 자체 개선 후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

- 유해·위험요인이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관리자는 경영책임자들에게 보고하고, 경영책임자들은 보수·보강 지시 및 조치결과를 확인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추가 피해방지조치,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다목)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 담당자는 경찰서, 소방서에 신고하고, 관계행정기관에 상황을 보고하며 재해자에 대하여 긴급구호조치, 긴급안전조치 등을 시행하고, 중대시민재해 발생 상황을 경영책임자들에게 보고
 - 경영책임자들은 안전관리 담당자의 대응상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필요시 추가 피해방지 조치를 지시하며, 상황 종료 후 피해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지시
 - 안전관리 담당자는 경영책임자들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경영책임자들, 관계행정기관 등에 보고함
-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라목)
 - 시설물안전법상 제1종 시설물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하여,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발생 시를 대비하여 대피훈련(비상대응계획 등)을 실시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 대피훈련의 시기, 장소 및 훈련목표, 참여 범위와 시나리오, 대피훈련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대피훈련계획의 수정, 개선에 다시 반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음

7) 도급·용역·위탁 시 조치(시행령 제10조 제8호)²⁷²⁾

▣ 주요의무사항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아래 두 사항을 마련하도록 함
 - ① 수탁기관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안전관리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

272) 국토교통부, 앞의 해설서, 59 이하 참조.

② 수탁기관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 또한, 연 1회 이상 이 기준과 절차가 원활히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함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마련

- 중대시민재해 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은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안전관리역량은 수탁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과 최근 3년 이내 중대사고 발생이력 등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양한 요소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안전조직·인력,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재해대응체계, 교육·훈련 등을 근거로 수탁기관 평가 가능
- 평가절차
 - 도급·용역·위탁 등을 할 때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마련하고, 이를 기존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운영 가능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예시: 평가항목별 배점 및 상·중·하의 배점은 기업 또는 기관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

〈평가 항목 및 기준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상	중	하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 • 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교육 및 훈련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제재이력(횟수 및 정도) 			

※ 각 사업장 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 가능함

▣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리비용 평가기준

-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리비용

- 수탁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받은 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용을 도급·용역·위탁비용에 계상하도록 함

※ 안전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준공 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함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예시

- ①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 교량, 터널 분야 예시: 노면·교면의 포장 균열·손상 발생신고 접수 시, 이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조치, 이용자에게 대한 이용제한 조치 등 업무
 - 철도 분야 예시: 차량운행에 필요한 부품 탈락 등 위험요인 발생신고 접수 시, 이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및 부품 교체 조치, 차량 운행제한 조치 등 업무
- ②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 교육용 예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사례공유 교육,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판 설치조치 등
- ③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 안전 물품 예시: 안전표지판, 안전삼각대, 비상탈출용 망치, 안전경광봉 등
 - 안전 장비 예시: 차량 차체 진단장비, 철도차량 점검 특수 해머, 차량 수리·보수 리프트점검·교체 장비 등
- ④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용
 - 안전 관련 시설 설치 예시: 건축물 내력벽 보강시설 설치, 철도역사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 설치 등
 - 안전 관련 설비 설치 예시: 철도차량 정비·점검을 위한 작업설비 설치
- ⑤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바.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 제2항 제2호)

▣ 개념

- 재해의 범위

- 중대시민재해에 이르지 아니한 재해도 포함되며, 재해가 반복적이거나 상당

하여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한 정도의 재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 위 규정은 실제로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던 경우에 문제되고, 그러한 재해는 본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재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제도화하여야 함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이미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사후 조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결과 분석,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함

사. 중앙행정기관등이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 제2항 제3호)

▣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자 그 밖의 시민의 안전·보건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의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였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과는 별개로, 개선·시행명령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법 제11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 개선·시정명령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시행되어야 함²⁷³⁾

273)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함(행정절

- 개선 또는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을 의미하고, 행정지도나 권고, 조언은 포함되지 않음
-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및 보건 확보와 무관한 내용에 대해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도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율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규정에 비추어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에 관한 개선·시정명령 등에 한정되며, 중대시민재해와의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세부사항에 대한 개선·시정명령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명령의 중대성에 따라 본 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중대시민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임²⁷⁴⁾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실은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보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아.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9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11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① 법 제9조 제2항 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 ② 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차법 제24조 제1항).

274) 대검찰청, 앞의 책, 336-337.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 의무 이행여부 점검²⁷⁵⁾

▣ 개념

● 주요 규정사항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도록 연 1회 이상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경영책임자등이 인력 배치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이행을 위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미이행된 모든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경영책임자가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했는지, 미이행된 조치에 대해 개선을 지시했는지’ 등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관리상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게 됨

2) 교육 이수여부 점검²⁷⁶⁾

▣ 개념

● 주요 규정사항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교육이 이수되도록 연 1회 이상 그 이수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이 이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경영책임자등이 인력 배치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교육 이수를 위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이 미이수된 모든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

275) 국토교통부, 앞의 해설서, 63 이하 참조.

276) 국토교통부, 앞의 해설서, 65 이하 참조.

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경영책임자가 교육이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했는지, 미이수된 교육에 대해 이수토록 지시했는지’ 등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관리상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게 됨

▣ 안전관리자 또는 정비·점검 종사자 교육의 예시

● 항공 분야 예시

- 항공분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위험물취급자, 승무원에 대해 실시함
- 항공안전법 제72조에 따라, 항공 분야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항공안전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항공기 승무원은 항공기 비상시의 경우 또는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경우의 조치사항, 해당 항공기에 구비되는 구급용구 등 및 탈출대·비상구·산소장비·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
- 항공기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위험물취급자, 항공기 승무원 등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 교육이 이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경영책임자등이 인력 배치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교육 이수를 위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함

자.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법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주요 규정사항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

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책임이 있다면,

-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은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도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 이 규정은 법 제5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지배·운영·관리의 대상으로 ‘장소’ 외에 ‘시설, 장비’를 명시하고 있고,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 국토교통부 해설서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²⁷⁷⁾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목적물에 대한 민사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당연히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 시설 등에 대한 위험 통제 관점에서 법률상 또는 계약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²⁷⁸⁾

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처벌

법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처벌)

-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중대시민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

277) 국토교통부, 앞의 해설서, 67.

278) 김·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대응팀, 앞의 책, 224.

우에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되었고,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으므로(형법 제268조),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됨

- 현대 기업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책임을 아래로 위임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현행법상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음²⁷⁹⁾
 -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명시하고, 이와 같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에게 직접 부과된 의무 위반을 책임근거로 하여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는 것을 명확히 함²⁸⁰⁾
-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함
 - ① 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 ②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중대산업재해와는 달리 재범의 경우의 가중처벌 규정은 없음
-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법 위반 주체로서 처벌하는 것임

나. 범죄의 구성요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279) 대법원은 과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에서 “시공회사의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의 공사감독을 전담하였고 사장은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장으로서 그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이 공사시행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저지르지 모른다고 하여 이에 대비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도1618 판결)라고 판시하는 등, 다수의 판결에서 최고경영자에게는 중간관리자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의무만 인정될 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함.

280) 대검찰청, 앞의 책, 345.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진정신분 범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Ⅱ. 3. 마. 바항에서 전술한 바와 같음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본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IV. 3. 항에서 전술한 바와 같음
- 법 제9조 제1항 제1, 4호 및 제2항 제1, 4호의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반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해당 조치의 요구 수준이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이행 정도가 문제될 것임
 - 즉,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처한 구체적 상황 아래에서 상기 의무 이행을 위하여 일정한 노력, 비용 등이 필요한 경우 어느 범위까지 해당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임
 -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주요 내용인 필요한 인력, 예산의 요건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인력, 예산의 결여가 의무 위반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규정의 특성상 입법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향후 다양한 사례와 판례 축적을 통하여 구체성과 명확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임²⁸¹⁾

281) 대법원은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서 위험방지의무가 문제된 사안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고 그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는 이상, 그 사고가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더라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경우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의 정도, 위험이 현실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침해되는 법익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에 드는 비용이나 위험방지조치를 함으로써 희생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불합리한 손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부담과 비교할 것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법경제학에서의 비용·편익 분석입과 동시에 균형접근법에 해당한다. 법관이 법을 만들어나가는 속성을 지닌

● 입법적론 비판

-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원료와 제조물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위 법률에 따른 주의의무를 특정하기 어렵고, 원료·부품 제조업자와 완성품 제조업자, 판매·유통업자와 설계·제조업자가 각각 어떤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주의의무 내용을 알기도 어려우며, 최종 제조물이 생산되기까지 원료, 부품, 완성품 제조업, 판매 및 유통업 관련 경영책임자등이 그 사업 범위, 즉 자신이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만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자에 대한 조사, 감시의무도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고, 경영책임자등의 책임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음²⁸²⁾

▣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 없음
- 중대시민재해의 구체적인 내용은 II. 3. 다항에서 전술한 바와 같음

▣ 인과관계²⁸³⁾

●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 대법원은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작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함²⁸⁴⁾
- 부작위범의 형태를 지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서도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그러한 의무 위반행위와 중대시민재해

불법행위범에서 법관이 수행해야 할 균형 설정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균형 설정은 구체적 사안과의 관련성 속에서 비로소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는 것이므로, 미리 세세한 기준을 작성하여 제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때는 이른바 'Hand Rule'을 참고하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는 데 드는 비용(B)과 사고가 발생할 확률(P) 및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L)를 살펴, 'B < P·L'인 경우에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접근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282) 김상민, 앞의 글, 11.

283) 이하 대검찰청, 앞의 책, 355-358 참조.

284)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의 직접적인 관여 내지 구체적인 의무가 확인되는 경우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의 의무 위반이 판례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을 위하여 요구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는 경우, 기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상당인과관계와 동일한 기준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대구지하철사고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련 건설업법상 정해진 건설기술자를 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은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²⁸⁵⁾하였는데, 향후 필요한 인력이 투입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도 이와 동일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가목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의 직접적인 관여 내지 구체적인 의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의 직접적인 관여 내지 구체적인 의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중대시민재해의 원인이 된 관련 행위자, 현장책임자 등의 특정 행위를 전제로 하여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이 그러한 실무자들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85) “피고인 1로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항시 당해 공사가 기술상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이 사건 폭발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위 건설업법 소정의 건설기술자가 배치되었더라면,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그의 기술과 경험에 의하여 이 사건 소방도로에 대한 그라우팅공사를 위와 같이 지하 매설물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설계도면도 없이 무모하게 시행하지는 못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피고인 1로서는 공소의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5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의 감리까지 담당하기로 약정하고도 위 공사에 대한 실질적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공사 감리자로 지정하여 현장에 파견하지 않았으므로, 위 건설업법 소정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의무만이라도 충실히 이행하여 그 공사가 기술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 1이 이 사건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의 감리업무까지 수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감리자로 파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건설업법 소정의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기술자조차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은 이 사건 폭발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776 판결). 이 사안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가목 관련 필요한 인력에 관한 부분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부과된 경우를 보여주는 예에 해당하므로 제시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행위가 종업원 등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보다 일반적·추상적 성격인 관리상의 조치 불이행이라고 할 때, 원격지에 있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실행되는 관리상의 조치 불이행과 중대시민재해의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행위자인 종업원 등의 주의의무 위반의 원인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순차적 방식의 접근도 가능할 것임
- 이처럼 행위자의 구체적 의무 위반행위를 매개로 하여 그러한 행위에 대한 방지 또는 회피 가능성이 인정되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을 입증하는 방법에 의하여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행위와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 요소를 토대로 경험칙상 개연성, 행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나아가, 중대시민재해에 있어서는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과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중요한 쟁점으로 내포되어 있음
- 인과관계의 단절문제
 - 판례를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성요건적 행위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함
 -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예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천재지변, 제3자의 고의 행위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중대시민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본법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외부 요인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움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나 제3자의 행위 또는 불가항력적 요소가 일부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이상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
- 실제로 ‘경주 M리조트 붕괴 사건’에서 법원은 폭설이 일부 요인이 되었다라고 해당 리조트 체육관을 시공한 업체 운영자 등의 시공상 주의의무 위반과 그러한 붕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²⁸⁶⁾

▣ 주관적 구성요건

- 문제의 제기: 고의범 또는 과실범인지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 제10조의 ‘시민재해치사상죄’에서 ‘치사상’ 부분은 과실범이라는 것은 크게 다툼의 여지가 없음. 따라서 의무위반으로 인한 사상이라는 중한 결과발생에 대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의 예견가능성과 그들의 의무위반이 중한 결과를 야기했다는 부작위의 인과성(가설적 첨가절차)²⁸⁷⁾이 인정되어야 함
 - 그런데 위 범죄인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은 고의 행위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실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검토: 고의범
 - 종래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고의범으로 해석해왔고,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또한 고의범으로 보는 것이 다수 견해임
 - 중대시민재해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중대산업재해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는 내용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형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과실의 위반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기본행위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고의가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함²⁸⁸⁾

286)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5512 판결.

287) “만약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자신에게 요구된 법적 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중한 사상의 결과가 방지되었을 것인가(발생하지 않았을 것인가)?”를 심사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그 판단은 ‘확실성에 가까운 개연성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입장. 결과방지 가능성이 조금이라고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면, 즉 ‘위험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부작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입장 등이 있음. 김성룡, 앞의 글, 39.

288) 이와 관련하여 앞서 III. 4. 다. 5) 부분 참고.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고의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험성이 있는 사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다’는 인식이 있음을 의미하고, 중대재해라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요구하지는 않음. 다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있어야 함
- 본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일반적·추상적 감독의무를 포괄하고,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본연의 업무에 속하므로, 그 위반에 대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고의는 비교적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음
- 유형별 검토²⁸⁹⁾
 - 구체적으로 4가지로 구분된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있어서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평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3호)의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러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알면서도 계속 사업을 하다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책임이 인정될 것임
 - 반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제1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4호)의 경우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보다도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일부 조치를 하였음에도 미진한 불완전 이행이 문제될 것이고, 과실의 영역에 가까워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의범으로서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음²⁹⁰⁾

289) 대검찰청, 앞의 책, 363.

290) 중전 실무는 이러한 경우 인력, 예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의율하였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과실에 의한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없었음.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범위 내에서의 인력 배치, 예산 집행이 있었는데 사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중대재해가 인력,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될 것임. 향후 구체적 재판과정에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함.

- 다만, 제1호, 제4호 조치는 그 세부내용으로서 반기 1회 이상 등의 주기적 점검을 포함하므로 점검의 미실시,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 불이행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위반에 대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단할 수 있을 것임

- 입법론적 제안

- 이러한 문제는 규정 문언의 불명확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고(시설물안전법 규정²⁹¹)과 비교),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법 제15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별칙 규정인 법 제10조에서는 그러한 주관적 구성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데서 비롯됨
-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법문에 주관적 구성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임

다. 죄수²⁹²⁾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자체의 죄수 관계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달리 중대재해처벌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가 일정한 복수인 경우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시민재해로 인해 이용자 등이 2명 사망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 1죄가 성립하고,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2명이 발생한 경우라도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위반죄 1죄만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함. 피해자가 몇 명인지는 양형에서 고려할 문제임
-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법 제

291) 참고로 시설물안전법은 다음과 같이 일정한 의무위반행위를 기본 범죄로서 처벌하고, 그 치사상죄에 대하여 기본 범죄의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별도의 범죄로 정하고 있음

시설물안전법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중략)
-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4조(벌칙)

- ① 업무상 과실로 제63조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업무상 과실로 제63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2) 구체적인 논의는 III. 4. 라. 2) 부분 참고.

10조 제2항 위반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고, 이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

▣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수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5. 양벌규정

법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 제1항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 제2항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 개요

- 동 조항은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9조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제10조에 따라 행위자로 처벌되는 경우 행위자가 속한 법인 또는 기관에게도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마련한 양벌규정임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또는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 “법인 또는 기관”

-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와 처벌 대상이 다르지 않으므로 III. 5. 부분 논의를 참조하면 됨

▣ 적용 요건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위반행위의 주체이고, 업무에 관하여 법 제 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야 함
- 나아가 경영책임자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 또는 기관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와 다르지 않으므로, III. 5. 부분 논의를 참조하면 됨

6. 사례 연구

가. 세월호 사건

1) 사실관계

- 2014. 4. 16.경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C해운 소속의 여객선 세월호가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화물을 과적하고 부실하게 고박하여 항해하던 중, 항해사 등의 운항 상 과실로 침몰하여 탑승인원 476명 중 294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부상당함

2) 사건의 경과

- 선장, 일부 항해사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을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에 피해자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자리를 벗어나 피해자들이 익사하게 되었으므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살인 및 살인미수죄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었고, 업무상과실선박매물, 수난구호법위반 등으로도 유죄가 선고됨. 다른 선원들에 대하여도 업무상과실선박매물,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위반 등으로 유죄가 선고됨²⁹³⁾
- C해운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① 세월호에 대한 복원성 유지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세월호를 항해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선박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 ② 복원성이 악화된 세월호에 적정량을 초과하는 화물이 적재되면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293) 광주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고합180, 384(병합)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노490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았고, 그 위협으로 인해 세월호가 전복되면 세월호에 승선했던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세월호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됨²⁹⁴⁾

3)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경우(가상사례)

▣ 경영책임자등

- 이 사안에서 C해운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경영책임자라고 할 수 있음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 세월호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5호 라목의 공중교통수단에 해당함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제1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관련
 - 피고인 A가 ① 선박안전법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위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시행령 제10조 제2호), ② 선박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하였는지(시행령 제10조 제3호), ③ 세월호의 점검, 정비, 보수, 보강 등에 대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지(시행령 제10조 제4호), ④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시행령 제10조 제5, 6호), 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공중교통수단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였는지(시행령 제10조 제7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703 판결의 판시사항에는 피고인 A는 세월호의 복원력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C해운의 직원들도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되어 있음. 피고인 A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 편성하지 않았고, 세월호에 대한 점검, 정비, 보수, 보강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안점점검 및 그에

294) 광주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고합197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5. 12. 선고 2014노508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703 판결.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이 확인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또한 세월호 당시 선장 및 선원들이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실이 증명될 경우에도 피고인 A는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조 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판시사항에서 C해운의 직원들은 세월호에 평형수, 연료유, 청수 등을 복원성 기준인 합계 2,546.6톤보다 1,375.8톤이 적은 1,170.8톤만 적재한 반면 화물은 복원성 기준상 적재 최대치인 1,077톤보다 1,065톤이 많은 2,142톤을 적재하면서 관련 규정대로 화물에 대한 고박을 하지 않았다는 업무상과실과 평소 세월호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해양사고 훈련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고,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었음
 - 피고인 A는 직원들이 복원성 기준을 위반하고, 화물고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등 선원안전법상 법령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 2호 관련). 이러한 사실이 증명될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 후, 피고인 A가 이러한 점검 및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임(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3, 4호 관련)

▣ 인과관계

- 앞서 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은 세월호의 침몰 및 승객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함으로써 승객들의 사망이라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인과관계 단절 여부

- 비록 선장 및 선원이 승객 등에 대한 어떠한 구조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세월호에서 퇴선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인과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대법원판결도 “세월호의 침몰 및 승객 등의 사상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침몰 및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세월호의 선장과 승무원들의 적절한 구호조치 미이행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함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사실(안전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만약, 피고인 A가 이러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의무의 존재에 대한 부지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임

▣ 양벌규정 적용

- C해운은 피고인 A가 처벌받을 경우 법 제11조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4) 시사점

- C해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에도 피고인 A에게 선박안전법상의 선박의 복원유지 의무라는 직접적·구체적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이유로 선박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고, ② 세월호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이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등에 대한 유죄가 인정됨.

이에 피고인 A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확정됨(업무상횡령·배임과 실제적 경합)

- 세월호 사건과 같이 대표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경우²⁹⁵⁾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표자를 처벌하고자 한 입법목적은 그 의미가 약화될 것으로 보임. 다만, 종전에는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위하여 대표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대표자에게 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부과되어 위 의무 자체에 대한 인식²⁹⁶⁾은 크게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고의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여 양형을 할 때에 종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정할 유인은 될 것으로 보임

295)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삼풍건설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겸 삼풍백화점 회장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초에 쇼핑센터를 짓기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작하다가 그 후 백화점을 짓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면 실제로 사용될 용도에 따라 백화점시설에 맞는 종합적 건축계획을 새로이 수립하고 백화점으로서의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설비설계도면을 먼저 확정된 후 그에 맞추어 구조계산과 설계를 종합적으로 다시 하여 건물의 안정성에 관한 검토를 한 후 체계적인 시공을 하여야 하고, 5층을 사후에 전문식당가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표면상으로는 운동시설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허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양자 간에는 고정하중(Dead Load) 및 적재하중(Live Load)의 차이가 크므로 미리 기둥과 바닥 슬래브의 내력을 식당용도에 맞출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5층을 전문식당가로 용도변경한 후라도 실제로 식당가로 사용하기 전에 구조계산을 새로이 하도록 함으로써 5층을 받치는 기둥과 바닥 슬래브의 내력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지붕층 슬래브는 냉각탑설치를 위한 설계, 시공이 되어 있지 않고 적재하중이 240kg/m²로 설계, 시공되어 있으므로 등분포하중이 400kg/m²인 냉각탑을 설치하려면 그 하중이 슬래브에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냉각탑을 이전하여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시공된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이 슬래브에 작용하지 않도록 냉각탑을 소분할 이전함으로써 건물구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 사건 건물을 유지·관리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붕괴 당일 삼풍건설의 직원들로부터 현장 균열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그 균열상태가 심각함을 확인하였으므로 백화점 내의 고객 및 직원들을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판사와 같은 피해를 입게 하였다”면서, 대표이사 겸 회장인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함.

296) 중대재해처벌법상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고의는 필요함.



1. 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11조(중대 시민재해의 양벌규정)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될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범죄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주무관청에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적 통보 규정을 둔 것임

2.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²⁹⁷⁾

법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297) 대검찰청, 앞의 책, 371.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 “공표”란 행정법상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그 의무 위반자 또는 불이행자의 명단과 그 위반 또는 불이행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 여론의 압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함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그 발생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해당 경영책임자의 명예나 신용의 침해 위협을 통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공표의 대상을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으로 한정함

3.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가. 피해자 등 직권 증인 신문

- 중대재해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직권으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피해 진술을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도록 함

나. 전문심리위원 소송절차 참여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 참여를 법원의 재량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과 달리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를 원칙적으로 법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전문심리위원 참여의 필요성
 - 중대재해사건의 경우 중대재해의 발생원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밝히기 위하여 전문분야에 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임
 - 이와 같이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당사자들의 주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이 기재된 서증이나 문헌이 제출되어 당사자의 청구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설명이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하고 감정이나 검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때에도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방법
 -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과 구체적 업무처리방법은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내지 제279조의5,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7 내지 제126조의13, 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 내지 제4조,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3조 내지 13조 등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함
 -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지원시스템 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조회(JW205)’에서 가능하고, 특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설분야는 대분류 ‘(01)건축’, 중분류 ‘(03)건설안전관리’, 소분류 ‘(01)건설안전관리, 안전진단, 점검’ 또는 ‘(02)안전관리’ 등에서 조회하여 후보자 선정과정을 거쳐 선정할 수 있음
- 형사소송절차에서 전문심리위원 참여시 유의사항
 -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제279조의4 제1항, 제279조의5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8, 제126조의10,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 제4조 제1항, 제5조 등에 정한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함. 절차상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 적법절차에 위배되어 위법한 판결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19051 판결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제279조의4 제1항, 제279조의5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8, 제126조의10,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 제4조 제1항, 제5조에서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전문심리위원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에 기초한 설명이나 의견이 법원의 심증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 다음 그에 대응하여 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되는 단계, 전문심리위원

의 설명이나 의견의 대상 내지 범위를 정하는 과정, 그의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절차에 피고인 등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형사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의 기초가 될 ‘형사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담당 법원은 전문심리위원회에 관한 위 각각의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이를 준수함에 있어서도 적법절차원칙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1항을 고려하여 전문심리위원회와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에서 입법한 위 각각의 적법절차조항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

4. 징벌적 손해배상

법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1) 개관

▣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가슴기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가 발생하면서, 제재 강화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임

▣ 국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동향

- 우리나라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이고, 이후 공정거래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법률²⁹⁸⁾

법률명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가해자의 주관적 요소	주관적 요소의 증명책임	배상액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규정	손해배상을 명하는 주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으로 정하는 일정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고의/과실	가해자	손해의 3배까지	있음	법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으로 정하는 일정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고의/과실	가해자	손해의 3배까지	있음	법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으로 정하는 일정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고의/과실	가해자	손해의 3배까지	있음	법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	고의/ 중대한 과실	가해자	손해의 3배까지	있음	법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	고의/ 중대한 과실	가해자	손해의 3배까지	있음	법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	고의/ 중대한 과실	가해자	손해의 3배까지	있음	법원

298) 김정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9), 198-199.

법률명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가해자의 주관적 요소	주관적 요소의 증명책임	배상액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규정	손해배상을 명하는 주체
제조물책임법	조치불이행 +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손해 발생	고의	가해자	손해의 3배까지	있음	법원
환경보건법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발생	고의/ 중대한 과실	피해자	손해의 3배까지	있음	법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별적 처우(의 반복)	명백한 고의	피해자	손해의 3배까지	없음	노동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인한 손해발생	고의/과실	가해자	손해의 3배까지	있음	법원
특허법	타인의 특허권 /전용실시권 침해	고의	피해자	손해의 3배까지	있음	법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법으로 정하는 일정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고의/과실	가해자	손해의 3배까지	있음	법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으로 정하는 일정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고의/과실	가해자	손해의 3배까지	있음	법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침해행위	고의	피해자	손해의 3배까지	있음	법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으로 정하는 일정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고의/과실	가해자	손해의 3배까지	있음	법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으로 정하는 일정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고의/과실	가해자	손해의 3배까지	있음	법원
중대재해처벌법	법으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중과실	피해자	손해의 5배까지	있음	법원

- 국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판례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19개 법률 중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하도급업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전보배상액(최저 입찰금액과 실제로 체결한 공사대금액의 차액)의 1.5배의 배상을 명한 사건이 있음²⁹⁹⁾
 - 또한 하급심판결 중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인 피고는 수급사업자인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부당하게 위탁취소하였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를 시공할 경우의 기대이익의 2배 남짓의 배상을 명한 판결이 있음³⁰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매뉴얼 첨부도면의 기술정보를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입은 상당한 손해액을 5억 원으로 인정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은 그 3배의 범위 내로서 10억 원(손해액의 2배)으로 정함³⁰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파견근로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원고 회사 소속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정기상여금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이고 그 처우가 반복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각자의 차별적 처우금액의 1.1배를 지급하라’는 판정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불복하여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배액배상 명령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³⁰²⁾

299) 이 사건에서 1심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를 2배로 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 1.5배로 감경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9. 19. 선고 2016가합2028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2059193 판결, 대법원 2018. 8. 30.자 2018다230038 판결(십리불속행).

300) 광주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2020나21236 판결.

301)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나2032402 판결.

302)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7구합87074 판결.

- 이외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으나, 위 법상 요구하는 일정한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³⁰³⁾ 위반행위는 인정되나 배액배상은 인정하지 않은 판결³⁰⁴⁾이 있음³⁰⁵⁾

2)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

▣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원고)

-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는 중대재해의 직접 피해자 및 상속인으로 한정된다는 견해가 있음
 - 따라서 중대재해로 사망한 자의 유족은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기하여 위 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민법 제752조에 따라 위 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함³⁰⁶⁾

▣ 배상책임자: 개인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피고)

-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주이고 법인 등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기관임
- 법인의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제1항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임
 -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경영책임자는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법인과 경영책임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음³⁰⁷⁾

3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6가합572122 판결 등.

3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3가합82598, 512430 판결.

305) 징벌적 손해배상이 주장된 판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진행 경과에 관하여는 김정환, 앞의 보고서, 203-221 참조.

306) 이창현,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과 민사재판 실무상 쟁점”,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사법정책연구원 (2022. 7. 8.), 136.

307) 권창영 편집대표, 앞의 주석서, § 15(권오성 집필부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법인의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책임자등으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벌규정’과는 달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의 특칙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제 15조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법인’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당연히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의 피고적격이 있음
- 기관의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상 기관을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경우, 이러한 법인격 없는 기관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제1항의 배상책임을 청구할 방법은 없음³⁰⁸⁾
 - 법인격 없는 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임
- 비법인사단의 경우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여 온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면,³⁰⁹⁾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도 비법인단체의 대표자가 ‘경영책임자등’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벌규정’과는 달리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또는 제10조의 형사처벌은 ‘고의’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임.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고의가

308)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350개의 공공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은 없는 것으로 보임.

309)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등.

인정되지 아니하여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중과실책임을 물어 징벌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음

▣ 중대재해의 발생

- 중대재해가 발생하여야 함. 중대재해 관련된 논의는 II. 3. 가, 나, 다. 부분 참조

▣ 면책규정

-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제1항 단서는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경영책임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전제로 하는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주체는 결국 경영책임자등이 될 것이므로, 제1항 단서에 의한 면책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임

3) 배상액의 산정

▣ 기초가 되는 ‘손해액’의 산정

- ① 전보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단계에서 손해배상법의 일반이론이 적용되므로, 손해삼분설에 따라 적극적 재산손해, 소극적 재산손해, 본인의 위자료로 구분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³¹⁰⁾와 ②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재산상의 손해로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³¹¹⁾
- 손해삼분설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실무례에 따라, 적극적 재산손해, 소극적 재산손해, 본인의 위자료(다만, 기초되는 위자료 산정시 징벌적 의미의 위자료는 고려하지 않음)로 손해액을 산정한 후, 산정한 손해액에 징벌승수를 정하여 곱하는 방식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310) 이창현, 앞의 글, 139.

311) 한태일,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비교-최근 징벌적 위자료 논의와 관련하여-”, 법학연구 제20권 제4호(2017. 12.), 117(위자료 자체가 이미 금전환가가 불가능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지는데 여기에 또 다시 법원이 징벌승수 내에서 재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및 법원이 위자료의 사적 제재기능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위자료에 대하여 또 다시 사적 제재기능을 수행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중복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징벌승수에서 말하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라 함은 재산적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미국이 위자료의 기능을 손해의 전보로 파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병합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명백해진다).

▣ 배수액 확정: 배상액 산정 시 고려할 사항

-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법 제15조 제2항)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 이러한 고려사항은 예시적인 것으로서, 다른 요소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음³¹²⁾

4) 증명책임

- 원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증명하여야 하고, 피고는 면책사유를 증명하여야 함
- 판례는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하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하다고 하는 바,³¹³⁾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다수설과 판례에 따라 고도의 개연성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³¹⁴⁾

5) 제조물책임법과의 관계³¹⁵⁾

- 하나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가 제조물책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 법의 요건과 효과가

312) 이창현, 앞의 글, 24.

313)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314) 김정환, 앞의 글, 265.

315) 김·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대응팀, 앞의 책, 136.

서로 다르므로 이른바 청구권경합 관계임.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음

- 청구권의 중첩적 행사는 허용되지 않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주체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과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사’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경우라면 배상책임자별로 각각 양 법이 독자적으로 적용될 여지도 있음. 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책임의 주체이고, 판매업자는 보충적 책임을 질 뿐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유통 및 판매업체도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음³¹⁶⁾

6) 입법론적 비판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비판³¹⁷⁾

- 위헌 등 법률 체계와의 정합성 등의 문제
 - 미국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수정헌법의 이중처벌 금지, 과잉처벌 금지, 적법절차(due process) 위반 등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집행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법치 국가의 원리에서 나오는 비례의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결들이 있음
 - 배심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일반적인 재량을 법관에게 인정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고, 배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편파적이고 일관성 없는 배상액 산정의 위험이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배상의 기본원리,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 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할 만큼 배상한다는 점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정신적 손해의 경우 우리 민법의 손해배상 법리에 의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³¹⁸⁾ 더구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국가가 아닌 피해

316)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이 인정되었던 가슴기살균제 사건의 경우에도 주문 자료부터 제조를 의뢰받아 OEM 방식[상표부착자가 제조업자에게 자세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주문을 하고, 제조업자는 그 주문에 따라 제품을 설계·제조하여 납품하는 형태의 주문자상표 부착방식(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을 의미함]으로 생산,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판매회사와 제조업체 모두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됨.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317) 박재영,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과 민사재판 실무상 쟁점”에 대한 토론문,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사법정책연구원 (2022. 7. 8.), 143-145.

318)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높게 인정할 수 있고, 최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가 상향되는 추세이므로, 위자료 제도에 의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 있음. 위자료의 현실화 요청에 대응하여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절한 위자료 산정방안」(2017)에 의하면,

자 개인이 차지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의식과 정의관념에 부합하는지 의문임

- 특히 현재와 같이 개별 입법을 통하여 도입할 경우 ① 각 법률마다 인정요건이나 보호정도, 인정절차가 서로 달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도를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②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시에 대응할 수가 없으며, ③ 불법행위 피해자 간에도 공평의 관점에서 볼 때 전체적인 형평성을 기할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개별 입법이 없는 분야에서 악의적인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됨³¹⁹⁾

● 실효성의 문제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는 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악의적으로 소액 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형사처벌, 행정처분, 과징금·과태료 제도 등 형사 및 행정 절차를 정비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고, 소액 다수 피해자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으로 구제할 수 있음
- 이미 도입된 개별 법률에 따른 제도가 실제 활용된 사례도 극히 드물

▣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 강화 및 배상액 상한의 조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외국의 입법례, 민법 등과의 체계적 정합성, 실제 분쟁사건에서의 법원의 수용성, 이중처벌의 논란 등의 관점에서 징벌배상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을 3배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³²⁰⁾ 고의와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구별하여 고의의 경우는 5배, 중과실의 경우는 3배를 상한으로 입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 등이 있음³²¹⁾

불법행위의 유형(교통사고, 대형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중 대형재난사고의 경우에는 위자료 기준금액이 2억 원이고,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4억 원까지 증액하는 방안이 소개됨. 특히 대형재난사고 가운데 ①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 경우, ② 부실 설계·시공·제작에서 기인한 사고인 경우, ③ 관리·감독, 운영상의 중대한 주의의무 또는 안전의무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④ 관리·감독기관과 운영 및 시공업체 등의 결탁·담합·은폐·조작·묵인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행위불법이 중하다고 보아 이를 특별가중사유로 구성함.

319) 김정환, 앞의 글, 228.

320) 이재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문제점”, 홍익법학 제22권 제1호 (2021), 331.

321) 이창현, 앞의 글, 139.

-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행위자는 불법행위로 부담하게 될 배상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산정하여 불법행위를 실행하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불법행위자에게 발생하는 총비용을 증가시킴으로 불법행위를 억지한다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인데,³²²⁾ 이러한 이론에 기초한다면 전보적 손해배상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비율을 3배로 설정한다는 것은 누군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행위가 적발되는 비율이 25%이라는 것임³²³⁾
 - 미국의 경우 많은 경우에 해당행위가 적발될 확률을 25%로 보아 전보적 손해배상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설정하고 있는바, 우리의 경우에도 막연히 다른 국가의 예에 따라 3배~5배라는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유사한 분야(혹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적발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후에 그에 합당한 배수를 설정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려는 목적에 보다 타당한 접근방법이라는 견해도 있음³²⁴⁾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억지력에 대한 실증적 분석, 타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 상한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해 보임

5.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

322) A. Mitchell Polinsky & Steven Shavell, *Punitive Damages: An Economic Analysis*, 111 Harv. L. Rev. 869, 892 ff. (1998), 김정환,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과 민사재판 실무상 쟁점”에 대한 토론문,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사법정책연구원 (2022. 7. 8.), 152에서 재인용.

323) 전보적 손해배상액과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합을 총 배상액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한 것임.

324) 김정환(주 322), 153.

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정부의 이행의무

-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②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③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④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등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예산의 지원

-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

-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시행시기

- 법 제16조에 따른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규정은 공포한 날(2021. 1. 27.)부터 시행함(법 부칙 제1조 제2항)

6. 부칙

가. 적용시기

부칙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원칙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 1. 26. 공포되었으며,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 1. 27.부터 시행함

▣ 적용유예

- 규모가 작은 법인 또는 기관에 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4. 1. 27.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둠
- ‘개인사업자’란 ‘법인사업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사용되는 과세대상자로서 사업의 주체가 개인인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2024. 1. 27.부터 법이 적용됨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개별 사업장이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하므로, 법인 또는 기관의 전체 종사자 규모를 기준으로 법 적용 유예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
- 2022. 1. 27. 이전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2022. 1. 27. 이후 상시 근로자 수의 증가로 50인 이상이 된 경우³²⁵⁾
 - 단계적 시행일을 규정한 부칙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6. 선고 2017나2043532 판결
(대법원 2018. 11. 15.자 2018다255785 판결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일부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함)은 부칙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상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를 시행하고,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을 그로부터 1년 더 유예함. 피고는 2015. 12. 31. 당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이었다가 2016. 1. 1. 신입예비직원 10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2016. 4. 1.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인사발령함으로써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 됨.

325) 이하, 권오성, 앞의 글, 38 참조.

이 사안에서 법원은 “어느 사업 또는 사업장이 2016. 1. 1.부터 위 법 조항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로부터 위 법 조항의 시행일을 1년 더 유예 받는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적어도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최초 시행일인 2016. 1. 1. 전에는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 시행 유예의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역시 늦어도 2015. 12. 31. 24:00까지는 확정되어야 하므로, 그 후의 사실관계는 이를 위한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이 사건 부칙의 문언적 해석에도 부합한다. 그러므로 2016년 신입직원들은 이 사건 부칙에 따른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판시함

- 위 판결의 취지를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에 적용해보면, 2022. 1. 27. 이후 2024. 1. 27.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수의 증감은 부칙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022. 1. 27.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않던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시행일 이후 50인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위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새로이 위 법이 시행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2022. 1. 26. 24:00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49명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이후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0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고 해석할 것임³²⁶⁾
- 또한, 2022. 1. 26. 24:00 기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근로자 수의 감소 등의 사정이 생기더라도 사후적으로 시행이 반복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2022. 1. 27. 이후에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으로 감소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함
-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이 아닌 ‘동법의 본칙인 제3조’는 동법 본칙에 따른 동법 제2장 규정의 적용범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의 적용을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라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항상 검토하여야 함

326) 이에 대하여, 2022. 1. 27. 이후부터 2024. 1. 26.까지의 기간 사이에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으로 되는 경우에, 상시 근로자가 50인이 되는 날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는 견해가 있으나[고용노동부(주 17), 38, 대검찰청, 앞의 책, 149], 위 판결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즉, 이전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었던 사업 또는 사업장이더라도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당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됨

나. 다른 법률의 개정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3항 및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1) 법원조직법상 형사사건의 사물관할

-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심판권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제3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합의부가 심판하도록 정하고 있음(제7조 제4항, 제5항, 제32조 제1항)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법원과 그 지원 합의부가 제1심을 담당하게 됨
- 다만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형에 관계없이 이러한 사물관할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조 제1항 제3호 단서),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물관할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제1심을 단독판사가 담당하게 됨

2) 부칙 제2조의 규율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2조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아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제3항 및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신설함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제3항 및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각 사건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므로 기존 법원조직법이 정한 사물관할상 합의부가 심판하여야 할 사건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2조를 둠으로써 위 사건의 경우에도 모두 단독판사가 심판하게 됨

- 이는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해서는 단독판사가 심판권을 가지는 점,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1조 위반 사건(산업재해치상죄, 시민재해치상죄)의 경우는 단독판사가 심판권을 가지게 되는데, 법 제6조 제1항, 제3항 및 제10조 제1항 위반 사건(산업재해치사죄, 시민재해치사죄)은 그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의부가 심판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물관할이 나뉘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단독판사 관할로 규정한 것임³²⁷⁾

3) 재정합의결정에 따른 합의부 심판 가능성

- 합의부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이라도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재정결정부)가 결정한 사건은 합의사건으로 처리가능함(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제1심 단독사건 중에서 ①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②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③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④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⑤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⑥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에 대하여는 재정합의결정을 받을 수 있음(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2조 1항)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초기에 기소되는 사건은 그 법정형을 불문하고 아직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이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할 수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 발생의 원인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요구될 수도 있음. 법원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 사건의 개별 특성을 잘 살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정합의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³²⁸⁾

327) 제21대 국회 제383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1. 1. 6.), 80.

328) 권창영 편집대표, 앞의 주석서, 부칙 § 2(김희수 집필 부분).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의의

- 과거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사망사고 또는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안전관리책임의 구조적인 분산으로 인하여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워 형사처벌이 어려웠고, 대부분 재해 사건에서 일선 현장노동자나 중간관리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비판을 받아옴
 - 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예산 등을 투입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이르게 됨

▣ 적절한 해석·적용의 필요성

-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구체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부과되었는바,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판과정에서 이 법의 입법목적을 형해화하지 않도록 이 법을 해석·적용하고 양형을 할 때에 이 법의 입법취지를 한 번 더 고려하여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의무가 부과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전혀 대비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현장, 공공시설물 등의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형을 할 때에 입법취지를 살려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함
- 다만, 실제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를 모두 없애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의 규모, 특성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여왔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 유·무

죄 판단 및 양형에 있어 균형있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화학물질관리법, 시설물안전법, 항공법 등 개별 법령에는 구체적으로 정기적 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등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인 인력 및 예산과 업무처리절차 마련이 필요함.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러한 재해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예산의 부족 또는 업무처리절차 미비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개별적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위반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임
- 법원은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다만,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인력, 예산을 투입하고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할 때에 어느 정도 경영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바, 그것이 적정한 수준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단순히 중대재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즉,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후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해당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예측이 있었는지 및 이에 대한 인력, 예산의 적절한 투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할 것임
-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판을 진행할 때에 피해자에 대한 직권 증인신문,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절차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실제적 진실 발견 및 적절한 양형에 이르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입법론적 문제

- 중대재해처벌법상 모호한 개념 및 문구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 도급,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양벌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서 ‘기관’ 등
- 중상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상해의 발생여부 판단 시 치료기간만을 기준으로 한 것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 타법과의 관계에서 체계적 연계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개념과 유사한 내용은 최대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종사자의 범위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에 관계수급인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점,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현장실습생이 제외될 여지가 있는 점, 특정근로노동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는 점 등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두 법에 차이가 있음
 -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의 보호범위는 동일한데, 이러한 보호범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산업현장 및 실무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법 제2조 제7호에서 종사자의 정의를 확장하고, 법 제5조에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인, 수급인의 종사자까지 그 보호범위를 넓히고자 한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범위에 관한 논쟁과 법적 명확성 및 법적 안정성에 관한 논란을 야기하게 되었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의 책임과 연관시켜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입법취지가 왜곡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음
- 중대시민재해 부분
 - 중대시민재해 부분에서도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 도급,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등의 개념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대시민재해 관련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등 그 적용범위가 중대산업재해에 비하여 넓은 반면 그 발생빈도는 산업재해보다 적을 것인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중대시민재해 예방의 유인을 주기 위하여도 그 대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명시하고, 필요한 인력, 예산 관련하여서도 어느 정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 중대산업재해에 이르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피해자와의 균형,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억지력에 대한 실증적 분석, 타법의 배상액 상한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 및 배상액 상한 조정에 관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함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권오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도서출판 새빛 (2022)
- 김·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대응팀, 중대재해처벌법, 박영사 (2022)
- 박중순, “결과적 가중범과 예견가능성”, 형법판례 150선, 박영사 (2019)
-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팀, 중대재해처벌법 연구-조문별 해석 중심, 법문사 (2022)
- 송인택 외 4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박영사 (2021)
- 이정훈,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에 따른 형사책임, (주) 중앙경제 (2021)
- 조재정, 오나가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좋은 땅 (2021)
- 박상욱·김대휘 편집대표, 주식 형법[총칙 1],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2. 논문

- 강영기 외 2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검토”, 법과 기업연구 제11권 제2호 (2021. 8.)
- 송옥렬, “경영판단의 원칙”, Business Finance Law 제100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0)
- 이원형, “행정형벌법규에서의 양벌규정의 해석과 문제점”, 청연논총(손기식 사법연수원장 퇴임 기념), 사법연수원 (2009)
- 이재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문제점”, 홍익법학 제22권 제1호 (2021)
- 전형배,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 노동법포럼 제34호 (2021. 11.)
- 정찬영·이승길,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노동법적 쟁점과 보호방안”, 아주법학 제14권 제1호 (2020)
- 최수영,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향후 정책방향”, 건설관리 제22권 제2호 (2021. 4.)
- 최정학, “중대재해처벌법-기업 경영자 처벌의 논리-”, 노동법연구 제51호 (2021)
- 한태일,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비교-최근 징벌적 위자료 논의와 관련하여-”, 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2017. 12.)
- Victoria Roper,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A 10-Year Review”, The Journal of Criminal Law Vol. 82(1) (2018)

3. 기관보고서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중대산업재해 (2021)
- _____, 중대재해처벌법령 FAQ-중대산업재해부문 (2022)
- _____,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2021)
- 국토교통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시설) (2022)
- 김정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절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9)
-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 (2022)
-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 결과보고서 (2022. 7.)
- 조성재 외 3인, 법제도 변화 이후 산업안전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21)
- 환경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 (2021)

4. 발표문 등

- 강검윤,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재판 실무상 쟁점”에 대한 토론문,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사법정책연구원 (2022. 7. 8.)
- 권오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와 실효성 제고 방안”, 법원 노동법분야연구회 (2022. 4. 25.)
- 김상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의 법리적 검토”, 한국경영자총협회 주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 (2021. 8. 10.)
- 김성룡,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둘러싼 형사법적 쟁점 검토”, 법무부·고용노동부 주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 (2021. 12.)
- 김정환,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과 민사재판 실무상 쟁점”에 대한 토론문,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사법정책연구원 (2022. 7. 8.)
- 박재영,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과 민사재판 실무상 쟁점”에 대한 토론문,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사법정책연구원 (2022. 7. 8.)
- 이창현,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과 민사재판 실무상 쟁점”,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사법정책연구원 (2022. 7. 8.)
- 임우택,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정책&지식』 포럼 제1043회 (2022. 6. 7.)
- 최진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실무상 쟁점”,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국회의원 박대수 주최 정책토론회 (2021. 11. 22.)
- 홍채은,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중대시민재해”, 소비자정책동향 제116호 (2021. 9.)

5. 그 외 자료 등

[온라인 주석서]

- 권창영 편집대표, 온라인 주석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로앤비 (2022)

[국회회의록]

- 제21대 국회 제38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0. 12. 24.)
- 제21대 국회 제383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0. 12. 29.)
- 제21대 국회 제383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1. 1. 6.)

[기사]

- 김장식, “리포트-중대산업재해로 인한 형사책임”, 월간노동법률 (2021. 3.)
- 김지석, “리포트-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쟁점사항들에 관한 고찰”, 월간노동법률 (2021. 5.)
- 박상진, “리포트-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어떻게 다른가”, 월간노동법률 (2021. 3.)
- 매일노동뉴스,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별칙해설서’ 집중분석 ④] ‘치료기간 6개월 이상’ 기준, 중대재해 면죄부 될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54> (2022. 3. 10. 7:30)
- 아주경제, “‘과로사도 중대재해’ 대검 유권해석에 ‘과잉입법’ 논란”, <https://www.ajunews.com/view/20220225203953321> (2022. 3. 1. 14:40)
- 한국경제, “고용부 ‘직장내 괴롭힘에 극단 선택,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122647611> (2021. 12. 26. 17:03)

[홈페이지]

- 법제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법령/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2022. 11. 11. 확인)
- Canadian Centre for Occupational Health & Safety, “Westray Bill (Bill C-45) – Overview”, <https://www.ccohs.ca/oshanswers/legisl/billc45.html> (2022. 11. 11. 확인)

【별지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1.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애 등의 급성중독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의 급성중독
6. 톨루엔(toluene)·크실렌(xylene)·스티렌(styrene)·시클로헥산(cyclohexane)·노말헥산(n-hexane)·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애,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obinemia), 청색증(靑色症) 등의 급성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 소실(消失),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의 급성중독
9. 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0. 불화수소·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청색증, 폐수종,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11. 인[백린(白燐), 황린(黃燐) 등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동소체(同素體)로 한정한다]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2.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3. 다음 각 목의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14.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 염소, 염화수소 또는 염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다만,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염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로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18.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19.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brucellosis)
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별지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 제1호 관련)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 제7호의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2조 제1호의 도서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9.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것
10.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의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것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대규모점포.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지하에 위치한 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의 전시시설 중 옥내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6.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의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17.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같은 표 제14호 나목 2)의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18. 「공연법」 제2조 제4호의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 중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비고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별지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법 제2조 제4호 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 제2호 관련)

<p>1. 교량</p> <p>가. 도로교량</p> <p>나. 철도교량</p>	<p>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p> <p>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p> <p>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p> <p>4)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p> <p>1) 고속철도 교량</p> <p>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p> <p>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p> <p>4)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p>
<p>2. 터널</p> <p>가. 도로터널</p> <p>나. 철도터널</p>	<p>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p> <p>2) 3차로 이상의 터널</p> <p>3) 터널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p> <p>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p> <p>5)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p> <p>1) 고속철도 터널</p> <p>2) 도시철도 터널</p> <p>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p> <p>4)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p>
<p>3. 항만</p> <p>가. 방파제,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p> <p>나. 계류시설</p>	<p>1)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p> <p>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p> <p>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p> <p>1)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p> <p>2)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p> <p>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p>

4. 댐	1)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2) 지방상수도전용댐 3)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 시설 2)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6. 하천 가. 하구둑 나. 제방 다. 보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나. 하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
8. 옹벽 및 절토사면 (깎기비탈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의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徑間)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6.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 2)의 외곽시설을 말한다.
7.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 4)의 계류시설을 말한다.
8. “댐”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저수지·댐을 말한다.
9. 위 표 제4호의 지방상수도전용댐과 용수전용댐이 위 표 제7호 가목의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10.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11.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1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13.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15. “철도역 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의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시설이 선로 아래 설치되는 역사를 말한다)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6.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7.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 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8.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 「방조제 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9. 하천의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20.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이나 도로(하천을 횡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1.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및 취수시설을 포함하고,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배수지,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별지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제2호에 따라 과태료 감경기준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감경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사업장의 규모나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3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 제2항	1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별지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³²⁹⁾

구 분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함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 제1항 등 관련)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제26조 제1항 등 관련)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등)
	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규칙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시행규칙 제16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법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제2항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시)
원자력안전법	법 제106조(교육훈련)
시행령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시행규칙 제13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시행규칙 [별표 5의2] 교육의 과정 및 시간(제138조 제6항 관련)	
제148조의3(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약사법	법 제15조(연수교육) : 약사 및 한약사
시행규칙 제5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법 제44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	
시행규칙 제26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 실시), 시행규칙 제27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계획 등)	
법 제34조의4(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제38조의2(임상시험 교육의 내용·시간·방법 등)	
법 제37조의2(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제44조(제조관리자 교육의 내용·시간·방법 등)	

329) 환경부, 앞의 해설서, 70-73.

구 분	내 용
약사법	법 제37조의4(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제47조의2(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내용·시간·방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시행규칙 제47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화장품법	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시행규칙 제14조(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농약관리법	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시행령 제21조(농약등의 안전사용 기준 등에 대한 교육)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고시)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고시)
비료관리법	관련 규정 없음
사료관리법	법 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5항, 제6항
	시행규칙 제17조(교육훈련 등)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 : 제9조의2(교육훈련 등), [별표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22조(교육의 실시) 제1항 : 시행령 제26조(교육실시) : 교육대상자, 제4항 : 시행령 제26조의2(안전교육 실시)
	법 제39조(자체안전교육)
	시행규칙 제48조(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 제13조(교육)
	시행규칙 제18조(교육실시기관 등)
	시행규칙 제19조(교육시간)
	시행규칙 제20조(교육계획 등)
의료기기법	법 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 제23조(안전교육)
	시행규칙 제51조(안전교육) : [별표 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44조(교육훈련 및 홍보)
	시행규칙 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구 분	내 용
식품위생법	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 영업자 및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
	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5항
	시행규칙 제6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법 제56조(교육) : 조리사와 영양사 - 매2년
	시행규칙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화학물질관리법	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 담당자,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시행규칙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광산안전법	법 제7조(안전교육) : 광업권자, 조광권자, 광산근로자 및 광산안전관리직원
	전문기관은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교육이 종료한 날부터 5년간 보존
	시행령 제8조(안전교육) :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시행규칙 제10조(안전교육) :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별표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 제17조(위생 교육)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
	법 제26조(교육명령)
	시행규칙 제45조(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관련 규정 없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 제20조(안전교육) : 안전관리자
	시행규칙 제20조(안전교육) : 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제5항, 제6항 : 승강기 안전관리자
	시행규칙 제52조(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별표 10] : 내용 및 기간, 교육주기 : 3년
	승강기 안전운영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고시)
	제7조(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등) [별표 1], [별표 2] :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주기,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기간
	법 제52조(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법 제73조(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 [별표 13]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시간·내용·방법·평가 및 주기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법 제28조(안전교육) :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 위험물운반자, 위험물운송자 등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 [별표 24] : 안전교육의 과정·기관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구 분	내 용
해사안전법	법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제6항,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별표 3]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고시)
지하수법	법 제34조의2(교육 등) 시행령 제42조(교육 등) : 교육대상, 교육내용
수도법	법 제36조(교육) 시행령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먹는물관리법	법 제28조(품질관리교육) 시행규칙 제17조(품질관리교육), 제18조(교육과정 등) 법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시행규칙 제36조의3(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
도시가스사업법	법 제30조(안전교육) 시행규칙 제50조(안전교육) : [별지 14]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선박안전법	법 제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제6항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고시) 제27조(교육대상자, 교육내용) : [별표 2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법 제41조(안전교육) 시행규칙 제66조(안전교육) [별표 19] : 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교육과정
전기안전관리법	법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시행규칙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별표 11] :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표 12] : 시공관리책임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 제1항 제2호 관련)
시설물안전법	법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9항 시행규칙 제17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석면안전관리법	법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시행규칙 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별지 6】 검찰의 구형기준표

범죄 등급	내용					
	I(초범)		II(1회)		III(2회이상)	
	벌금(만원)	징역(월)	벌금(만원)	징역(월)	벌금(만원)	징역(월)
1	0-50		0-50		0-50	
2	0-50		0-50		50-80	
3	0-50		50-80		80-100	
4	0-50		50-80		100-150	
5	50-80		80-100		150-200	
6	80-100		100-150		200-250	
7	100-150		150-200		250-300	
8	150-200		200-250		300-400	
9	200-250		250-300		300-500	0-6
10	250-300		300-400		400-600	4-6
11	300-400		300-500	0-6	500-700	6-8
12	300-500	0-6	400-600	4-6	600-800	8-10
13	400-600	4-6	500-700	6-8	700-1000	8-12
14	500-700	6-8	600-800	8-10	800-1200	10-14
15	600-800	8-10	700-1000	8-12	1000-1500	12-18
16	700-1000	8-12	800-1200	10-14	1200-2000	14-24
17	800-1200	10-14	1000-1500	12-18	1500-2500	18-30
18	1000-1500	12-18	1200-2000	14-24	2500-3000	24-36
19	1200-2000	14-24	1500-2500	18-30		30-48
20	1500-2500	18-30	2500-3000	24-36		36-54
21	2500-3000	24-36		30-48		48-60
22		30-48		36-54		54-72
23		36-54		48-60		60-84
24		48-60		54-72		72-120
25		54-72		60-84		120-144
26		60-84		72-120		144-180
27		72-120		120-144		180-240
28		120-144		144-180		240-270
29		144-180		180-240		270-300
30		180-240		240-270		300-330
31		240-300		300-360		330-360
32		300-360		330-400		360-480
33		330-400		360-480		420-540
34		360-480		420-540		540-600

● 법인의 구형기준표

범죄 등급	범 죄 전 력		
	I(초범)	II(1회)	III(2회이상)
	벌금(만원)	벌금(만원)	벌금(만원)
1	0-500	0-500	0-500
2	0-500	0-500	500-800
3	0-500	500-800	800-1000
4	0-500	500-800	1000-1500
5	500-800	800-1000	1500-2000
6	800-1000	1000-1500	2000-2500
7	1000-1500	1500-2000	2500-3000
8	1500-2000	2000-2500	3000-4000
9	2000-2500	2500-3000	3000-5000
10	2500-3000	3000-4000	4000-6000
11	3000-4000	3000-5000	5000-7000
12	3000-5000	4000-6000	6000-8000
13	4000-6000	5000-7000	7000-10000
14	5000-7000	6000-8000	8000-12000
15	6000-8000	7000-10000	10000-15000
16	7000-10000	8000-12000	12000-20000
17	8000-12000	10000-15000	15000-25000
18	10000-15000	12000-20000	25000-30000
19	12000-20000	15000-25000	30000-35000
20	15000-25000	25000-30000	35000-40000
21	25000-30000	30000-35000	45000-50000
22	30000-35000	35000-40000	50000-55000
23	35000-40000	45000-50000	60000-65000
24	45000-50000	50000-55000	65000-70000
25	50000-55000	55000-60000	70000-75000
26	55000-60000	60000-65000	75000-80000
27	60000-65000	65000-70000	80000-85000
28	65000-70000	70000-75000	85000-90000
29	70000-75000	75000-80000	90000-95000
30	75000-80000	80000-95000	95000-100000
31	80000-95000	95000-100000	100000-200000
32	95000-100000	100000-200000	200000-300000
33	100000-200000	200000-300000	300000-400000
34	200000-300000	300000-400000	400000-500000

※ 법인을 위한 행위자 가운데 가장 등급이 높은 사람에 상응하는 등급으로 법인의 구형량 결정
 ※ 다만, 법인에 대한 구형에 한하여 사건의 사회적 파장, 사업체의 자산규모·시가총액·영업이익(손실)액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가중·감경 가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2022년 11월 30일 인쇄

2022년 12월 12일 발행

발행처 사법정책연구원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TEL 031-920-3583

인쇄처 (주)홍디자인

TEL 02-464-5167

〈비매품〉

1. 본 책자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전문(全文)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s://jpri.scourt.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BN 979-11-6168-246-4 95360



104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본관동 4, 9, 10층
대표전화 : 031)920-3583 E-mail : jpriga100@scourt.go.kr

